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변천 자료집

어업편

2018. 8.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변천자료집

INDEX

1부. 어업총조사

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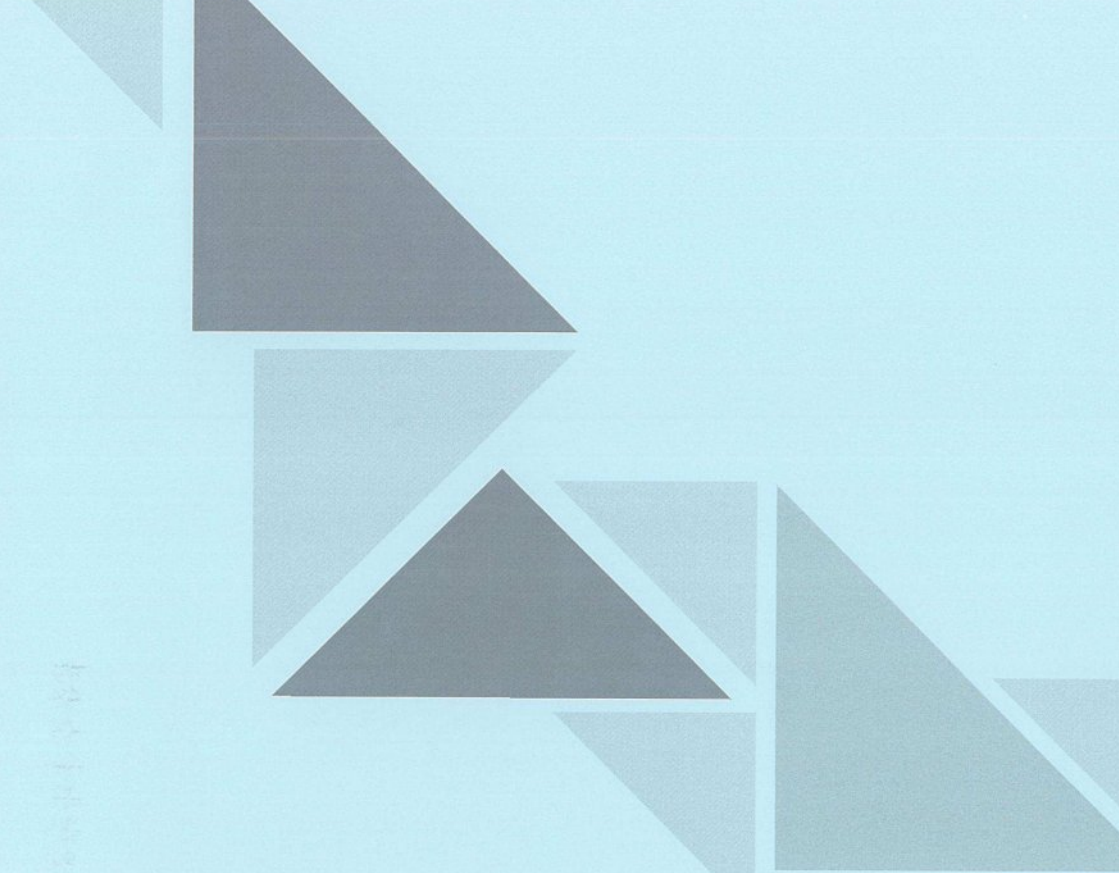
1. 조사 연혁	5
2. 조사 대상 및 조사범위	7
3.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기간	10
4. 조사 체계	11
5. 조사구 설정 및 명부작성	11
※ 참고자료(주요국의 어업센서스 비교)	14

II. 조사항목

1. 연도별 조사항목 비교(어업)	17
2. 가구원 특성	
· 성명	21
· 성별	23
· 경영주와의 관계	24
· 나이	26
· 교육 정도	28
· 혼인 상태	30
· 어업 종사기간	31
· 어업 종사형태	34
· 어업 주 종사부분	36
· 어업 외 종사기간	38
· 주 종사 분야	39
· 어업 외 주 종사 분야	42
3. 어업 생산	
· 보유 어선	44
· 어선 현황	47
· 어법 종류	52

INDEX

· 어로어업 경영 여부	70
· 조업 수역	72
· 어획 품종	74
· 양식어업 경영 여부	79
· 양식 품종	84
· 어획량	95
· 종묘 조달방법 / 양어장 용수 이용방법	96
 4. 어업 경영	
· 판매 금액	97
· 경영 형태	100
· 판매처	103
· 판매 형태	105
· 생산자 조직 참여	108
· 어업 관련 사업	110
· 어업 고용	111
· 전업 및 겸업	112
· 비동거 어업 임금 종사자	116
· 투자 금액 / 차입 금액	121
· 회사 경영체, 단체 연구기관 현황	122
· 공동 경영체 현황	125
· 어항 시설	127
· 수산물 유통 및 보급 시설	129
· 수산물 제조 및 가공 시설	133
· 어업 임금 종사자 가구	137
 5. 경영주 특성	
· 경영주 경력	139
· 5년 전 어업 경영 여부	141
· 5년 전 거주지	142
 6. 가구 사항	
·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143
· 교통수단 보유(생활 여건)	146
· 난방시설 / 주거시설 형태	148
· 거처 형태	150
· 건축 년도	151
·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 현황	152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변천 자료집

어업 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항목

어업총조사 편

I. 조사 개요

1. 조사 연혁
 2. 조사 대상범위
 3.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기간
 4. 조사 체계
 5. 조사구 설정 및 명부작성
- ※ 참고자료(주요국의 어업센서스 비교)

조사 개요

1. 조사 연혁

1) '총어업조사' 실시 이전

정부수립 이후 어업에 관한 기본 통계조사는 행정기관과 어협을 통한 행정통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작성되어 왔으며, 수산인구에 대한 간이인구조사가 1968년 최초로 실시

2) 1970년: '1차 총어업조사' 실시

우리나라의 어업총조사는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FAO)¹⁾의 권장에 의하여 1969년 4월 지정통계승인을 받고, 1970년 '총어업조사'라는 명칭으로 수산청 어정국 조사통계과 주관으로 처음 실시

3) 1980년: 2차 '총어업조사' 실시

총어업조사에 내수면어업 및 수산연관시설조사를 추가하여 농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 수산통계담당관실 주관으로 2차 총어업조사 실시

4) 1985년: '간이어업조사' 실시

총어업조사의 간이어업조사를 농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 수산통계담당관실 주관으로 처음 실시²⁾

5) 1990년: 3차 '어업총조사' 실시

총어업조사를 어업총조사로 개칭하여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 수산통계담당관실 주관으로 3차 어업총조사 실시

1) 1963년 FAO 12회 총회(로마 개최) 어업조사 프로젝트 결의안: 「해양조사에 관한 종합 프로젝트의 시급한 필요성」

2) 표본조사: 해면어업의 가구, 가구원, 종사자(어업기본통계조사의 256개 표본조사구 활용)

전수(행정)조사: 내수면어업의 가구, 가구원, 종사자와 해면 및 내수면의 어선세력

6) 1995년: 4차 '어업총조사' 실시

1995년은 간이어업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이나 대내외적인 어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화시대 개막에 따라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실 생산통계담당관실 주관으로 특별히 4차 어업총조사 실시³⁾

7) 2001년: 2000년 기준 '농어업총조사' 실시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⁴⁾ 결과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에서 농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2001년에 2000년 기준 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고, 어업 사업체 관련 부문은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로 분리 조사⁵⁾

8) 2006년: 2005년 기준 제1차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2004년 정부조직법 개정⁶⁾ 결과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에서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간이어업조사를 폐지하였으며 총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

9) 2010년: 2010년 기준 제2차 '농림어업총조사' 통합 실시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하여 공통항목인 혼인상태, 교육정도, 거주형태 등 7개 항목은 조사하지 않고 연계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 또한 어가의 정의 중 판매금액 기준을 현실화 등 정책수요 변화를 반영

10) 2015년: 2015년 기준 제3차 '농림어업총조사' 통합 실시

2015년 인구총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연계 항목을 직접 조사 방식으로 변경함.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국민 응답부담 및 응답률 제고, 가구명부 작성에 농·어업경영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조사대상 농림어가 발굴 확대

3)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최종 결과보고서 발간

4) 농어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 통계작성 업무 통계청으로 이관

5) 인구주택총조사(11월 실시)와의 업무 중복문제 해소, 준어가 조사는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를 신규개발하여 대체하고, 수산 관련시설은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에서 작성되는 광공업통계조사 결과로 대체

6) 임업총조사 통계작성 업무 통계청으로 이관

2. 조사 대상 및 조사범위

○ 1차 총어업조사(1970년)

조사대상	· 해수면 어업사업체와 어업고용자가구
조사범위 ⁷⁾	· 조사실시전 지난 1년간에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포나 양식업을 경영한 사업체(개인경영, 공동경영, 회사경영)와 어업고용자가구 · 가구원중에서 직접 자기 어업을 하지 않고 타인이 경영하는 해면 어업사업체에 어업종사자로서 고용된 자가 있는 가구⁸⁾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조사대상 제외

○ 2차 총어업조사(1980년)

조사대상	· 해면 및 내수면 어업사업체와 수산물관련시설
조사범위 ⁹⁾	· 조사실시전 1년간에 수산동식물을 1개월 이상 채포, 채취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면 및 내수면 어업경영체(개인, 공동, 회사, 단체경영체)와 어업관련 기관¹⁰⁾ · 어업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유통시설, 제빙 및 냉동시설·보급시설(급유, 급수, 공동창고), 제조 가공시설 등 수산물관련시설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조사대상 제외

7) 개인경영 가구는 전국의 어가가구를 5개의 계층으로 식별하고 계통임의추출법에 의해 시군구 단위로 표본추출하였으며, 표본추출율은 무동력선 5톤미만 보유가구(20%), 어선비사용가구(10%), 어업고용자가구(10%), 이외는 모두 전수조사

8) 어업고용자가구는 수산동식물의 채취나 양식업을 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가구

9) 1차 총어업조사 대상범위에 포함된 「어업종사자로서 고용된 자가 있는 가구」는 어업기본통계조사에서 조사

10) 공동경영체: 2인 이상이 어선, 어망 등 중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영의 공동 운영관리, 조업 경비의 공동 부담, 어획물을 일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영체: 어촌계, 협업사업체 등 단체경영체: 어업을 경영하는 단체로 업종별 및 지구별 수협 등

기관: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채취 또는 양식하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산 진흥원, 학교, 연구단체 등

회사경영체: 상법상의 법인체로서 조사전 1년간에 실제로 어업을 영위한 회사(주식, 합자, 합명회사 등)

○ 3차 어업총조사(1990년)

조사대상	· 해면 및 내수면 어업사업체와 어업피고용자가구, 수산물관련시설
조사범위	· 조사실시전 1년간에 수산동식물을 1개월 이상 채포, 채취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면 및 내수면 어업경영체(개인, 공동, 회사, 단체, 기관경영체) ·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 이상 직접 자기어업을 하지않고, 타인이 경영하는 수산동식물의 채취나 양식업을 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어업종사자가 있는 가구¹¹⁾ · 어업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유통시설, 제빙 및 냉동시설·보급시설(급유, 급수, 공동창고), 제조 가공시설 등 수산물관련시설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조사대상 제외

○ 4차 어업총조사(1995년)

조사대상	· 해면 및 내수면 어업사업체와 수산물관련시설
조사범위	· 조사실시전 1년간에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 내수면, 수산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체(개인, 공동, 회사, 단체 경영체) · 어업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어항·유통시설, 제빙 및 냉동 시설·보급시설(급유, 급수, 공동창고), 제조 가공시설 등 수산물관련시설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및 어업피고용자 가구는 조사대상 제외

11) 1990년 어업총조사에서 어업피고용자가구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였으나, 피고용자중 어선승선원 가구조사는 가구의원의 잦은 이동과 연안어의 내륙지 및 도시중심에 산재되어 있는 가구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누락되는 가구가 많아 결과보고서에서는 제외

○ 5차 어업총조사(2000년)

조사대상	· 해수면 및 내수면 어가
조사범위 ¹²⁾	·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조사 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및 어업종사자 가구는 조사 대상 제외

○ 6차 어업총조사(2005년)

조사대상	· 해수면 및 내수면 어가
조사범위	·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조사 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조사대상 제외 · 어업임금종사자 가구조사는 어업총조사의 부가조사로만 실시

○ 7차 농림어업총조사(2010년)

조사대상	· 2010년 12월 1일 현재 해수면 또는 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조사범위	· 지난 1년간(2009. 12. 1. ~ 2010. 11. 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09. 12. 1. ~ 2010. 11. 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제외가구(원양어업만 경영하는 가구, 어업 임금종사자만 있는 가구, 유통업·가공업에만 종사하는 가구)

12) 비어기, 금어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남의 어선에 승선하여 자기 어업활동을 한 후 자기 몫으로 분배받은 어획물에 대하여 판매권한이 있는 경우도 포함, 원양어업은 대부분 법인사업체에서 경영하므로 개인어가조사에서 삭제(95년 어업총조사 결과는 법인: 149개, 개인어가 : 33개)하고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에서 별도 조사

○ 8차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조사대상	· 2015년 12월 1일 현재 해수면 또는 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조사범위	· 지난 1년간(2014. 12. 1. ~ 2015. 11. 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탸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14. 12. 1. ~ 2015. 11. 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2015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제외가구(원양어업만 경영하는 가구, 직접 어업 경영은 하지 않고 어업 임금종사자만 있는 가구, 어촌계에 가입은 하고 있으나 직접 어업 경영은 하지 않고 유통업·가공업에만 종사하는 가구)

3.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기간

	기준시점	실시기간
1 차	'70. 12. 1, 0시	'70. 12. 1 ~
2 차	'80. 12. 1, 0시(해수면) '80. 11. 1, 0시(내수면, 수산물관련시설)	'80. 12.1~12.15(해수면) '80. 11.1~11.15(내수면, 수산물관련시설)
3 차	'90. 12. 1, 0시(해수면) '90. 11. 1, 0시(내수면, 수산물관련시설)	'90. 12.1~12.15(해수면) '90. 11.1~11.15(내수면, 수산물관련시설)
4 차	'95. 12. 1, 0시(해수면) '95. 11. 1, 0시(내수면, 수산물관련시설)	'95. 12.1~12.15(해수면) '95. 11.1~11.15(내수면, 수산물관련시설)
5 차	'00. 12. 1, 0시	'01. 3. 7 ~ 3.16
6 차	'05. 12. 1, 0시	'06. 2.14 ~ 2.28
7 차	'10. 12. 1, 0시	'10. 11. 30 ~ 12. 13
8 차	'15. 12. 1, 0시	'15. 12. 1. ~ 12. 15.

4. 조사 체계

1970년 1차 조사는 수산청에서 주관하였고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2차 ~ 4차(1980년 ~ 1995년) 조사는 농림수산부, 5차(2000년) 조사 이후는 통계청에서 주관

조사수행은 통계청이 주관하고 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원의 계통으로 실시

5. 조사구 설정 및 명부 작성

1) 1차 총어업조사(1970년)

조사구 설정	· 197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1개 또는 2개 이상을 합하여 조사구 재설정
조사대상 명부작성	· 표본추출: 197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어가구를 5개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계통임의추출법으로 표본추출 · 표본추출에 의하여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구 설정방법에 의한 조사구별, 지번순으로 조사대상명부 작성 · 전수조사한 단체사업체는 수산청에서 시·도의 협조를 받아 수산청장 허가어업과 지방장관 허가 면허어업을 근거로 작성

2) 2차 총어업조사(1980년)

조사구 설정	· 어업조사구는 읍·면·동단위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내에 조사대상가가 약 100개 내외가 포함되도록 설정 · 해면어업은 인접 리·동이 원거리에 있고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 도서지역은 특수독립조사구로 설정 · 내수면, 제조가공 수산시설 조사대상체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와 상관없이 표준행정구역분류에 의해 작성하되, 50개 이상의 대상체가 포함되도록 설정 · 어항, 유통 및 보급 수산시설 조사대상체는 지구별 수협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수협장 책임하에 조사
--------	---

조사대상 명부작성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결과 종합표에 의해 어가를 식별하고, 어업가구 개황, 어업형태 및 어선보유상황 등을 조사하여 조사대상 어가구 식별일람표 작성 · 회사 및 공동경영사업체는 수산청 및 각 시도별 허가 및 면허어업 현황자료를 근거로 현지확인에 의하여 식별일람표 작성
--------------	---

3) 3차 ~ 4차 어업총조사(1990년 ~ 1995년)

조사구 설정	· 인구주택조사구를 기초로 하여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설정 · 조사대상 사업체 60~100개가 1개조사구가 되도록 인구주택조사구 1~5개를 통합하여 조사구 설정(일반조사구) · 조사대상사업체가 산재된 도시지역이나 도서지역에 대해 30~60개 대상체 범위내에서 1개 조사구를 설정, 대도시인 부산, 인천의 경우 행정동 당 조사대상체가 30호 미만일 경우는 1개 동 전체를 1개 조사구로 설정(특별조사구) · 내수면어업 및 수산관련시설은 구·시·군에서 설정(1995년은 시·농수산통계출장소)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체 50개 내외가 1개조사구가 되도록 설정하되, 조사대상체가 적은 경우는 구·시·군 전체를 1개조사구로 설정
조사대상 명부작성	·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와 어업총조사 조사구 설정시 작성한 조사 일람표를 이용, 조사대상체를 비교 확인하여 조사대상체 명부 작성

5) 5차 어업총조사(2000년)

조사구 설정	· 2000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농어가수를 기초로 하여 농어가수가 60~100호(평균 80호)가 되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인구주택 조사구를 통합하여 설정 · 인구주택조사구의 경계는 유지하되, 읍면동별로 농어가가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은 읍면동 전체를 1개 조사구로 설정
조사대상 명부작성	· 조사대상명부는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각 시도별 허가 및 면허어업 현황자료, 어촌계 현황자료, 어선등록 대장 등의 행정자료로 보완

6) 6차 어업총조사(2005년)

조사구 설정	·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농어가수를 기초로 하여 농어가수가 30~50호(평균 40호)가 되도록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인구주택 조사구를 통합하여 설정 · 인구주택조사구의 경계는 유지하되, 읍면동별로 농어가가 없거나 소규모인 지역은 읍면동 전체를 1개 조사구로 설정 · 산간오지, 섬조사구는 농어가수를 고려하여 인근 인구주택조사구를 묶어서 설정하였으나,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업무지장이 심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1개 조사구로 설정 · 도시지역의 행정동 전체 농어가수가 60호 미만인 경우 1개 조사구로 설정
조사대상 명부작성	· 조사대상명부는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각 시도별 허가 및 면허어업 현황자료, 어촌계 현황자료, 어선등록 대장 등의 행정자료로서 보완

7) 7차 농림어업총조사(2010년)

조사구 설정	·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 실시 관계로 조사구를 그대로 활용, 별도의 조사구 재설정 작업은 하지 않음
조사대상 명부작성	· 가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0 인구주택총조사[완화된 농림어가 기준(판매금액 60만원) 적용] 가구명부를 기본으로 사전에 통합 가구 명부를 작성 · 읍면 지역과 농림어가 20가구 이상 동 지역은 조사구 내의 모든 가구(농림어가+비농림어가)를 통합가구명부에 수록 - 20가구 미만 동 지역은 농림어가만 가구명부에 수록 · 2005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와 각종 행정자료(어촌계 명부, 수협조합원 명부, 어선원부 등)로서 보완 및 연계

8) 8차 농림어업총조사(2015년)

조사구 설정	· 2014년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활용하여 조사구 설정		
조사대상 명부작성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행정자료를 연계 활용한 독자적인 가구명부 확보		
	- 조사자료 5종, 행정자료 16종을 활용해 1차 가구명부를 작성하고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로 가구명부 보완		
	· 조사대상 가구의 누락을 방지하고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한 보완된 가구명부에 인구주택총조사(표본 20%)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가구명부 작성		
	-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누락 방지를 위해 보완된 농림어가 기준 적용		
	구 분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 경지 면적(농가)	1,000㎡	500㎡
	▪ 판매 금액(농림어가)	120만원	60만원
	▪ 산림 면적(임가)	3ha	1ha

※ 참고자료(주요국의 어업센서스 비교)

구분	일본	대만	미국
실시기관	농림수산성	행정원 농업위원회	상무성 국가해양대기관리처 농무성(양식센서스)
조사주기	5년	5년	5년
조사대상	-해수면, 내수면 -어가(어로, 양식) -어업경영체, 어업종사자 세대·유통가공조사	-해수면, 내수면 -어가(어로, 양식) -어업경영체	-양식업 경영체
조사방법	-전수/조사원 면접조사	-전수/조사원 면접조사	-어로업은 양육아종을 보고통계 형식으로 작성 -전수/우편, 전화·면접조사 단계별 적용
비 고	-유통가공조사는 자계식 신고방식으로 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동시조사 -개인어가/회사법인 조사표	-2005년 양식센서스는 인터넷 조사 병행

어업총조사 편

II. 조사 항목

1. 연도별 조사항목 비교
2. 가구원 특성
3. 어업 생산
4. 어업 경영
5. 경영주 특성
6. 가구 사항

조사 항목

1. 연도별 조사항목 비교(어업)

○ 해수면, ◇ 내수면, ⊗ 해수면·내수면 공통,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연계 항목, ▲ 수산관련 시설 및 어업임금종사자가구

조사 항목 \ 조사 연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가구에 관한 사항								
○ 성명	○	⊗	⊗	⊗	⊗	⊗	⊗	⊗
- 영여승계자			⊗					
○ 성별	○	⊗	⊗	⊗	⊗	⊗	⊗	⊗
○ 경영주와의 관계	○	⊗	⊗	⊗	⊗	⊗	◆	⊗
○ 나이	○	⊗	⊗	⊗	⊗	⊗	⊗	⊗
○ 교육 정도		⊗	⊗	⊗	⊗	⊗	◆	⊗
- 수산 관련학과 이수						⊗		
○ 혼인상태			⊗	⊗		⊗	◆	⊗
○ 어업 종사 기간	○	⊗	⊗	⊗	⊗	⊗	⊗	⊗
○ 어업 종사 형태(자기경영, 피고용)	○	⊗	⊗	⊗	⊗	⊗	⊗	⊗
○ 어업 주 종사 부문	○	○	⊗	⊗	⊗	⊗	⊗	⊗
○ 어업 외 종사 기간				⊗	⊗	⊗	⊗	⊗
○ 주 종사 분야	○	⊗	⊗	⊗	⊗	⊗	⊗	⊗
○ 어업 외 주 종사 분야		⊗	⊗	⊗				
□ 어선 현황								
○ 보유 어선(척)					⊗	⊗	⊗	⊗
- 연간 사용한 어선의 종류	○							
○ 어선 현황	○	⊗	⊗	⊗	⊗	⊗	⊗	⊗
- 어선명	○	⊗	⊗	⊗	⊗	⊗	⊗	⊗
- 동력 유무(어선 형질)	○	⊗	⊗	⊗				⊗
- 어법			⊗	⊗				⊗

[illegible]

조사 항목 \ 조사 연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판매 금액	○				◎	◎	◎	◎
○ 경영 형태(어업 형태)	○	○	○	○	◎	◎	◎	◎
○ 판매처			◇	◇	◎	◎	◎	◎
○ 판매 형태(상품 형태)					◎	◎	◎	◎
○ 생산자 조직 참여	△				◎	◎	◎	◎
○ 어업 관련 사업							◎	◎
○ 어업 고용							◎	◎
- 고용 기간							◎	◎
- 내국인 외국인 여부							◎	◎
- 남자 여자 여부								◎
○ 전업 및 겸업	○	◎	◎	◎	◎	◎	◎	◎
- 겸업 구분	○	◎	◎					
- 경지 조사		◎	◎					
○ 비동거 어업 임금 종사자					○	○		
- 신규 종사자 및 이어자	○	◎	◎					
- 최성어기 어업종사자수	○	○	○	○				
- 지역별 종사자수		○	○					
- 해상작업 종사일수	○		○	○				
○ 투자 금액	○							
○ 차입 금액	○							
□ 경영주 특성								
○ 경영주 경력						◎	◎	◎
- 경영 동기(종사경력 5년 이하)							◎	
○ 5년 전 어업 경영 여부								◎
○ 5년 전 거주지								◎
□ 가구 사항								
○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	◎	◎	◎	◎
- 정보화 기기 보유					◎	◎	◎	◎
- 정보화 기기 활용					◎	◎	◎	◎
- 홈페이지 개설					◎	◎		
- PC통신 등 사용여부					◎			
○ 교통수단 보유		○	◎	◎	◎	◎	◎	◎

조사 항목 \ 조사 연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생활여건						⊙		
- 생활시설 이용						⊙		
○ 난방시설			⊙	⊙	⊙	◆	◆	⊙
○ 주거시설 형태		○	⊙	⊙	⊙	◆	◆	⊙
- 부엌					⊙	◆	◆	⊙
- 화장실					⊙	◆	◆	⊙
- 목욕시설						◆	◆	⊙
- 수도시설		○	⊙	⊙	⊙	◆	◆	⊙
- 전기시설		○						
- 전화시설		○	⊙					
○ 거처 형태					⊙	◆	◆	
○ 건축 년도					⊙	◆	◆	
○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 현황		○	⊙	⊙				
□ 회사/단체/공동 경영체								
○ 회사 경영체 현황	○	⊙	⊙	⊙				
○ 단체 연구기관 현황		⊙	⊙	⊙				
○ 공동 경영체 현황	○	⊙	⊙	⊙				
□ 수산 관련시설 및 어업 임금 종사자 가구								
○ 어항 시설		▲	▲	▲				
○ 수산물 유통 및 보급 시설		▲	▲	▲				
○ 수산물 제조 및 가공 시설		▲	▲	▲				
○ 어업 임금 종사자 가구	▲		▲	▲				

2. 가구원 특성

성 명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성명	○	⊗	⊗	⊗	⊗	⊗	⊗	⊗
- 영어승계자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조사대상확인, 전국 및 지역별 어가인구 파악
- 조사중복 및 누락방지
- 자료내검 단계에서 전화 등을 이용한 재질의시 대상자 확인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가구원 성명 기입	가구원 성명 기입 (만14세이상만 기입)	가구원 성명 기입 • 객지에 나가 있거나 비동거 영어승계자도 조사	가구원 성명 기입	가구원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	2010년		2015년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1995년	• 가구원: 가구주+부양가족(입원자, 요양자, 취학자, 출어자를 포함하며 조사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식모, 머슴도 포함) • 경영주 이후에는 가족, 동거인 순서별, 나이 순서별로 기입 • 영어승계자(營漁承繼者): 가족중 현 어업경영주에 이어 어업에 종사할 사람을 말하며 가구원으로 같이 살고 있는 사람과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 조사(1990년)
2000년~2005년	• 경영주, 배우자, 자녀, 부모, 고용인 등의 순서로 작성

2015년	• 가구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작성 • 성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직 이름이 없는 갓난 아이는 「이○ ○」 등으로 기입 • 외국인 등 이름이 5자 이상인 경우에는 4자까지만 기입
-------	---

□ 주요국 사례

일본	• 만 15세 이상 세대원의 성명 기입 • 어업경영체조사표(개인 및 공동경영체용) 사용 • 조사원연락전은 조사표 표지 아래 부분에 병기(다음 방문 월/일, 조사원 성명, 전화번호 호란) • 세대원 및 어선에 대하여는 자체식 원칙
대만	• 만 15세 이상 가구원 성명 기입

□ 참고 사항

- 조사자료의 개인 비밀보호차원에서 전산입력은 하지 않음
- 2010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 공유 및 연계
-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면 모두 포함되지만, 농업총조사에서는 하숙생이나 농업이의 고용인은 동거하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됨
- ※ 영어승계자 항목 조사목적
 - 영어승계자 사항은 어가가구수가 매년 감소되는 우리나라 어촌실정을 감안하여 90년대 우리나라 어촌을 어떤 사람들이 이끌고 나갈 것인지 알기 위하여 조사
 - 영어승계자 대상연령은 만 15세~ 35세인 사람에 한하여 조사
 - 가구당 1명 이상 있을시 각각 조사

성 별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연령과 더불어 어촌인구 분석의 가장 기본 항목
- 어촌인구의 남녀별 인구구조 분석
- 성비 및 여성 어업인 분포와 구성비 분석
- 성별 어업종사가구원, 혼인상태, 교육정도 파악
- 여성어업인 센터, 어가도우미 제도 등 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여성복지정책 수요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가구원 성별 기입	가구원 성별 기입	가구원 성별 기입	가구원 성별 기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1995년	• 성별조사는 중요한 사항이며, 경영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동거인에 대한 성별을 명확히 하여야 된다
2000년~2005년	• 이름만으로 성별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2015년	• 성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성명만으로 성별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다

□ 주요국 사례

일본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성별로 기입
대만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성별로 기입

경영주와의 관계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가구 및 가족의 특성변화 연구
- 어촌인구의 고령화와 탈어촌 현상 연구
- 아동 및 고령자의 구조 파악
- 어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연구
- 어업고용인 등 취업구조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가구주와의 관계 기입	경영주와의 관계 기입	경영주와의 관계 기입	경영주와의 관계 기입
2000년	2005년	2010년 ¹⁴⁾	2015년
경영주와는 어떤 관계 입니까? ① 경영주 ② 배우자 ③ 자 녀 ④ 부 모 ⑤ 손자녀 ⑥ 조부모 ⑦ 기타 친인척 ⑧ 어업고용인 등	이 분은 경영주와 어 떤 관계입니까? ① 경영주 ② 배우자 ③ 자 녀 ④ 부 모 ⑤ 손자녀 ⑥ 조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친인척 ⑨ 어업고용인 등	이분은 가구주와 어 떤 관계입니까?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 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_{1,2,3,4,5,6,7,8,9} 등	이 분은 경영주와 어 떤 관계입니까? ① 경영주 ② 배우자 ③ 자녀 및 그 배우자 ④ 부 모 ⑤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⑥ 조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친인척 ⑨ 어업고용인 등

14)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자료 연계 항목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가구주와의 관계 기입 • 가구주와의 관계를 직접 기입(기호 선택은 없었음)
1980년	• 경영주란 한 가구의 가계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를 직접 기입(기호 선택은 없었음)
1990년~ 1995년	• 경영주는 세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고 가사를 주동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 가구주와의 관계를 직접 기입(기호 선택은 없었음)
2000년~2005년	• 경영주는 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어업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2010년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 경영주란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업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2015년	• 경영주란 조사대상 가구가 경영하는 농림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

□ 주요국 사례

일본	• 세대의 경제적 중심자란 가정이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을 말하며, 호적상의 세대주와 어업종사자 중에서 중심적인 일꾼은 아님 • 2003년은 경영주 여부를 별도로 조사, 2008년은 경영주인 세대원 사항을 첫째칸에 기입하도록 조사표 설계
대만	• 경영주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구원중 경영주를 기입하지만 가구원과 경영주와의 관계는 미조사

□ 참고 사항

- 겸업어가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상의 가구주와 어업총조사의 경영주가를 다를 수 있으며, 조사과정상에서 호주, 세대주, 가구주와 혼선 가능
- 2015년부터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조사

나 이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인구 분석의 기본항목
- 어업종사가구원수 파악 및 어촌 취업구조 변화 분석
- 어촌인구 노령화 관련 대책자료(노인도우미 제도, 재가노인복지센터, 복합노인 복지단지 확대 등)
- 어촌인구 연령대별 복지수요 파악
- 어촌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기본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12월 1일 현재 만 연령 ① 13세 이하 ② 14 ~ 19 ③ 20 ~ 29 ④ 30 ~ 39 ⑤ 40 ~ 49 ⑥ 50 ~ 59 ⑦ 60세 이상	가구원 만 연령 기입	가구원 만 연령 기입	가구원 만 나이 기입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 무슨 때 입니까? 2.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3. 생년월일은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① 양력 ② 음력 4. 세는나이	1. 2005년 12월 1일 현재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2. 무슨 때 입니까? 3. 집에서 지낸 생일은 언제입니까? ① 11월 30일 이전 (음 10월 29일 이전) ② 12월 1일 이후 (음 10월 30일 이후)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1995년	• 만으로 계산한 연령을 기입하며, 조사기준일을 고려하여 사실상 연령에서 가감
2000년~2005년	• 주민등록(호적) 나이와 관계없이 실제 나이와 띠를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기입 •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99세로 기입
2010년	• 실제 세는 나이만 조사(응답 및 조사부담 경감위해 띠와 생일 경과여부 조사 중지)
2015년	• 주민등록 나이와 관계없이 실제 집에서 세는 나이를 조사기준일로 적습니다.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세대원의 만 나이 기입 ☐ 2008년 • 세대원의 만나이 구간을 선택 (15~19세, 20~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54세, 55세~59세,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 이상)
대만	• 조사기준일 현재 실제 나이를 기입(만 15세 이상만 조사)

□ 참고사항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자료를 연계 활용하거나,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주민등록상 나이 파악 검토

교육 정도

□ 조사 실시년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교육정도	○	○	○	○	○	◆	○
- 수산관련학과 이수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인구의 교육복지 수준 및 수요 파악
- 수산 전문어업인 양성 정책 및 공급현황 파악
- 연령, 성별, 혼인상태와 더불어 어촌인구 분석의 기본항목
- 교육정도별 취업구조 분석 및 어촌 노동정책 자료
- 어촌 학령인구의 교육기회 강화를 위한 분석자료
- 어가 자녀의 교육비 지원 및 외국어·특기·적성교육 강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	최종학력 선택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초급 대졸 이상 ⑤ 무학(글을 안다) ⑥ 무학(글을 모른다)	최종학력 선택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교 ⑥ 대학원 ⑦ 안다녔음	최종학력 선택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⑤ 대학교 이상 ⑥ 안다녔음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수료, 재학, 휴학, 중퇴도 졸업으로 조사) ① 안 받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3년제 이하 대학 ⑥ 4년제 대학 이상
2005년	2010년15)		2015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졸업, 재학, 중퇴별 조사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 학교 ④ 고등학교 ⑤ 3년제 이하 대학 ⑥ 4년제 대학 이상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수산관련 학과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졸업, 재학, 중퇴별 조사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과정 ⑧ 대학원박사과정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졸업, 재학, 중퇴별 조사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	- 최종학력을 조사하며, 재학생은 직전 학력으로 조사, 기타 학원(기술학원, 양재학원 등)은 제외 - 구학제중 공민학교·보통학교는 국민학교, 고등소학교·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로 조사
1990년~1995년	- 조사하는 학력은 재학생 및 졸업자를 포함하여 조사 - 구학제는 현학제에 준하며,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공민학교는 국민학교에 포함 (국민학교: 보통학교·공민학교, 중학교: 고등소학교·고등보통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구(舊) 중학교, 전문대학: 구(舊) 예과, 전문학교) 3군 사관학교 졸업생은 대졸에 포함시키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는 국내학력에 준하여 표시, 검정고시 합격자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재(1990년~)
2000년~2005년	-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정규교육과정(특수학교 포함)의 최종학력 조사 - 교육정도가 「초등학교 ~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졸업, 재학, 중퇴로 구분하여 교육상태 조사(2005년) - 수료, 재학, 휴학, 중퇴도 해당학력의 졸업으로 조사(2000년) - 수산관련학과: 해양산업과, 관광해양 레포츠과, 해양시스템공학부, 해양경영학부, 어업과, 양식과, 해양기술과, 자영수산과, 기관학과 등
2015년	-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 - 기능훈련, 입시학원 등은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1]-0]으로 적습니다. - 조사대상기간 현재의 최고 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주요국 사례

일본	금년 3월 학교 졸업자 기표(실질적으로 교육정도 파악이 목적이 아니고 주종사 분야 파악을 위한 자료)
대만	문맹, 소학 및 독학, 國(初) 및 中,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혼인 상태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인구의 장래가구 형성 및 소멸 예측 자료
- 경영주, 어업종사가구원 등 어업인구의 기본 혼인상태 파악
- 연령, 성별과 연계하여 어촌가구의 복지 수요 파악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규모 파악

□ 조사표 내용

1990년	1995년	2005년
혼인상태 선택 ① 기혼 ② 미혼	혼인상태 선택 ① 기혼 ② 미혼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호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 표시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2010년 ¹⁶⁾		2015년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호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상태 표시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90년~1995년	• 혼인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만 선택
2005년	• 혼인상태 조사는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
2015년	• 집에서 세는 나이 16세 이상만 적습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표시

□ 참고 사항

- 사실혼관계를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으나, 미혼모 조사 및 사회통념상 유배우 관계로 보지 않는 젊은 층의 동거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개인의 민감할 수 있는 사생활 영역이므로 조사상의 난점이 있음
- 국제결혼, 이혼, 농촌 노총각 문제 등으로 응답자 불만 심함

16) 인구주택총조사와 자료 연계 항목

어업 종사 기간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인구의 전겸업 구조 파악
- 어업 경영구조 현황 파악
- 어업종사가구원 파악
- 어업인 실태조사 모집단자료 제공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만 14세 이상의 해상 종사자에 한하여 지난 1년간의 종사 일수별 ① 29일 이하 ② 30 ~ 59 ③ 60 ~ 99 ④ 100 ~ 149 ⑤ 150 ~ 199 ⑥ 200 ~ 249 ⑦ 25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기간별 ① 1 ~ 2개월 ② 2 ~ 3개월 ③ 3 ~ 6개월 ④ 6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 ~ 2개월 ③ 2 ~ 3개월 ④ 3 ~ 6개월 ⑤ 6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없다 ② 1개월 미만 ③ 1 ~ 2개월 ④ 2 ~ 3개월 ⑤ 3개월 이상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미만 (없다 포함) ② 1 ~ 2개월 미만 ③ 2 ~ 3개월 미만 ④ 3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① 없 음 ② 1개월 미만 ③ 1 ~ 3개월 ④ 3 ~ 6개월 ⑤ 6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없 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없 음 ② 1개월 미만 ③ 1~2개월 미만 ④ 2~3개월 미만 ⑤ 3~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어업종사기간을 종사일수 구간으로 기입 • 해상종사자: 해상에서 어로 및 양식 작업에 종사한 자(어선을 타고 일하는 사람과 채조, 포페, 잠수의 작업 등)
1980년~2005년	• 어류, 해조류, 패류 등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과 어업과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종사한 기간 • 자기 또는 남의 어업에 관계없이 모든 어업에 종사한 전체기간
2010년	• 1일 1시간 이상 종사한 일수를 합산하여 기입 • 주부, 학생 등이 경영주를 도와 종사한 기간도 포함
2015년	• 1일 1시간 이상 종사한 일수를 합산하여 연 누계 일수로 기입 • 주부, 학생 등이 경영주를 도와 종사한 기간도 포함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과거 1년 동안 어업에 종사한 사람, 자영업업 경영주 배우자, 자영업업후계자 배우자로 구분 • 과거 1년 동안 어업에 종사한 사람은 자영업업과 어업종사자 및 공동경영 출자, 자영업업 후계자로 구분 • 자영업업은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 육상작업 종사자, 자영업업 경영주로 구분하며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은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 종사일수가 가장 긴 어업 종류, 당시 선박이 10톤 이상인 경우로 구분 • 어업종사자 및 공동경영 출자는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 육상작업 종사자로 구분하며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은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 종사일수가 가장 긴 어업 종류, 당시 선박이 10톤 이상인 경우로 구분 □ 2008년 • 어업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 종사기간이 가장 긴 어업종류, 사용 선박의 종류 (사용안함, 10톤 미만, 10톤이상), 어업 관련 육상작업 종사 여부, 어업신규취업자 여부, 공동경영어업에 종사 여부, 어업임금 종사 여부, 가장 긴 시간 종사한 일 (1. 어업경영, 2. 어업이외자영업, 3. 공동경영어업, 4. 어업임금, 5. 어업이외임금)을 조사 • 어업신규취업자란 1년간 어업으로 항상수익을 얻은 자 또는 그것을 목적으로 주로 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하며, 새롭게 어업을 시작한 사람 (과거 어업에 종사 했었고, 다시 어업을 시작한 사람 포함), 다른 일이 주였지만 어업이 추가 된 사람(다른 산업에 종사 등), 평상시 일이 없었는데 어업이 추가 된 사람(학생 등)을 의미 함
대만	• 연간 어업종사 일수 (구간선택) ① 없음 ② 1 ~ 29일 ③ 30~ 59일 ④ 60 ~ 89일 ⑤ 90일 ~ 149일 ⑥ 150일 ~ 179일 ⑦ 180일 ~ 249일 ⑧ 250일 이상

□ 참고 사항

○ 어업 종사기간은 주 종사분야가 「① 어업」이 아닌 가구원도 조사될 수 있음

- 어업 종사기간은 어류, 해조류, 패류 등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에 종사한 기간과 그물 손질, 어획물 정리 등 관련 육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종사한 기간도 포함
 - 직접 해상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경영주나 선주의 관리활동도 어업 종사기간에 포함
- 자기 또는 남의 어업에 관계없이 어업에 종사한 전체 기간을 포함

어업 종사 형태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경영가구와 임금종사가구 파악
- 어업임금종사자가구 취업구조 분석 및 복지정책 수요파악
- 어업경영가구의 생산성 및 경제성 현황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어업종사 형태별 ① 자영만 ② 자영과 고용 ③ 고용만	어업에 종사한 내용별로 보아 ① 자기경영 ② 고용 ③ 자영과 고용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어떠한가? ① 자기경영 ② 피고용 ③ 자영과 피고용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어떠한가? ① 자기경영 ② 피고용 ③ 자영과 피고용
2000년		2005년	
자기어업에만 종사하였습니까? 남의 어업에도 종사하였습니까? ① 자기어업 ② 남의어업 ③ 자기 어업과 남의 어업		지난 1년간 자기 어업에만 종사하였습니까? 남의 어업에도 종사하였습니까? ① 자기어업 ② 남의어업 ③ 자기 어업과 남의 어업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2005년	• 지난 1년간 자기어업에 종사하였는지 남의 어업에 종사하였는지 조사
2010년	• 보험제(깃가림제)로 종사한 경우에는 「자기 어업에 종사」로 구분
2015년	• 어업 종사 기간이 「② 1 개월 미만~⑥ 6 개월 이상」으로 조사된 가구원만 조사 • 「자기 어업에 종사」는 가구에서 자기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남의 어업에 종사」는 남의 어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을 한 경우를 말함 - 가구원이 경영주를 도와 어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자기 어업에 종사」에 해당 - 보험제(깃가림제)로 종사한 경우에는 「자기 어업에 종사」에 해당

□ 주요국 사례

일본	• 자영어업 종사와 어업임금·공동경영어업 종사로 구분
대만	• 어업상의 신분(지휘자, 작업 승접(承接)자, 기타)

□ 국제 권고안

1985년	[FAO 어업통계를 위한 실용지침서] • 어로어업 이외의 어업관련 활동(가공, 수송, 판매, 기타) 종사자수 조사
-------	--

어업 주 종사 부문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 경영형태의 구성 및 분포 분석
- 지역별 어업경영 구조변화 파악
- 연령별, 성별, 어업종사형태별 주 종사 어업종류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종사한 주된 어업 방법 ① 대자본어업 ② 중소자본어업 ③ 연안어업 (어로) ④ 연안어업 (양식)	어업에 종사한 작업 성질로 보아 ① 어로어업 ② 양식어업 ③ 채조·채취 ④ 기타	어업에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채조·채취(자연산): 헤너어업 ④ 채조·채취 (자연산): 기타 [내수면 어가] ① 양식어업 ② 어로어업	어업에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포획·채취 (자연산):헤너어업 ④ 포획·채취 (자연 산):기타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양식어업 ② 어선어업 ③ 나잠어업 ④ 기타 어로어업 [내수면 어가] ① 양식어업 ② 어로어업
2005년	2010년		2015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양식어업 ② 어선어업(잠수기 어업 포함) ③ 나잠어업(헤너) ④ 맨손어업 ⑤ 기타 어로어업 [내수면 어가] ① 양식어업 ② 어선어업 ③ 기타 어로어업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선어업 ② 맨손어업 ③ 나잠어업 ④ 양식어업 ⑤ 기타어업 [내수면 어가]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기타어업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선어업 ② 맨손어업 ③ 나잠어업 ④ 양식어업 ⑤ 기타어업 [내수면 어가]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기타 어업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대자본어업: 해외어업(원양트롤, 모선식 저인망, 참치연승) • 중소자본어업: 대형기저, 중형기저, 새우트롤, 기선선망, 대형포경 • 연안어업: 대자본, 중소자본어업을 제외한 기타어업 • 연안양식: 양식업
1980년~1995년	• 지난 1년간의 가구원 개개인이 종사한 어업중 종사일수가 가장 많은 종류 기입
2000년~2005년	• 주종사 어업종류가 다양하면 종사기간이 긴 종류, 수입이 많은 종류 순으로 구분 • 기타어로어업에서 맨손어업 별도 구분(2005년)
2015년	• 종사 기간이 긴 부문(비슷하면 수입이 많았던 부문)을 기준으로 조사

□ 참고 사항

○ 어업종류별 개념

- 어선어업 : 어선과 어구를 이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맨손어업 : 손으로 낚,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해조류, 패류, 낙지 등의 자연산 수산 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 나잠어업(해녀) : 산소 공급장치 없이 잠수하여 자연산 패류 · 해조류 · 기타 수산 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 양식 어업 : 수산 동식물의 종패, 치어 등을 이식, 방류하여 기르는 어업
- 기타 어업 : 양식 · 어선 · 나잠 · 맨손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해변에서 그물을 던져 어류를 포획하는 투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어획물 정리, 수산물 선별 · 정리 등) 등을 포함

※ 포획 및 채취업(채조 및 채포업)(자연산) : 연안에서 자연산 패류, 해조류, 어류, 갑각류 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경우(1980년 ~ 1995년)

어업 외 종사기간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인구의 전겸업 구조 파악
- 지역별 어업 경영구조 현황 파악
- 어업 외 소득원 개발정책, 어촌 경쟁력강화정책 자료

□ 조사표 내용

1995년	2000년	2005년
어업이외에 돈벌이를 위해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③ 2~3개월 ④ 3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하였습니까? ① 1개월 미만(없다 포함) ② 1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① 없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④ 3~6개월 ⑤ 6개월 이상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 · 주부, 학생 등의 시간제 근무 기간도 포함해서 조사 ① 없음 ② 1개월 미만 ③ 1 ~ 3개월 미만 ④ 3 ~ 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지난 1년간 어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 · 주부, 학생 등의 시간제 근무 기간도 포함해서 조사 ① 없음 ② 1개월 미만 ③ 1 ~ 3개월 미만 ④ 3 ~ 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95년	·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돈벌이를 위해 종사한 기간
2000년~2005년	·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어업이외의 산업에 종사한 기간 · 자기 집 일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고 남의 집 일에 종사한 기간도 모두 합산(2000)
2010년~2015년	·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하므로 가사, 학생, 공익 요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어업 외 종사 기간으로 보지 않음. 다만, 가정주부, 학생 등이 부업(아르바이트)으로 일한 경우에는 기간에 포함(2010년, 2015년) · 수입을 목적으로 어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2015년)

주 종사 분야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인구의 전겸업 구조 파악
- 어촌 노동력 활용현황 및 경제구조 분석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 어업 의존도별 ① 어업에만 ② 어업이 주 ③ 어업이 부	• 어업에 종사한 일수로 보아 ① 어업에만 ② 어업이 주 ③ 어업이 부	지난 1년간 주로 종 사한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① 어업 ② 어업이외의 일 ③ 학생 ④ 기타(가사, 환자, 무직자)	지난 1년간 주로 종사 한 분야는 어느 것입 니까? ① 어업 ② 어업이외의 일 ③ 학생 ④ 기타(가사, 환자, 무직자)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였습니 까? ① 어업 ② 농업 ③ 도소매업 ④ 제조업 ⑤ 기타 산업 ⑥ 가사, 학생, 군인, 무직 등
2005년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 였습니까? ① 어업 ② 농업 ③ 임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소매업 ⑦ 숙박 및 음식점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가사, 학생, 군인, 무직 등)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업 ② 낚시안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소매업 ⑦ 숙박 및 음식점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 사하였습니까? ① 어업 ② 낚시안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소매업 ⑦ 숙박·음식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1980년	• 지난 1년간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한 일수로 보아 어업에만 종사했다면 「어업에만」, 어업 에 종사한 일수가 어업 이외 종사한 일수보다 많을 경우 「어업이 주」, 어업에 종사한 일수가 어업 이외 종사한 일수보다 적을 경우 「어업이 부」
-------------	---

1990년~2005년	• 두 가지 이상일 경우는 종사기간이 긴 쪽(비슷하면 수입이 많았던 쪽) 분야를 기입하며, 기타산업에는 관공서, 농·수협, 운수업,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업, 직업 군인 등을 포함 • 학생에는 정규학교는 물론 기술학교, 학원 등도 포함(1990년 ~ 1995년)
2010년	• 낚시안내업(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 추가 • 기타산업 : 관공서, 농·수협, 운수업, 교육·의료·서비스업, 직업군인 등이 해당 • 종사하지 않았음 : 가사, 학생, 공익요원, 무직 등이 해당
2015년	• 가구원이 두 가지 이상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종사 기간이 긴 부문(비슷하면 수입이 많았던 부문)을 적는다 - 어업 종사 기간과 어업 외 종사 기간을 비교하여 적어야 한다. 사례 : 어업 종사 기간 > 어업 외 종사 기간 ⇨ 주 종사 분야는 어업 • 낚시안내업 :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를 하도록 서비스하는 직종에 해당 • 기타산업 : 관공서, 농·수협, 운수업, 교육·의료·서비스업, 직업군인 등이 해당 • 종사하지 않았음 : 가사, 학생, 공익요원, 무직 등이 해당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과거 1년간 생업 미종사자 • 과거 1년간 종사한 직업: 자영업(육상작업 포함), 자영농업(경영 경지면적 10a 이상 또는 판매금액 15만엔 이상), 기타 자영업(연간 15만엔 이상 판매있는 자영업: 수산가공업, 유어안내업, 여관 및 민박, 기타), 공동경영에 출자 종사(육상작업 포함), 어업고용(육상작업 포함) • 자영업의 경영주란 자영업의 경영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나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 과거 1년간 종사한 일 중 주된 일(종사일수가 가장 긴 일) • 자영업 및 그 이외의 일 관련: 자영업이 주, 기타가 주(자영업 일수와 그 외 모든 일의 합계 종사일수 비교) □ 2008년 • 어업이외 자영업 종사, 어업이외 임금 종사 여부 • 주된 종사 분야 (어업경영, 어업이외자영업, 공동경영어업, 어업임금, 어업이외임금/ 자가어업, 그 외) • 어업이외 종사를 자영업(수산가공업, 민박, 낚시안내업, 기타)과 임금노동으로 구분 □ 2013년 • 어업입문자(어업을 시작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조사 -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
대만	• 평상시 주요 종사부문을 기입: 농림어목업, 레저 및 관광 어(농)업·음식·숙박업, 제조·상업, 요리 등 가사, 학업 및 진학준비, 질병·양로, 기타

□ 참고 사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어업관련서비스업(어족보호 서비스업, 어획물 정리서비스업, 수산물선별정리 서비스업, 어획물 출하준비 서비스업) 종사자가 기타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지침에 예시를 명시하고, 반대로 염전은 어업으로 조사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 사례를 예시
- 어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는 어업조사에서는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용자의 혼란이 있으므로 가급적 일치하여 시계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검토
 - 어가 구성원의 종사형태를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직업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예를 들면, 건설현장의 노무자로 일하는 어가인구가 건설업으로 집계되는 것 보다는 단순노무직으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농가인구의 경우는 음식점업보다는 서비스·판매직으로 집계되는 것이 현실감이 있음

어업 외 주 종사 분야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인구의 전겸업 구조 파악
- 어촌인구의 취업구조 및 경제구조 파악

□ 조사표 내용

1980년	1990년	1995년
어업이외의 사업에 종사한 분야 ① 농 업 ② 상공업 ③ 서비스 ④ 기 타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종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느 것 입니까?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상 업 ④ 농 업 ⑤ 기 타	어업이외의 일종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① 회사원 ② 상 업 ③ 농 업 ④ 기 타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1995년	•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사업에 종사한 분야를 조사하며 가구원 중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이외의 사업에 종사한 가구원도 주로 종사한 분야에 따라 기입
-------------	---

□ 주요국 사례

일본	[어업이외의 직업에 종사] • 어업관련 시설에 종사(상시고용, 임시 및 일용) • 기타(상시고용, 임시 및 일용)
대만	• 어업이외 종사분야를 복수로 선택 • 자가경영과 고용인으로 구분하여 조사 • 산업대분류로 세분 - 자가경영: 농목업, 농사와 축목업, 임업, 제조 및 상업 - 고용인: 농업·임업·어업·목축업, 제조 및 상업

□ 참고 사항

○ 겸업구분

- 사무직 : 기업체 및 국가기관에서 행정업무(주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 생산직 : 공장 등에서 직접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사람(기계, 용접, 기타 수리 등)
- 회사원 : 회사 또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불문한다(사무직, 생산직, 공무원 등)
- 상 업 : 가족단위로 경영하는 장사를 말하며, 여기에 고용된 판매원도 포함
- 농 업 : 농작물 재배, 가축 및 가금의 사육, 양잠, 양봉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기 타 : 리·통·반장, 수위, 운수업, 주유업, 도정업, 소개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과 농수산물가공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

3. 어업 생산

보유 어선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보유어선척수		◎	◎	◎	◎
- 연간 사용한 어선의 종류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국가 기본 어선 규모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2000년		2005년																			
경영규모 - 지난 1년간에 사용한 어선은 • 동력선(선명, 톤수, 척수) • 무동력선(선명, 톤수, 척수)		2000년 12월 1일 현재 댁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은 몇 척입니까? • 동력선, 무동력선별 조사		2005년 12월 1일 현재 댁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은 몇 척입니까? • 동력선, 무동력선별 조사																			
2010년		2015년																					
2010년 12월 1일 현재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동력선, 무동력선별 조사		2015년 12월 1일 현재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해수면) 2015년 12월 1일 현재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내수면) • 자기 소유라도 남에게 빌려준 어선은 제외하고 임차한 어선은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어로어업 (단위:척) <table><tr><th colspan="2">어 선 합 계</th><th colspan="2">동 력 선</th><th colspan="2">무 동 력 선</th></tr><tr><th>십</th><th>일</th><th>십</th><th>일</th><th>십</th><th>일</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어 선 합 계		동 력 선		무 동 력 선		십	일	십	일	십	일						
어 선 합 계		동 력 선		무 동 력 선																			
십	일	십	일	십	일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보유어선이 아닌 사용한 어선을 조사 • 자기소유이든 빌린 것이든 상관없이 어업생산에 참가한 모든 어선을 조사 • 총톤수가 큰 것부터 기입, 등록 및 신고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한 어선의 톤수기입 • 어선과 어망을 각자 제공하여 어업에 참가한 경우 어선 제공자만 사용어선에 기입
-------	--

2000년~2010년	• 조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선을 동력선과 무동력선으로 구분하여 조사 • 공동소유 어선은 가구별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나 지분이 많은 어가에서 조사 • 조사대상 어선 : 임차한 어선, 미사용 중이지만 조사기준일 현재 사용가능한 어선, 고장난 어선이지만 수리하여 사용가능한 어선 • 조사 제외되는 어선 : 남에게 빌려준 어선, 말소처리 되지 않은폐선, 낚시 및 관광객 수송용으로만 사용하는 선박, 고령·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조사 기준일 이전에 어업을 중단한 가구의 선박 • 어가에서 선외기(엔진)와 무동력선을 2척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동력선 중 1척은 선외기 동력선으로 분류
2015년	• 조사 기준일 현재 사용할 수 있거나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선 • 공동소유의 어선은 대표자나 지분이 많은 어가에서 조사 • 어가에서 선외기(엔진)와 무동력선을 2척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무동력선 중 1척은 선외기 동력선으로 분류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사용한 어선의 종류는?(임차사용의 경우도 포함) ①동력선 ②선외기 부선 ③무동력선 • 1대의 선외기를 복수의 무동력선에 붙여서 사용한 경우는 1척을 선외기 부선으로 하고 나머지 1대는 무동력선으로 기입 • 지난 1년간 사용한 무동력선, 선외기부선 중에서 조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선 척수는?(임차사용의 경우도 포함) • 어선은 경영체가 소유 또는 빌린 어선 중에서 지난 1년간에 자기어업 생산에 사용한 주 선박 및 부속선(화선(火船), 어탐선(漁探船), 운반선 등)을 기입 ※화선: 여러 척의 배가 떼를 지어 밤에 고기를 잡을 때 불을 밝히는 배) • 어선등록을 받았어도 직접 어업에 사용하지 않은 선박(유어(遊漁)만을 위해 사용, 매수용 운반선 등)은 제외 □ 2008년 • 사용한 어선의 종류 • 무동력선과 선외기선의 보유 척수 • 지난 1년간 사용한 동력어선별 톤수, 현재 보유 여부 • 현재 보유 동력선의 1년간 출어일 수, 판매금액 1위의 어업종류
----	--

□ 참고 사항

- 등록 어선통계와의 어선수 괴리문제
 - 어선 등록통계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모든 어선수를 집계한 것이고, 어업총조사의 어선척수는 어가정의에 부합되는 개인어가에서 실제 어업활동에 사용한 어선을 응답자의 응답에 근거하여 조사

[어업총조사시 조사 대상어선 예시]

-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남의 어선을 빌려서 보유하고 있는 어선
- 조사 기준일 현재 사용할 수 있거나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어업총조사시 제외되는 등록어선 예시]

- 원양 어선, 개인가구가 아닌 어업사업체의 연근해어업 어선
- 등록은 되어 있으나, 조사기준일 현재 어가정의에 맞지 않는 비어가의 어선
 - ① 고령, 경영수지 악화로 조사기준일 이전 어업을 중단한 경우
 - ② 어업활동 1개월 미만인 경우
 - ③ 낚시선 · 유어선 · 운반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④ 등록 후 폐선되었으나 5년이내 말소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⑤ 등록 후 면세유, 보상 진행중, 보상계획 등으로 말소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⑥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어가의 착오답변 및 응답불응 등

어선 현황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어선 현황	○	⊗	⊗	⊗	⊗	⊗	⊗	⊗
- 어선명	○	⊗	⊗	⊗	⊗	⊗	⊗	⊗
- 동력 유무(어선 형질)	○	⊗	⊗	⊗				⊗
- 어법			⊗	⊗				⊗
- 톤수(G/T)	○	⊗	⊗	⊗	⊗	⊗	⊗	⊗
- 어선 재질		⊗	⊗	⊗	⊗	⊗	⊗	⊗
- 연간 출어 일수					○	⊗	⊗	⊗
- 평균 승선 인원(명)		○	○	○	⊗	⊗	⊗	⊗
- 소유형태					⊗	⊗		
- 마력수		⊗	⊗	⊗				
- 추진기관					⊗	⊗	⊗	
- 선령		⊗	⊗	⊗	⊗	⊗		
- 임금		○	○					
- 어선 변동상황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국가 기본 어선세력규모 파악
- 어가 경영자산 및 어선 면세유 대상가구 자료
- 어업 현대화 및 대규모화 현황
- 어업 조업상황 및 노동력규모, 어업임금종사자가구 대상 규모 파악
- 어가 경영구조의 건전성, 어가 양극화 추정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 어선조사 ① 어선명 ② 선형 ③ 선질 ④ 선령 ⑤ 톤수(T) ⑥ 마력수 ⑦ 선원수(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기타 선원수별 조사)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는 급별 조사 ⑧ 임금(선장, 기관장, 기타) ⑨ 어선 증감 (무동력, 동력선별 조사) - 증가(신규건조, 구입) - 감소(판매, 폐선) ※ 내수면은 어업용도(어로용, 양식용) 조사, 선원수는 미조사	12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어선과 선원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① 어선명 ② 어업의 종류 ③ 선형(동력, 무동력) ④ 선질(강조, 목조, FRP) ⑤ 선령(연수) ⑥ 톤수 ⑦ 마력수 ⑧ 선원수(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일반선원수별 조사)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는 급별 조사 ⑨ 임금(선장, 기관장, 기타) ⑩ 어선 증감 (무동력, 동력선별 조사) 증가(신규건조, 구입) 감소(판매, 폐선) ※ 내수면은 어업용도(어로용, 양식용) 조사, 선원수는 미조사
1995년	2000년	2005년
12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어선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① 어선명 ② 어업의 종류 ③ 종류(동력, 무동력) ④ 재질(강조, 목조, FRP) ⑤ 선령(연수) ⑥ 톤수(T) ⑦ 마력수 ⑧ 선원수(해외어업 제외: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일반 선원수별 구분 조사) ※ 내수면은 어업용도(어로용, 양식용) 조사, 선원수는 미조사	보유어선의 동력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동력선명 ② 소유 형태(자가, 임차) ③ 톤수(G/T) ④ 추진기관(선내, 선외) ⑤ 재질(강선, 목선, FRP) ⑥ 선령(년수) ⑦ 지난 1년간 출어 일수(※ 내수면은 제외) ⑧ 승선 인원(남·녀별 평균)	보유어선의 동력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동력선명 ② 소유 형태(자가, 임차) ③ 톤수(G/T) ④ 추진기관(선내, 선외) ⑤ 재질(강선, 목선, FRP) ⑥ 선령(년수) ⑦ 지난 1년간 출어 일수 ⑧ 승선 인원(남·녀별 평균)
2010년		2015년
동력선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어선 명칭 ② 톤 수(G/T) ③ 추진 기관(선내, 선외) ④ 재질(강선, 목선, FRP) ⑤ 연간 출어 일수(일) ⑥ 평균 승선 인원(명)		동력선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어선 명칭 ② 동력 여부 ③ 어법(어벌명, 부호) ④ 톤 수(G/T) ⑤ 어선 재질(강선, 목선, FRP선) ⑥ 연간 출어 일수(일) ⑦ 평균 승선 인원(명) ※ 무동력선은 어선명, 동력여부, 어법 기입 ※ 어선 톤수는 총톤수(신 톤수)로 기입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투자금액에서 대선건조, 기관대체, 신규건조 어선현황만 조사
1980년~1995년	• 항해사는 어선의 갑판위에서 근무, 기관사는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1980년 ~ 1990년) • 임금은 선원 종류별로 구분하여 월평균지급액을 기입, 선주와 선장이 동일인이면 기재하지 않음(1980년 ~ 1990년) • 어선은 소유가 아닌 사용개념으로 조사하고, 주어선, 부속선, 운반선 등 어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모든 어선을 포함 • 등록 및 신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어업에 사용한 어선을 기입 • 「주어선」 선정은 동력선 여부와 총톤수를 순차적으로 적용 • 선박의 재질이 혼합된 선박은 주된 재질에 따라 구분 • 공동소유 어선은 공동경영체와 개인경영가구 모두 조사하며, 대표자 또는 지분이 많은 개인가구에서 조사 • 어로와 양식 공용일 때는 주로 사용한 용도에 따라 기입(1990년 ~ 1995년) • 전진만 되고 후진은 되지 않는 어선(준동력선)도 동력선으로 구분 • 마력수는 주기판의 마력수를 기입 • 선원수는 연근해어업의 승선원만 조사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는 면허종류별로 기재(1980년 ~ 1990년) • 자기어선을 가지고 가족 승선하는 경우는 일반선원수로 조사
2000년~2005년	• 보유어선척수에서 조사된 동력선에 대하여 조사 • 동력선 이름이 없으면 '○○○'으로 기입, 톤수(G/T)는 선박의 총 용적을 표시한 총 톤수, 어선의 엔진(추진기관)에 따라 선내기선, 선외기선으로 구분 • 선내기선은 엔진을 선체내에 고정한 동력선, 선외기선은 엔진을 선체의 바깥부분에 설치한 어선으로 엔진의 탈·부착이 자유로운 동력선 • 어선의 재질은 어선의 외판에 따라 강선(강철제, 알루미늄제), 목선(목재), FRP(강화 플라스틱제)로 구분 • 선령은 동력선이 건조되어 진수된 날로부터 경과된 년수 • 지난 1년간 출어일수는 어업활동을 위하여 1년간 출어한 총 일수이며, 낚시, 관광객 수송 등으로 출어한 일수는 제외 • 승선인원은 어선별로 1회 출어를 위하여 평소에 승선하는 사람 수
2010년	• 소유형태 및 선령 삭제(2010년) • 톤수(G/T)는 선박의 총용적을 표시한 총톤수를 적고, 구 톤수(1982년 이전)등록 어선은 신 톤수로 환산하여 기입 (신 톤수=구 톤수*1.4) • 어선 명칭이 없으면 「○○○」으로 기입 • 연간 출어 일수는 어선별로 어업 활동을 위하여 1년간 출어한 전체 일수를 조사하고 낚시 안내, 관광객 수송 등 어업 외 활동을 위해 출어한 일수는 제외 • 어선의 평균 승선 인원은 어선별로 1회 출어를 위하여 승선하는 평소 인원 수를 기입
2015년	• 항목명을 '동력선'에서 '어선 현황'으로 변경 • '동력여부', '어법' 추가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동력선 보유 현황 조사 • 지난 1년간 사용한 동력선 현황: 동력선명, 톤수, 신톤수 적용어선, 조사기준일 현재 보유 여부 • 조사기준일 현재: 주기판의 마력수, 농림마력수(어선법 등록 마력수), 신마력수 적용어선 여부, 준공년도, 어선이용현황(단일조업, 복합조업), 지난 1년간 출어일수, 판매금액 1위의 어업종류(어종번호, 승무원수) • 승무원수는 남자(연령별로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여자, 외국인으로 구분 • 신톤수의 적용을 받는 어선: 1982년 7월 18일 이후 만들어진 어선 및 특정수선(修繕)(총 톤수에 변경을 가져오는 수선)을 한 어선이 전부 해당 • 농림마력수: 어선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어선등록에 사용하는 마력수 • 신마력수의 적용을 받는 어선: 2002년 4월 이후에 새로이 추진기관을 탑재한 어선 • 단일조업: 조업한 어업종류가 1종류, 복합조업: 조업한 어업종류가 2종류 이상 • 출어일수 계산: 어장까지의 왕복일수와 어장에서 조업일수를 합계한 일수로서 일일조업은 1일중에서 2회 이상 조업하여도 1일, 1 항해가 1일방인 경우(저녁무렵 출항하여 다음날 아침 입항)는 1일, 이틀밤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출항일부터 입항일 까지를 일수로 계산 • 판매금액 1위의 어업종류: 어업종류의 지방명칭과 제도구분 일람표를 참고 • 내수면조사는 보유어선 종류(무동력선, 선외기부선, 동력선: FRP, 기타)와 톤수 합계만 조사 □ 2008년 • 해수면 조사 동력선 보유 여부 조사(무게, 1년간 출어일수, 판매금액 1위의 어업종류) • 내수면 조사 어선 보유 척수(무동력선, 선외기부선, 동력선) 동력선의 총 무게(톤) □ 2013년 • 해수면 조사 무동력선, 선외기부선 보유 척수 조사
대만	• 어로작업 종류와 어선설비: 선형(동력선, 무동력선, 뗏목, 어선미사용 및 채포), 동력선 톤수, 주요 어로방식, 관광산업 종사자 어선 사용유무, 채포 어업작업 어선 유무 • 양식어업 경영시 어선설비: 동력선, 무동력선, 뗏목 등 어선 척수와 어업이외 목적(어업 휴업) 사용 척수 구분 기입

□ 국제 권고안

1963년	• FAO 12차 로마 총회 결의안: 어로작업에 이용되는 선박, 어구, 그물 등에 대한 발전과 향상
1985년	[FAO 1985년 어업통계를 위한 실용 지침서] • 비용과 수익부분 조사지침 중 • 사용 어선: 어선명, 소유구분(자가, 임차), 어선 길이, 어업형태, 구입 연도, 구입시 어선상태(신규, 중고), 선령, 신규어선의 구입가, 조업가능 연수 • 사용된 주 엔진 : 선박명, 엔진명, 마력, 엔진종류, 회전수, 구입연도, 엔진상태(신규, 중고), 사용 연도, 엔진구매가격, 사용가능 연수 • 승선인원 : 총승선인원수, 가족종사자수, 고용자수 • 승선인원을 고용주, 선장, 선장 보조, 기관사, 기관사 보조, 요리사, 선원장, 선원(1,2,3등) 등으로 구분
1998년	[FAO 전문가회의: 어로어업 자료의 경상수집 지침] • 어로어업 경영지표/어선변수: 어선명, 등록번호, 어업허가서, 선장 성명 및 선원 번호, 어선 형태(저인망, 낚망 등), 선외/선내기, 돛, 엔진 마력, 발전기, 크기, 적재 능력, 길이, 폭, 등급 및 직종별 승선원수, 어구, 어로항행 번호, 일시, 보조 설비(헬기, 구명보트 등), 저장장치(형태, 능력, 온도), 냉장장치, 통신장치, 기타 전기장치

어법 종류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어법 종류	○	⊗	⊗	⊗	⊗	⊗	⊗	⊗
- 원양 어업	○	○	○	○				
- 연·근해 어업	○	○	○	○	○	○	○	○
- 최대 어획금액 어업종류	○	⊗	⊗	⊗				
- 어획량 순위							○	⊗
- 기타 어법 종류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 기본경영구조 파악
- 어로어업 가구대상 표본조사의 기본항목
- 전국 및 지역별 어로어업가구 규모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지난 1년간에 경영한 어업의 종류와 그 중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주된 어법과 잡은 것 모두 조사 · 내수면은 면허어업(공유수면), 면허 및 신고 어업(사유수면), 허가 및 신고 어업으로 구분	지난 1년간 종사한 어업의 종류를 기입하십시오 지난 1년간 종사한 어업의 종류 중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을 하나만 기입하십시오 · 천해양식업의 품종을 어업의 종류에서 나열하여 조사	종사한 어업의 종류 중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 하나만 기입하십시오 종사한 어업의 모든 종류를 기입하십시오 · 천해양식업의 품종을 어업의 종류에서 나열하여 조사
2000년		2005년	
지난 1년간 경영한 어법별 업의 종류를 판매금액이 많은 순으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한 어법의 종류를 판매금액이 많은 순으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법 종류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법종류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해수면 경영어가가 내수면어업도 병행하면, 어업의 종류에서 내수면어업에 기입 • 채조 및 포패는 자연산 채조, 포패외에 김, 굴, 백합, 진주양식을 제외한 해조류 양식과 패류양식을 포함
1980년	• 지난 1년간 어로어업으로 어획한 어업의 종류 전부를 기입 • 주된 어법은 지난 1년간 어로활동으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업종류를 기입
1990년~1995년	• 지난 1년간 종사한 어업의 종류중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의 종류 기재 • 그외 실제로 종사한 어업의 모든 종류를 기입 •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으로 구분 • 공동 경영체의 구성원이 공동경영의 어업활동에만 참여하고, 공동경영이외에 별도로 자기 경영이 없을 때는 개인경영체로서의 어업의 종류는 공동 경영체에서 조사된 어업의 종류와 일치하여야 함 • 면허어업과 면허 및 신고업은 공유수면(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면), 사유수면(공공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내수면으로서 개인(법인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수면)으로 구분(내수면)
2000년~2005년	• 실제 조업한 어법을 기준으로 조사 • 지난 1년간 경영한 어법종류 모두를 조사 • 판매금액순위는 판매금액이 많은 순으로 1, 2, 3순위에 각각 표시
2010년	• 판매금액 순에서 경영한 어법 종류를 어획량이 많은 순으로 기준 변경 • 경영 어법은 허가·면허받은 어법이 아닌 실제 조업한 어법을 기준으로 작성
2015년	• 경영 어법은 허가·면허받은 어법이 아닌 실제 조업한 어법을 기준으로 작성 • 경영한 어법 종류를 어획량이 많은 순으로 1, 2, 3순위에 각각 표시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어업종류 및 어업제도 기입시에는 「어업종류의 지방명칭과 제도구분 일람표」 참고 • 과거 1년동안 일한 어업종류 기입(고용되어 일한 어업종류는 제외) • 활어판매인 경우 별도 표시(활어란 살아 있는 채로 선박에서 내어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한 것, 어업자가 특허 살리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살아 있는 상태가 통상인 경우는 제외) • 지난 1년간 경영한 어업종류 및 제도를 영입한 전부에 대해 기입, 판매금액 1위 별도 기입: 대신(大臣) 허가어업, 지사 허가어업, 대신 승인어업, 어업권어업, 자유어업, 기타 • 지방선정 어업종류: 「지방선정 어업종류 일람표」를 참조하여 지난 1년간 종사한 지방선정 어업종류에 대하여 전국어업종류번호, 지방선정 어업종류 및 번호 기입 □ 2008년 • 어업종사 세대원 별 종사기간이 가장 긴 어법종류 기입 • 어선 별 판매금액 1위인 어법종류 기입 • 1년동안 경영한 어업, 판매금액 1순위·2순위 어법 기입
대만	• 주로 경영한 어업종류 ① 원양어로 ② 근해어로 ③ 연안어로 ④ 내륙어로 ⑤ 해면양식 ⑥ 내륙염수양식 ⑦ 담수양식 ⑧ 레저 및 관광 어업 ⑩ 어업 미경영

□ 국제 권고안

1998년	[FAO 전문가회의: 어로어업 자료의 정상수집 지침] • 어로어업 투입지표의 어구변수증: 어구 형태, 구조, 크기, 전개방법, 보조선택, 전기장치, 미끼 등을 예시
-------	--

□ 참고 사항

- 어촌계 마을어업 참여 어가는 소속 어촌계가 취득한 면허 종류에 따라 구분해서 조사
 - 마을어업 면허, 양식어업 면허 모두 취득한 마을 어장 ⇨ 양식어업
 - 마을어업 면허만 취득한 마을 어장 ⇨ 맨손어업
- 어법종류에서 맨손어업 추가 사유
 - 맨손어업이란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시행령 33조)
 - 우리나라 어업은 규모화된 어선어업·양식어업과 영세한 지역주민 위주의 맨손어업(주로 패류채취)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간석지 등을 낚 해안가의 경우 맨손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이 많음
 - 맨손어업자들은 어선이나 양식장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반농반어, 관행어업 등의 형태로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어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어업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어법 종류(해수면 어가)
 - 연안복합어업 : 손꽂치어업, 패류미끼망어업, 패류껍질어업, 문어단지어업, 낚시어업(주낚, 외줄낚시, 채낚기)
 - 기타정치성구획어업 : 지인망, 선인망, 건망, 부망, 해선망, 안간망, 건간망, 호망, 승망, 장망
 - 기타어업 :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등

■ 연도별 해수면 어로어법

조 사 항 목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원양어업								
○ 원양연승	○	○	○	○				
○ 원양트롤	○	○	○	○				
○ 원양채낚기		○	○	○				
○ 모선식저인망	○							
○ 원양선망			○					
○ 원양통발		○	○					
○ 기타원양	○	○	○	○				
□ 연·근해어업								
○ 포경업	○	○						
○ 저인망	○	○	○	○	○	○	○	○
· 대형저인망	○	○	○	○	○	○	○	○ ¹⁷⁾
· 중형저인망	○	○	○	○	○	○	○	○ ¹⁸⁾
· 대형트롤	○	○	○	○				○
· 동해구 중형트롤		○	○	○				○
· 기선권현망	○	○	○	○	○	○	○	○
· 근해트롤					○	○	○	
· 범선저인망			○					
· 근해형망		○	○	○	○	○	○	○
· 연안형망				○				
· 연안조망			○	○	○	○	○	○
○ 선망	○	○	○	○	○	○	○	○
· 대형선망		○	○	○				○
· 소형선망		○	○	○				○
· 연안선망				○	○	○	○	○
· 근해선망(기선선망)	○				○	○	○	
· 범선선망		○	○					
· 기타선망	○							
○ 부망	○	○	○	○	○	○	○	○
· 근해안강망	○	○	○	○	○	○	○	○
· 근해봉수망					○	○	○	○
· 근해자리돔들망					○	○	○	○
· 연안개량안강망	○	○	○	○	○	○	○	○
· 연안들망					○	○	○	○
· 분기초망		○	○	○				
· 기타부망	○	○	○	○				
○ 자망	○	○	○	○	○	○	○	○
· 근해자망		○	○	○	○	○	○	○

· 연안자망		○	○	○	○	○	○	○
○ 인망	○	○	○	○	○	○	○	○
· 기선선인망		○	○	○	○	○		
· 연안선인망					○	○	○	○
○ 통발		○	○	○	○	○	○	○
· 근해통발		○	○	○	○	○	○	○ ¹⁹⁾
· 연안통발		○	○	○	○	○	○	○
○ 근해연승	○	○	○	○	○	○	○	○
○ 연안연승	○	○	○					
○ 근해채낚기		○	○	○	○	○	○	○
○ 근해외줄낚기			○					
○ 연안채낚기		○	○	○				
○ 잠수기	○	○	○	○	○	○	○	○
○ 연안복합어업					○	○	○	○ ²⁰⁾
□ 구획어업								
○ 주목망								○
○ 각망								○
○ 낭장망								○
○ 구획어업				○	○	○	○	
· 이동성구획어업				○	○	○	○	
· 기타정치성구획어업				○	○	○	○	○
○ 패류형망								○
○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
□ 기타								
○ 정치망	○	○	○	○	○	○	○	○
· 대형정치망어업	○				○			
· 중형정치망어업					○			
· 소형정치망어업	○				○			
○ 맨손어업						○	○	○
○ 나잡어업						○	○	○
○ 기타어업	○	○	○	○	○	○	○	○
○ 마을어업					○			
○ 채조, 포패	○							
○ 공동어업		○	○	○				
· 패류				○				
· 해조류 채취				○				
· 정착성 수산동물 포획/채취				○				
○ 투망어업						○		
○ 신고어업				○				
○ 내수면어업(양식)	○							

연도별 내수면 어로어법

조 사 항 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자망어업	○	○	○	○	○	○	○
○ 연승어업				○	○	○	○
○ 낱장만어업				○	○	○	○
○ 각망어업				○	○	○	○
○ 낚시어업	○	○	○				
○ 투망어업	○	○	○				
○ 주낙어업	○	○	○				
○ 종묘채포어업	○	○	○	○	○	○	○
○ 패류채취어업	○	○	○	○	○	○	○
○ 정치망어업	○	○	○	○	○	○	○
○ 공동어업	○	○	○	○	○	○	○
○ 조류채취어업		○		○	○		
○ 어전어업	○	○					
○ 빙어채포어업	○	○	○				
○ 기타허가어업		○	○				
○ 신고어업	○	○	○	○			
○ 기타어업					○	○	○

17) 대형저인망(외끌이, 쌍끌이 대형 저인망)

18) 중형저인망(동해구·서남해구 외끌이, 서남해구 쌍끌이)

19) 근해통발 : 근해 장어 통발, 근해 문어 단지

20) 연안복합어업 : 손공치어업, 패류끼망어업, 패류껍질어업, 문어단지어업, 낚시어업(주낙, 외줄낚시, 채낚시)

<참고>

수산업법 및 내수업어업법상의 어업종류

1. 면허어업(면허 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 어업권의 대상)

1) 정의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 독점적으로 특정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수면이란, 공공수면 및 공공수면과 연결일체가 된 비공공수면을 일정한 구역으로 한정하여 어장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며, 배타독점적인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수면에서 아무런 어업이나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내용에 따라 배타적으로 특정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종류

① 해수면어업

• 정치망어업

- .. 대형(10ha 이상), 중형(5~10ha), 소형(5ha 미만)으로 구분
- ..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사용 어구: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족방림,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

• 해조류 양식어업

-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 바닥식: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양식
- .. 수하식: 수중에 대, 지주, 뜬,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양식

• 패류 양식어업

-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 가두리식: 부자에 의해 수면에 떠 있는 4각의 목재 구조물의 둘레를 그물로 막아 해수가 자유로이 드나들고 어류 등 수산동물이 나가지 못하도록 시설한 우리에서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을 양식하는 방법(어류, 전복)

※ 부자 : 수중에 장치한 어구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수면에 뜨도록 고안된 장치

.. 바닥식, 수하식

• 어류 등 양식어업

-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 가두리식, 수하식, 바닥식
- .. 축제식: 자연의 해면에 제방을 쌓아 일정한 수면을 조성하여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 해수를 교환하여 어류, 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방법

• 복합 양식어업

- .. 양식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조류, 패류, 어류 등 서로 다른 양식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 수하식, 바닥식, 축제식
- .. 혼합식: 가두리, 수하식, 바닥식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양식

• 협동 양식어업

- ..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만 면허

• 마을어업

- .. 최간조시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7미터 이내)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

② 내수면어업

• 양식어업

-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정치망어업

-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그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공동어업

-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 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조류채취어업

- .. 일정한 수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순채)를 채취하는 어업

3) 면허 유효기간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 다시 1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허가어업

1) 정의

수산동식물의 양식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공공 복리증진의 필요상 부과되어진 제한을 배제하여 본래부터 존재된 자연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면허에 있어서처럼 일반에는 인정되지 않는 법률상의 힘을 새로 부여하는 것은 아님

2) 종류

① 해수면어업(농림수산식품부장관 허가)

- 원양어업: 해외 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 .. 원양연승어업, 원양기선저인망어업, 원양트롤어업, 원양선망어업, 원양자망어업, 원양봉수망어업, 원양채낚기어업, 원양통발어업, 원양안강망어업

- .. 원양모선식어업: 냉장, 가공설비 기타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 보유

- 근해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 저인망을 사용
 - ※ 저인망: 끌그물류에 속하며, 자루그물에 기다란 끌줄을 달아 아랫자락이 해저에 닿도록 하면서 수평방향으로 끌어, 해저에 붙어 살거나 해저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어종을 잡는 어구
 - ..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어선, 저인망을 사용
 - .. 근해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해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
 - .. 근해선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선망사용
 - ※ 선망: 우리형 또는 나선형으로 어군을 둘러싼 후 아랫자락을 죄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
 - .. 근해채낚기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 사용
 - ※ 채낚기: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미늘이 없는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맨 줄을 이용한 어업
외줄낚시: 수산동물을 채어 낚을 수 있도록 낚시를 1개 또는 여러개를 달아맨 한 가닥의 줄을 말한다
 - .. 기선선인망어업: 동력어선, 인망(저인망 제외)사용
 - ※ 인망: 그물을 수평방향으로 임의 시간 동안 끌어서 잡는 어구로서, 어구는 자루만으로 된 경우도 있으나, 자루의 앞쪽에 날개가 있고, 그 끝에 기다란 끌줄이 달린 것이 일반적임, 어구를 사용하는 층에 따라 저층끌그물 · 중층끌그물 · 표층끌그물로 구분
 - .. 근해자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 사용

※ 자망: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그물로 어도를 차단하여, 대상물이 그물코에 낚히도록 하여 어획하는 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안강망 사용

※ 안강망: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 날개가 없는 긴 자루그물을 닢으로 부설하여 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대상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어구

.. 근해붕수망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붕수망, 초망, 들망 사용

※ 붕수망: 보자기 형태의 그물 한쪽변에는 뜬대를, 다른 한쪽변에는 침자를 달아 뜬대와 침자가 달린 그물의 상하 언저리에서 다수의 조임줄을 내어 이를 조작하여 그물을 수중에 부설하고 그물위에 모인 고기를 어획하는 어구

※ 들망(부망): 수면 아래 펼쳐두었다가 수산동물을 그 위로 유인한 후 들어 올려 포획하는 그물

초망(쭈대): 잡고자하는 수산동물의 밑으로 이동시킨 후 떠올리는 그물을 말한다

.. 잠수기어업: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근해통발어업: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

※ 통발: 미끼를 먹거나 은신처를 얻기 위해 수산동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된 가는 뗏조각이나 철사 등으로 만든 통
문어단지: 문어의 은폐성을 이용하여 단지(토기, 플라스틱)를 긴 모릿줄에 달아 그 속에 들어온 문어를 잡는 기구

소호: 소라껍데기를 달아 투승하였다가 그 속에 들어간 쭈꾸미를 잡는 기구

.. 근해형망어업: 동력어선, 형망 사용

※ 형망: 자루모양의 그물아궁이에 해저를 긁기 위한 빗모양의 살이 달린 나무 또는 틀을 만들어 아궁이를 일정하게 벌려 해저를 쓸고 가는 것

.. 근해연승어업: 총톤수 8톤 이상 동력어선, 주낙 사용

※ 주낙: 대상물을 일시에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하여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마다 낚시 1개씩을 달아 수평으로 부설하여 낚아 잡는 어구

② 해수면어업(시·도지사 허가)

• 연안어업: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과 구획어업을 제외한 어업

..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유자망, 고정자망 사용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개량 안강망 사용

.. 연안선망어업: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사용, 선망 또는 양조망 사용

※ 양조망: 수건 모양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싼 후 그 범위를 줄여서 어획하는 것, 그물의 아랫깃에 조임줄을 장치하지 않고 어군이 아래 쪽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의 깊이가 수면부터 해저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사용, 통발 사용

..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사용, 통발 사용

.. 연안조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

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

- .. 연안선인망어업: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인망 사용하여 멸치 포획(강원도에 한함)
- ..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 동력어선에 의해
 - ... 낚시어업: 주낚, 외줄낚시, 채낚기를 사용
 - ...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 사용(강원도는 제외)
 - ... 패류껍질어업: 소라, 피빨고등 등 패류껍질 사용
 - ...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안에 미끼를 넣어 패류 포획(서해안에 한함)
 - ... 손꽂치어업: 손으로 꽂치를 포획
-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 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 육상종묘생산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 포함)
 - .. 해상종묘생산어업: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 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 지주, 뗏목, 뜰, 밧줄, 채룽, 그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 포함)

② 해수면어업(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1990년 구획어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 2종 및 제 3종 공동어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호제도 및 공동경영의 특질을 상실해 감에 따라 허가어업으로 변경
- .. 정치성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
 - ... 지인망어업: 경사가 완만하고 해저가 평탄한 해변에서 어구를 바로 해안으로 끌어들여서 해안 가까이에 사는 어족을 잡는 어구, 해안 가까운 곳에 있는 어족이 아니면 잡을 수 없고 어장도 극히 한정 됨
 - ... 호망어업: 승망의 일종으로, 정치망을 부설할 수 없는 조류가 강한 장소나 수질이 탁한 만내에 부설, 길그물과 포위망 및 각진 곳에 부착한 원추형 자루그물로 구성
 - ... 건망어업: 길그물 끝에 설치한 직사각형의 통그물에 어군을 유도하여 포획하는 어업
 - ... 건간망어업: 만조시에 그물을 기둥 끝에 올려서 고기의 통로를 열어 주고 간조시에는 그물을 부설하여 고기의 통로를 막아 어획하는 것으로 하루에 2회 간조시에 어획하며 개막이 그물이라고도 함
 - ... 주목망어업: 조석간만의 차가 큰 얕은 바다에 말목을 박고, 날개 그물이 없는 긴 자루그물 입구를 말목에 고정하여 어구를 부설한 다음 조류를 따라 회유하던 대상물이 자루그물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어구
 - ... 승망어업: 길그물과 통그물(헛통과 자루그물)로 구성되며, 헛통에 유도된 어군을 나팔모양의 자루그물로 유도하여 잡는 어구
 - ... 부망(들망어업), 각망어업, 낭장망어업
- .. 이동성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 범위안에서 수산동물을 포획

... 문어단지어업, 형망어업

... 새우조망어업: 새우를 대상으로 피망이라 불리는 새우수조망을 사용하여 배가 지나가면 새우가 물 위로 튀는 성질을 이용하여 어획

... 실패장어안강망어업: 회귀하는 실패장어를 채포하기 위하여, 긴 자루 그물의 입구에 수해와 암해를 부착한 어구를 1개의 닻으로 고정하여 대상물이 조류에 의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어업

③ 내수면어업(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 자망어업: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종묘채포어업: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 연승어업: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패류채취어업: 형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 낚시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운영하는 업

※ 낚시터업은 KSIC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나 내수면어업법에서는 허가어업의 일종으로 분류

• 낭장망어업: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낭장망: 날개그물이 있으며 날개그물과 자루그물의 입구의 상부에 뜰을 하부에 와이어로프나 발들을 달아 상하로 전개되도록 하고 양 날개그물 앞쪽에 닻이나 말목을 박아 좌우로 전개되도록 하는 어망으로 주로 밀물 때 어획이 가능하도록 부설

• 각망어업: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각망: 대모망의 일종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그물을 부설하고, 그 끝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부설하여 놓고, 길그물에 의해 유도된 어군을 잡는 어망

3) 허가 유효기간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3. 신고어업

1) 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고어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어업의 신고는 어업허가의 신청과 같이 행정상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며, 신고의 수리에 의해 효력이 발생됨, 신고제도는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외의 어업상태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상 또는 어업 단속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종류

① 해수면어업(시장, 군수, 구청장)

- 맨손어업: 손으로 낚, 호미,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 호미,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기타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내수면어업(시장, 군수, 구청장)

- 투망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 어살: 고기가 들도록 물 속에 싸리 · 참대 · 장목 등을 둘러 꽂아 둔 울

-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 관련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신고 유효기간

-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5년

4. 관련 용어

1) 기타 양식방법

- 수조식: 연안의 육상에 수조를 만들어 해수를 인입할 수 있는 양수시설에 의하여 수조안의 해수를 교환해 주면서 양식하는 방법(넙치, 전복 등)
- 연승식: 수면의 표층에 약 100m(1대 또는 1줄)로 설치한 로프 아래에 수직으로 종묘를 넣은 채를 달거나, 약 3m 내외의 로프에 종묘를 붙여서 양식하는 방법(굴, 홍합, 미역, 다시마, 가리비, 우렁챙이 등)
- 멧목식: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치패를 부착시켜 양식하는 방법
- 투석식: 수심 약 30m이내의 바닥에 약 20kg 정도의 석재를 넣어 패류의 종묘가 부착하여 성장하게 하거나 또는 종묘를 뿌리거나, 석재에서 해조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양식하는 방법(굴, 전복, 소라, 해삼, 우뚝가사리 등)
- 살포식: 수심 약 40m이내의 모래와 펄이 섞인 바닥이나 바위에 서식하는 패류의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바지락, 피조개, 새고막, 해삼, 전복 등)
- 지주식: 수중에 지주,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물망에 김이나 파래를 부착시켜 양식하는 방법

- 부류식: 수중에 뜬(부이), 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중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방법

2) 내수면 기타 양식방법

- 지수식 : 항상 일정량의 물을 사육지에 채운 후 증발이나 침투 등에 의해 감소되는 수량만을 보충해 주거나, 수질의 변화를 가져왔을 때에 새로운 물을 넣어주는 정도로 수산동물을 기르는 방법
- 유수식 : 양어지에 항상 새로운 물을 유입시켜 사육수를 유동상태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많은량의 수산동물을 기르는 방법
- 순환여과식 : 인위적으로 양식어류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대사 노폐물을 여과 시킴으로서 사육수를 재사용하여 좁은 면적에서 고밀도로 양식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양식방법

[내수면 어법 종류]

어법 종류	어 법 내 용
• 자망어업	옆으로 길다란 그물로 물고기의 이동로를 차단하여, 물고기가 그물코에 낚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 연승어업	낙시줄 하나에 여러 개의 낙시를 수평 방향으로 달아 고기를 잡는 어업
• 낭장망 어업	조류가 빠른 곳에 자루 모양의 그물을 설치하여 잡는 어업
• 각망어업	육지에서 강(호수)으로 유인 그물을 설치하고 끝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설치하여 유인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그물 어업
• 정치망 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설치하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종묘채포 어업	양식장 등에 판매하기 위해 수산 동식물의 종묘를 채취, 포획하는 어업
• 패류채취 어업	형망(해저를 긁기 위한 빗모양의 살이 달린 그물) 또는 기기를 이용하여 패류 또는 기타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수산자원을 조성 및 관리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어로어업 경영 여부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로어업 대상 표본조사 모집단
- 어업구조조정 및 합리화 정책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95년	2000년	2005년
-	지난 1년간 어로어업을 경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지난 1년간 어로어업을 경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로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지난 1년간 어로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① 예 ② <u>아니요</u> → 양식어업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00년~2010년	• 지난 1년간 잠시라도 어로어업을 경영하였으면 경영한 것으로 조사
2015년	• 경영 어법은 허가·면허받은 어법이 아닌 실제 조업한 어법을 기준으로 작성

□ 주요국 사례

미국	•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산하의 국가 해수면 어업국에서 양육어종을 보고통계 형식으로 작성 • 양육자료는 주에서 위임한 어로허가서, 수산물 딜러에 의해 작성되는 양육무게 보고서, 어획물과 항해비용에 대한 항해일지, 선상 면접, 샘플 어획 등의 자료를 주와 연방이 공동으로 수집하며, 해수면어업국에서 수집자료를 보증하기 위해 부가조사 • 수집정보: 양육된 물고기와 패류의 수량, 금액, 어구와 수역
캐나다	• 캐나다의 어업관련 통계는 DFO(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에서 작성

	하고 있음 • 캐나다의 어업통계부문은 양식, 상업어업(소비, 양육, 허가 어획쿼터), 레저낚시, 교역, 원양으로 구분하여 작성되고 있음 • 양육관련 통계는 어획물의 수량과 금액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행정보고통계형식으로 작성 됨 • 1950년대 이후 양육시점의 최초 매수자 구매전표를 보고 받아 통계를 작성함 • 구매전표상의 기재 사항: 어종, 물량, 가격, 구매지 등의 필수 사항과 물고기의 크기, 어획에 사용된 어구 등 • 레저낚시조사 - 1990년 이후 5년 주기로 낚시허가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 거주지 낚시자와 방문 낚시자를 구분하여 표본선정 - 연령, 성별, 거주지등 낚시자 정보 조사 - 어획물, 낚시비용 등 조사
영국	• 영국은 어업센서스가 별도로 없으며 환경농촌식품부가 각 지방의 보고자료를 취합하여 어업통계 작성 • 어항에 근무하는 어업감독관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료입력 • 주요 자료원 : 항해일지, 양륙신고서, 판매기록과 어업종사자 및 판매상과의 면접자료, 항구관리자가 작성한 어선별 양륙보고서 • 주 수집자료 : 어획 어종, 어구, 어로지역, 양륙어종의 무게, 가격 등
호주	• 호주는 어업센서스가 별도로 없으며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고통계로 작성 • 수산부(Department of Fisheries)에서 어로어업, 진주 및 양식어업, 레저낚시업 관련 허가관리 및 보고자료 수집 • 농업자원경제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에서 어업관련 통계 작성 - 어로어업, 진주·양식어업 모두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고통계 형식으로 작성 - 어업경영자 생산 관련보고서(Aquaculture production quarterly returns book, Catch & fishing effort returns book)를 집계하여 작성 - 어로어업은 매월, 양식어업은 매 분기 단위로 자료 수집
대만	• 경영한 어업종류: 원양어로, 근해어로, 연안어로, 내륙어로, 해면양식, 내륙염수양식, 담수양식, 레저 및 관광 어업, 어업 미경영

□ 국제 권고안

2002년	[FAO Technacal consultation on improving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trends of capture fisheries] • The Strategy is global in scope and is designed to cover all capture fisheries in inland and marine waters, including all industrial, commercial, subsistence and recreational fisheries." (어로어업 범위에 recreatinal fisheries를 포함하고 있음)
-------	---

조업 구역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협정 관련 기본자료 제공
- 해양 환경보호 및 어로어업 안전보호정책 기초자료 제공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	지난 1년간 조업한 구역 ① 12해리 이내 ② 12 ~ 200해리 이내 ③ 200해리 이외	지난 1년간 조업한 주된 어장의 구역은 어떠합니까? ① 12해리 이내 ② 12 ~ 200해리 이내 ③ 200해리 이외
1995년	2000년	2005년
지난 1년간 조업한 주된 어장의 구역은 어떠합니까?(원양어업 제외) ① 12해리 이내 ② 어업자원 보호구역 내측 ③ 어업자원 보호구역 외측	지난 1년간 조업한 구역은 연안입니까?, 근해입니까? ① 연안구역 ② 근해구역	-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1990년	• 조업 구역은 우리나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
1995년	• 어업자원 보호구역은 「이승만 라인」을 기준으로 내측 및 외측으로 구분 • 주된 어장은 주로 어로활동을 한 구역 • 조업 구역은 우리나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며, 양식어업도 조사, 원양어업은 제외 1해리= 1,852m
2000년	• 조업기간이 비슷할 때는 수입이 많았던 구역에 표시

□ 참고 사항

○ 조업 수역 구분

- 한국EEZ(12해리 내측수역, 그 외 한중과도수역, 그 외 EEZ수역)
- 한일 중간수역(동해, 서해)
- 한중 잠정조치수역
- 기타 근해수역(일본EEZ, 중국EEZ, 중일 잠정조치 수역)

○ 이승만 라인

-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 연안수역 보호를 위해 선언한 해양 주권선
-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일본을 비롯한 인접국들의 반대가 있었음
- 평화선 선포의 배경: ①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였고 ②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였으며 ③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하였고 ④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
- 정부가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힘으로써 「평화선」이란 이름으로 호칭
-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

어획 품종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어획 품종		◇	◇	◇	⊗	⊗	⊗	⊗
- 최대 판매금액 어종					◇			
- 어획 장소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생산고조사 기초자료 제공, 수산 어획물 공급규모 파악
- 내수면 자원활용 상황분석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	[내수면어업] 지난 1년간 어획량과 어획장소 - 어종명 : 잉어, 붕어, 쏘가리, 빙어, 가물치, 미꾸리, 뱀장어, 메기, 새우, 게류, 채첩, 대청 조개, 순채, 기타 - 어획장소 : 강, 호소(湖沼), 저수지, 기타	[내수면어업] 지난 1년간 어로어업으로 주로 어획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어종명 : 잉어, 붕어, 쏘가리, 빙어, 가물치, 미꾸리, 뱀장어, 메기, 피라미, 향어, 송어, 새우, 게류, 채첩, 대청조개, 순채, 기타 - 어획장소 : 강, 댐, 저수지, 호소, 기타
1995년		2000년
[내수면어업] 지난 1년간 어로어업으로 주로 어획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 어종명 : 잉어, 붕어, 쏘가리, 빙어, 가물치,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피라미, 향어, 송어, 채첩, 대청 조개, 다슬기, 새우, 게류, 기타 - 어획장소 : 강, 댐, 저수지, 호소, 기타		지난 1년간 어로어업으로 어획한 주된 어종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주 어종은 판매금액이 많은 순으로 조사 [내수면어업] 지난 1년간 어로어업으로 어획한 모든 어종의 주된 어획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어종명 : 가물치, 메기,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 빙어, 송어, 잉어, 피라미, 향어, 채첩, 게류, 새우류, 기타 - 어획장소 : 강, 댐, 저수지, 호소, 기타 어획 어종 중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어종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2005년	2010년
어로어업으로 어획한 어종을 판매금액이 많은 순으로 5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수면어업] 어로어업으로 어획한 품종 및 어획장소, 판매금액 순위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품종명 : 가물치, 메기류, 미꾸라지, 뱀장어, 붕어, 잉어, 송어류, 잉어류, 동자개, 쏘가리, 피라미, 황어, 채썬, 다슬기, 개류, 새우류, 기타 • 어획장소 : 강, 댐, 저수지, 호수, 기타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획 품종 5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수면어업]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획 품종 7가지와 주된 어획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 품종명 : [어류] 가물치, 동자개류, 메기류, 미꾸라류, 뱀장어, 붕어, 잉어, 송어류, 쏘가리, 잉어류, 피라미, 황어, 기타 어류 [갑각류] 개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패 류] 다슬기류, 채썬, 기타 패류 [기타수산동식물] • 어획장소 : 강, 댐, 저수지, 호수, 기타
2015년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획 품종 5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수면어업]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획 품종 7가지와 주된 어획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	• 어획장소는 주로 어획된 장소에 해당되는 것을 기입
1990년~1995년	• 호소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와 늪, 기타는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 공동 경영체의 구성원이 공동경영에만 참여하고, 공동경영이외에 별도로 자기경영이 없을 때는 개인경영가구는 공동 경영체에서 조사된 것과 일치하여야 함
2000년~2005년	• 지난 1년간 어로어업으로 어획한 주된 어종 5가지(2000년은 3가지)를 조사 • 주된 어종은 어획품종 부호를 참고하여 판매금액이 많은 어종부터 기입
2010년~2015년	• 어획품종 세분(2010년) • 어획한 품종을 어획량 기준으로 기입(해수면:5가지, 내수면:7가지)

□ 주요국 사례

일본	[내수면 조사표] • 어업을 한 호소명과 호소번호 기입 • 어획어종: 어류(잉어, 붕어, 은어, 황어, 연어/송어, 뱀장어, 망둥이류, 기타 어류), 패류(가막조개, 기타 패류), 수산동물류(새우류, 보리새우, 기타 수산 동물), 기타 • 지방 선정 어종
----	---

□ 국제 권고안

1998년	[FAO 전문가회의: 어로어업 자료의 경상수집 지침] • 어로와 경영 지표중 어획 변수: 어획어종, 총 어획량, 무게, 물량 등을 예시
-------	--

□ 참고 사항

- 어업 생산물에 대한 총칭으로 「어종」을 사용하여 왔으나 「품종」으로 개칭 사용한 것은 어업 생산물에는 패류, 갑각류, 종묘 등 다양한 종류를 포괄하고자 의도
- 어족자원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 국제어획량 협정을 반영하여 판매금액순에서 어획량순으로 기준 변경

■ 해수면 어획 및 양식 품종별 부호표(연도별 자료는 생략)

품 종 명	부 호	품 종 명	부 호	품 종 명	부 호	품 종 명	부 호	품 종 명	부 호
어	류	명	태	072	전	갱	이	류	153
가	오	리	류	003	민	어	075	전	어
가	자	미	류	006	방	어	류	078	정
기	름	가	자	미	007	뱀	당	이	류
갈	달	이	류	009	병	어	류	087	기
강	달	이	류	012	보	구	치	090	준
고	등	어	015	복	어	류	096	퀴	치
망	치	고	등	어	016	조	피	불	락
꿩	치	018	기	타	불	락	류	102	참
학	공	치	021	노	래	미	류	103	홍
넙	치	류	(꿩어)	024	부	세	105	꿈	치
농	어	류	030	삼	치	류	108	기	타
눈	불	대	033	상	어	류	111	갑	각
능	성	어	036	서	대	류	114	꽃	게
참	다	랑	어	038	성	대	류	117	대
기	타	다	랑	어	039	송	어	류	120
도	루	목	042	삼	세	기	124	민	꽃
대	구	045	송	어	류	126	기	타	게
감	성	돔	048	아	귀	류	129	꽃	새
옥	돔	류	051	까	나	리	132	닭	새
자	리	돔	054	양	미	리	133	대	하
참	돔	057	양	태	류	135	흰	다	리
물	돔	(줄돔)	059	연	어	138	보	리	새
기	타	돔	류	060	임	연	수	어	141
망	돔	어	류	063	갯	장	어	144	중
멸	치	069	먹	장	어	147	기	타	새
반	지	070	붕	장	어	150	기	타	갑
패	류	306	기	타	연	체	동물	류	(군소)
소	라	309	기	타	수	산	동물	류	
고	등	류	311	미	더	덕	503		
오	분	자	기	312	성	계	류	506	
전	복	류	315	우	렁	행	이	(명계)	509
가	리	비	류	318	해	삼	512		
가	무	락	321	오	만	등	이	514	
개	랑	조	개	류	324	기	타	수	산
꼬	막	류	327	해	조	류			
둥	죽	330	김	류	603				
맛	류	333	꼬	시	레	기	류	606	
바	지	락	336	다	시	마	류	609	
백	합	류	339	도	박	류	612		
새	조	개	342	모	자	반	(말)	류	615
키	조	개	348	미	역	류	618		
피	조	개	351	우	뭇	가	사	리	621
홍	합	류	354	청	각	627			
개	조	개	357	툰	630				
기	타	패	류	399	파	래	류	633	
연	체	동	물	류	매	생	이	635	
갑	오	정	어	류	403	기	타	해	조
꿀	뚜	기	류	406	종	묘	(양식만 해당됨)		
낙	지	류	409	어	류	종	묘	901	
문	어	류	412	패	류	종	묘	902	
주	꾸	미	415	해	조	류	종	묘	903
살	오	정	어	(오징어)	418	기	타	종	묘

■ 연도별 내수면 어획품종

조 사 항 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어류	○	○	○	○	○	○	○
○ 향어		○	○	○	○	○	○
○ 잉어류	○	○	○	○	○	○	○
○ 붕어류	○	○	○	○	○	○	○
○ 피라미		○	○	○	○	○	○
○ 빙어	○	○	○	○	○	○	○
○ 메기류	○	○	○	○	○	○	○
○ 미꾸리류	○	○	○	○	○	○	○
○ 숭어류		○	○	○	○	○	○
○ 가물치	○	○	○	○	○	○	○
○ 쏘가리	○	○	○		○	○	○
○ 뱀장어	○	○	○	○	○	○	○
○ 동자개류					○	○	○
○ 기타어류	○	○	○			○	
☐ 갑각류	○	○	○	○	○	○	○
○ 게류	○	○	○	○	○	○	○
○ 새우류	○	○	○	○	○	○	○
○ 기타 갑각류						○	○
☐ 패류	○	○	○	○	○	○	○
○ 채첩	○	○	○	○	○	○	○
○ 대청조개	○	○	○				
○ 다슬기류			○		○	○	○
○ 기타 패류	○	○	○			○	○
☐ 조류	○	○					
○ 순채	○	○					
○ 기타	○	○					
○ 기타	○	○	○				
☐ 기타	○	○	○	○	○		
☐ 기타 수산 동식물						○	○

○ 내수면 어업 어획장소

- 강 : 하(河)는 큰 강, 천(川)은 작은 강을 뜻하고 한국에서는 큰 강을 강(江), 작은 강을 천(川) 또는 수(水)로 나타내고 있으나 오늘날 혼용하는 경우가 많음
- 댐 :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貯水)·토사유출방지·취수(取水)·수위상승(水位上昇) 또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 저수지 : 흐르는 물을 저장하여 물의 과다 또는 과소를 조절하는 인공시설
- 호소(湖沼) :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나 늪
 - 호수 : 연안식물의 침입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를 갖는 것으로 최심부가 5m 이상 되는 것
 - 늪 : 수심 3m 이하로 호수와 비슷한 개흙이 많은 물웅덩이
- 기타 :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 등

양식어업 경영 여부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양식어업 대상 표본조사 모집단
- 어업구조조정 및 합리화 정책 기초자료
-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양식어업을 경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지난 1년간 양식어업을 경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지난 1년간 양식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지난 1년간 양식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00년~2015년	• 지난 1년간 잠시라도 양식어업을 경영하였는지를 조사
-------------	--------------------------------

□ 주요국 사례

캐나다	• 캐나다는 어업센서스가 별도로 없으며 양식산업 연간조사를 표본으로 실시하여 모수를 추계 • 조사대상: 북미산업분류(NAICS)에 따른 양식업으로 분류된 모든 사업체가 모집단 • 조사방법: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CATI를 병행하여 사용 [조사항목] • 결산회기 관련: 사업회기, 연간 조업이 1년이 되지 않는 사유(계절조업, 신규 영업, 회기 변경, 경영권 변경, 조업 중단, 일시 휴업), 사업조직 변경여부(신규 사업 획득, 사업 처분) • 주요 사업활동: 어류와 패류 양식 여부, 해당 없음
-----	---

캐나다	• 수입부문: 어류, 연체동물, 구입상품 판매액, 임차 수입액, 기타 경영수입액, 총경영수입액, 비경영수입액(이자, 배당수입), 총 수입액 • 비용부문: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 에너지 및 용수 구입비, 본사에 지불한 경영비 및 기타 서비스비, 서비스 구입비, 기타 경영비, 총비용 • 재고액, 종사자수, 판매고객 소재지를 기초한 총 경영수익 분배율, 지난 회기와 비교하여 사업부문에 발생한 특이 사항, 조사표 작성 시간
일본	• 해면 양식업(시설면적, 사용면적, 판매금액), 내수면 양식업(성별 종사자수, 시설면적, 사용면적, 양식 연못수 등) 구분 조사
미국	• 미국의 양식센서스는 미국농림부와 농업통계국에서 주관하여 1998년 최초 조사, 이후 2005 양식센서스 실시 • 양식센서스는 2002 농업센서스에서 파악된 양식자료를 상세화하는 방법으로 조사 • 양식센서스의 조사대상: 조사대상 기간중 1천달러 이상의 양식 생산물을 생산, 판매, 분배한 양식장 단, 생산물을 자원보존, 복원, 레저 목적으로 풀어주거나 분배하는 곳은 제외 • 자료수집: 우편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전화, 직접 면접 등을 단계별로 적용 • 비영리 경영체(자원 회복 · 보전 등에 종사하는 연방 · 주 등 공공기관 포함)와 영리 경영체, 지난 1년간 판매가 없는 영리 경영체 모두 조사 • 비영리경영체는 양식생산물 보급 항목만 조사 - 보급 어종별 마리 수, 중량, 치어 · 종패 수 • 판매 없는 영리경영체는 중복방지를 위한 질문사항만 조사 - 장래 판매계획 · 다른 경영체 보유 및 이름 사용 여부(중복조사 방지 목적) • 모집단 자료: 2002년 농업센서스 결과와 농업통계국에서 실시한 연간 메기 및 송어 조사 결과로부터 파악 • 자료수집: 우편조사와 인터넷 조사 체계, 면접 · 전화로 사후 보완 • 자료처리: ICR 자료입력, 전산내검, 관련 농업조사 자료와 2002 농업총조사 자료, 다른 경영체 자료로 보정처리 [조사 항목] • 양식생산 구분: 조사대상 기간중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또는 다른 양식 생산물을 기르거나 판매한 여부(YES, NO), NO인 경우 자원보존, 복원, 레저 용도로 어류, 연물, 갑각류 또는 다른 양식 생산물을 길렀는지 여부(YES, NO), (단, 수산 식물은 제외)
영국	• 영국은 어업센서스가 별도로 없으며 환경농촌식품부가 각 지방의 보고자료를 취합하여 어업통계 작성 • 1985년 이후 양식등록제 도입 : 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성명, 사업내용, 주소, 사업장 특성, 양식 품종 등을 보고
호주	• 호주는 어업센서스가 별도로 없으며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고통계로 작성 • 수산부(Department of Fisheries)에서 어로어업, 진주 및 양식어업, 레저낚시업 관련 허가관리 및 보고자료 수집 • 농업자원경제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 Resource Economics)에서 어업관련 통계 작성 - 어로어업, 진주 · 양식어업 모두 행정자료를 이용한 보고통계 형식으로 작성 - 어업경영자 생산 관련보고서(Aquaculture production quarterly returns book, Catch & fishing effort returns book)를 집계하여 작성 - 어로어업은 매월, 양식어업은 매 분기 단위로 자료 수집

□ 국제 권고안

1976년	[FAO 교토 전문가 회의 보고서: 양식업에 대한 교토 선언] • 1976년 교토에서 열린 양식업에 대한 FAO 전문회의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등의 양식에 관한 현재의 상태, 문제와 가능성 등에 대해 다음을 선언했다 ① 지난 10년간 양식업은 세계의 식량부문, 수입 및 고용부문에서 많은 기여를 하면서 성공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② 훌륭히 기획되고 적절히 적용된 양식업은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품질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가능한 양식업은 연안 및 내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실행될 수 있다.
1976년	③ 양식업은 야생 수산자원을 강화하고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상업적이나 유어적인 어획 어류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④ 양식업은 낮은 등급의 버려지는 식량자원을 높은 등급의 영양이 풍부한 식량자원으로 재생하고 향상시키는 유효한 수단을 가져다 준다. ⑤ 양식업은 농업, 축산업 등과 공동이익을 가져오면서 결합하여 경영될 수 있으며, 여러 환경아래 양식업은 농촌종합개발을 위해 훌륭한 기여를 한다. ⑥ 양식업은 여러분야의 기술전문가들에게 지적인 도전과제를 제공하며, 농민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기술과 교육분야에서 의미있는 보상을 가져다 준다. ⑦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양식업 부문은 금전과 물질, 노동과 기술을 투자할 훌륭한 부문이 될 것이다. ⑧ 양식업은 자원재생, 에너지, 토지와 수자원사용 정책과 계획을 함께한다는 점과, 기초하고 있는 천연자원이 강화되고 손상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완전한 지원과 주의를 받을만 하다. ⑨ 양식업은 훌륭히 기획되고 수행가능한 기술이전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국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2005년	[FAO 2010 세계 농업센서스 프로그램] • FAO 2010 농업총조사 프로그램에서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으며 농업센서스에서 통합해서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양 조사의 유사성: 1. 「기른다」는 본질이 유사, 2. 양식업은 종종 농업생산 과정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3.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기계류와 노동력이 유사

□ 참고 사항

○ FAO 교토 전문가 회의 권고안

총회는 교토 양식업선언과 관련된 정책의 조성을 위하여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수행할 주요한 권고안을 채택

1. 모의실험(PILOT-SCALE PROJECT)

지난 10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양식업 연구성과를 살펴볼 때, 새로운 양식품종과 양식시스템에 대해 이용 가능한 기초정보들이 있으나 그런 정보들

을 상업적 생산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모의실험 부족으로 적용이 부진했으며 모의실험은 양식기술의 개발 및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부와 후원단체들은 상업적 적용을 목표로 한 양식기술들의 기술성과 경제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모의실험을 적극 후원할 것을 권고

2. 양식생산 확대

개발도상국가의 현저한 예를 비롯해 세계각지에서의 양식업의 현황과 기여를 고려할 때 양식기술의 수직/수평적인 이전을 통해 양식생산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증명된 양식시스템들이 많이 존재하며, 정부기관들이 국가개발계획에서 양식업 발전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였고, 정부기관들과 민간부문에서도 향후 30년내에 양식생산이 적어도 5배 증가할 수 있는 양식생산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조

나아가, 적절한 자금부족이 양식생산 확대의 주요한 제약조건이며 양식업이 개발도상국가에서 농촌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세계은행그룹, 지역 은행, 국가개발은행, FAO 은행그룹, 세계 농업개발자금과 기타 재정후원단체는 양식업을 주요한 투자부문으로서 인식하고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양식업을 위해 적절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3. 농촌 종합개발계획에서 양식업의 포함

어류양식을 포함한 양식업은 많은 나라에서 농촌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훌륭히 기획되고 조직된 양식업계획은 현대 농촌 종합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정부기관은 농촌 종합계획의 형성과 시행을 위해 양식업에 적절한 고려를 할 것을 권고하며, 더 나아가 자금과 재정후원단체들도 그들이 후원하는 농촌개발계획에서 양식업을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후원과 격려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

4. 양식 투입요소의 생산과 분배

종묘, 사료, 영양제 등의 양식 투입요소들은 양식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토대위에서 양식업의 안정된 생산확대를 가져오기 위해 이들 투입요소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정부기관들은 양식산업의 수요에 맞춘 종묘, 사료와 영양제의 생산기반을 갖추 것을 언급하였고, 나아가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양식되고 있는 어류의 특정 어종을 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 뇌하수체제의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종묘생산에 소요되는 뇌하수체제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은행을 설립할 것을 권고

5. 양식연구

양식생산에서의 미래증산은 현존 기술의 이전 및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의해 얻어 질 것이며, 양식증산을 위한 이 모든 수단들은 적절한 수준에서 체계지향적이고 여러분야에 걸친 연구를 필요로 하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는 연구노력의 보급은 상호협동과 통합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일 수 있다고 인식하며, 수립되어 있는 주요 생산프로그램을 위해 선택된 양식 시스템에 대한 다분야 연구들을 협동화할 것을 권고

또한, FAO/UNDP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양식계획을 위한 지역 워크샵과 국제농업연구를 위한 자문그룹인 TAC 분과위원회가 제의한 지역 네트워크가 수립될 것을 권고했으며, 자금지원단체들이 양식업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여러분야에 걸친 연구를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할 것을 요청

6. 보급체계 수립

적절히 조직된 보급체계의 부족이 양식생산프로그램의 주요한 약점의 하나이며, 이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두드러진다. 종합농촌개발을 위한 부분으로서 성공적인 양식업은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급체계의 구성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며, 생산자의 수요에 맞는 인적, 기술적인 지원을 갖춘, 적절히 조직된 보급체계수립에 정부기관들이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기관들이 적절한 보급훈련센터를 수립할 것을 권고

○ FAO 2010 세계 농업센서스 프로그램에서의 양식센서스 동시 실시

• 농업센서스와 양식센서스를 동시 실시하는 이점

- ① 동시 실시에 따른 예산 절감
- ② 양 센서스의 분석·연구과정에서 연계작업의 편의
- ③ 두 센서스에 적용되는 용어와 정의의 표준화
- ④ 단일 조사원이 양대 센서스자료를 조사하고 책임진다는 구조적 이점

• 이전 농업센서스에서의 양식조사 현황

- ① 부분적으로 양식업을 조사하였지만, 농업과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양식업은 제외
- ② 양식활동에 대해 제한적인 자료만 수집(양식면적, 방법, 사용하는 수자원, 조직 형태)
- ③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류와 노동투입 부분은 미조사
- ④ 양식을 위해 사용되는 보유 면적은 미조사

양식 품종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양식품종	○	○	⊗	⊗	⊗	⊗	⊗	⊗
- 양식방법	○	⊗	⊗	⊗	⊗	⊗	⊗	⊗
- 양식면적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양식어업 기초통계량 제공
- 어업기본통계, 어업생산량통계, 어가경제통계조사 표본틀 제공
- 어업관련 학술연구, 분석,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제간 자료비교 및 제공, 국가경제 기본지표 제공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12월 1일 현재 천해양식 면적은? • 면적(m²), 대수 별 조사 • 양식어종: 김, 굴, 백합, 진주 - 김양식(망홍, 부홍, 기타) - 굴양식(수하식, 기타)	12월 1일 현재 경영중인 양식현황 • 면적(ha), 대수 별 조사 • 양식방법: 연승수하식, 맺목 수하식, 투석식, 기타 • 김 양식방법: 일본홍식, 죽홍식, 망홍식 [내수면 어업 양식방법] • 조방양식, 가두리양식, 조류양식, 패류양식, 양만장, 일빈양어	12월 1일 현재 경영하고 있는 양식장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ha), 대수별 조사 • 양식방법: 연승수하식, 맺목 수하식, 투석식, 기타 • 김 양식방법: 지주식(죽홍, 망홍) - 부류식(무노출식, 노출식) [내수면 어업 양식방법] • 조방양식, 가두리양식, 조류양식, 패류양식, 양만장, 일빈양어	12월 1일 현재 경영하고 있는 양식장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 면적(ha), 대수 별 조사 • 양식방법: 가두리식, 축제식, 수조식, 살포식, 투석식, 건홍 수하식 [내수면 어업 양식방법] • 어류양식, 조류양식, 패류양식, 양만장, 일빈양어장

2000년	2005년	2010년
2000년 12월 1일 현재 경영한 양식어종별로 방법과 면적을 판매금액이 많은 순으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식품종, 양식방법, 면적(m)별 조사 • 양식방법 : 가두리, 축제식, 수조식, 연승식, 뗏목식, 투석식, 살포식, 지주식, 부류식, 기타 [내수면 어업 양식방법] •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 가두리, 기타	2005년 12월 1일 현재 경영한 양식 품종별로 양식 방법과 면적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식품종, 양식방법, 면적(m)별 조사 • 양식방법 : 가두리, 축제식, 수조식, 연승식, 뗏목식, 투석식, 살포식, 지주식, 부류식, 기타 [내수면 어업 양식방법] •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 가두리, 기타	2010년 12월 1일 현재 경영한 양식 품종별로 양식 방법과 면적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식품종, 양식방법, 면적(m)별 조사 • 양식방법 : 가두리식, 부류식, 살포식, 수조식, 연승식, 지주식, 축제식, 투석식, 기타 [내수면 어업 양식방법] • 가두리, 순환식, 유수식, 지수식, 기타
2015년		
2015년 12월 1일 현재 경영한 양식 품종별로 양식 방법과 면적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식 어획량이 많은 순으로 기입하고, 임차한 양식장도 포함 • 양식 품종 부호와 양식방법은 해당되는 부호를 기입 • 양식방법 : 가두리식, 부류식, 살포식, 수조식, 연승식, 지주식, 축제식, 투석식, 기타 [내수면 어업 양식방법] • 가두리식, 순환여과식, 유수식, 지수식, 기타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어로와 양식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어업경영의 어업종류에서 천해양식업 조사 • 12월 1일 현재 천해양식 면적을 품종별, 양식방법별로 조사 • 양식면적은 실제 양식시설 면적을 m²로 기입하되, 면적을 알지 못할 때는 참고란의 평, 책(대)에 기입한다 • 김양식의 부흥에는 서선형 부흥과 염흥을 포함
1980년	• 양식장의 면적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실제 경영하고 있는 면적을 말함 • 양식장 면적을 책 또는 대수로 대답시는 기입하고 조사완료 후 ha로 환산

1990년~1995년	- 양식장의 면적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실제 경영하고 있는 면적을 말하므로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는 없다(1990년) - 양식장 면적을 책 또는 대수로 대답시는 기입하고 조사완료 후 ha로 환산 - 대수: 굴, 미역, 다시마, 톳, 우렁쉥이 책수; 김, 파래, 조수: 가두리식 - 공동 경영체로 조사된 양식면적은 실제 참여한 구성원별로 배분하여 조사 - 공동명의로 면허가 났으나 실제로는 개인에게 배분하여 경영한 경우는 개인경영 가구 별로 조사 - 공유수면과 사유수면으로 구분하고 공유수면은 어류, 조류, 패류양식으로 재구분, 사유수면은 양만장과 일반 양어장으로 재구분(내수면)
2000년~2005년	- 조사가준일 현재 경영한 양식품종별로 판매금액이 많은 순으로 모두 조사 - 자기 양식장 뿐만 아니라 남에게 빌려서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 - 종묘생산은 인공종묘, 자연산 채묘도 포함하고, 양식장 면적을 대수 또는 책수로 대답할 경우에는 ha로 환산,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대(책)의 기준이 별도로 있으면, 그 길이에 맞게 적용하고, 종패를 뿌려 관리하는 마을 공동어업에 참여한 경우, 각 어가별 지분을 조사(어가별 양식장 면적 = 공동 양식장면적 ÷ 참여한 어가수) 1ha = 약 3,025평
2010년	- 어족자원보호,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조성, 국제어획량 협정을 반영하여 판매금액 순에서 어획량 순으로 기준 변경 - 마을 공동 양식어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각 어가별 지분으로 조사 - 마을 공동어장에 종묘를 살포하여도 양식어업 면허를 함께 취득한 경우에만 양식어업으로 분류 [내수면]칠갑상어, 황복 신규 조사, 기타 품종 세분
2015년	- 경영한 양식 품종별로 어획량이 많은 순으로 조사 - 품종별 양식장 면적은 m² 단위로 환산하여 적는다

□ 주요국 사례

미국	- 경영체의 크기항목에서 조사대상 기간중 양식장 면적을 담수와 염수로 구분하고 각각을 전체면적, 임차 및 임대면적으로 구분 조사, 유기(organically) 양식여부도 조사 - 양식 방법: 호수(양식생산에 사용된 호수의 수, 호수의 총면적), 경작지에서의 가제 양식, 유수식(사용된 수로 길이, 수로의 평균 수량), 순환식(사용된 탱크 수와 용적), 비순환식(사용된 탱크, 통 등의 수효와 용적), 가두리식(가두리 시설 수와 용적), 우리(우리 수와 용적), 연체동물(용수 표면적, 사용된 도구), 기타 형태 - 수원: 지하수, 농장 내부의 지표수(수원 공급기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개울, 샘물 등), 연방·주·시군 등 자치단체·회사 등에 의한 수원 공급, 바닷물·식용, 낚시 등 레저용 어류: 어종 명칭, 코드, 크기(1 ~ 6단계 구분), 판매 마리 수, 판매 중량, 판매금액 - 미끼 어류: 양식면적, 판매 중량, 판매 마리 수 혹은 무게 당 마리 수, 판매금액 - 갑각류, 연체동물: 품종 명칭, 코드, 크기(1 ~ 6단계 구분), 판매 마리 수, 판매 단위, 판매 중량, 판매단위 당 마리 수, 판매금액
----	--

	• 관상용 물고기: 품종 명칭, 코드, 판매 마리 수, 판매 단위(박스, 파운드, 마리 등), 판매 단위 당 마리 수, 판매금액 • 기타 양식품종: 품종 명칭, 코드, 판매 마리 수, 판매 증량, 판매금액
일본	• 지난 1년간 일한 어업종류를 기입 • 활어판매는 별도 기입 • 어류양식장 전체 시설면적(경영체가 사용한 총 시설면적), 전체 사용면적(시설 면적 중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어류 미방생면적은 제외) • 어종별 시설면적, 사용면적: 방어, 참돔, 넙치(육상수조 면적도 별도 조사) • 가리비의 양성조개수: 채묘부터 1년 미만, 채묘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채묘부터 2년 이상 • 굴류양식: 땃목수하식/간이수하식의 대수 및 1대의 평균 면적, 외줄낚시 어구의 경우 간줄(해면 또는 해중에 수평으로 매어서 가지줄이나 어미줄을 지탱하는 로프)의 길이, 육지로 끌어올리는 식/나뭇가지 새우기식의 경우 양식장면적 • 미역류양식: 간줄의 길이, 실을 말아넣거나 가위를 설치한 로프 길이 • 김류양식: ①양식장 시설면적 조사, 조수의 통로/어선의 통로는 제외, 몇장 겹쳐서 매어도 1장의 어망새우기 면적으로 기입(단위: m²) ②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의 명칭(책, 소간, 간 등을 자유 기입), 단위당 개수, 환산면적(단위: m²) • 김류양식은 ①, ②중 하나만 선택해서 기입 • 진주양식 규모: 땃목 대수(대그릇 1000개 달린 것을 1대로 계산) • 진주모양식 규모: 땃목 대수(대그릇 1000개 달린 것을 1대로 계산) [내수면 경영체조사] • 경영한 양식종류: 식용(육새송어, 기타 송어류, 은어, 붕어, 잉어, 뱀장어, 자라, 기타), 종묘용(송어류, 은어, 잉어, 기타), 관상용(비단잉어, 금붕어), 진주 • 경영한 양식종류 모두를 기표하고, 판매금액 1순위 별도 기표, 양식시설 면적과 사용면적(단위: a) • 양식방법별(모두를 기표하고, 판매금액 1순위 별도 기표) 양식연못수, 양식면적 • 연못양식은 지수식, 유수식, 순환식으로 구분, 저수지양식, 가두리양식, 기타양식으로 구분하며, 지방 선정 양식종류 조사 • 연못양식시설: 가온과 보온시설 유무와 시설면적, 사용기간(종묘기, 육성기, 종묘기와 육성기)
대만	• 양식형태: 양식면적, 주요 양식품종, 양식방법(지수식, 유수식, 순환식, 담해양식, 가두리 양식, 주요이용목적(단일 어종, 혼합어종, 번식, 휴식, 정수, 미사용)

□ 참고 사항

- 양식방법 중 살포식으로 경영하는 양식어종 및 양식면적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양식어업과는 거리가 있으며, 센서스 실사과정에서도 지역별로 조사편차가 많이 나타났다고, 시계열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음
- 보고통계인 양식어업권 허가면적과의 괴리문제

- 양식어업권 허가일과 사업개시일은 시차가 가능,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휴업, 어업권포기, 공익 등을 사유로 하는 어업권 제한 등으로 허가총면적과 어업에 활용되는 양식면적은 차이가 있음
 - 총조사에서 지역별로 사용되는 양식단위가 다양하여 환산과정에서 착오 발생 가능성도 있음
- 수산업법 시행령의 양식면허 종류에 따라 양식방법 변경 고려
- 수산업법 제32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6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제53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그 밖에 이유에 의한 어업조정), 또는 제77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수산동식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한 제한)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어장휴식: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 ※ 어장휴식: 어장 휴식기간 중에는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함
-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산업법 제33조(어업의 개시 등)
-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양식장 ha당 시설 기준

양 식 품 종	양 식 방 법	1 ha 당 시설 기준
굴 등 패류	연 승 식	20대 (100m 기준)
김, 파래 등 해조류	지 주 식	20책 (40 m 기준)
김, 파래 등 해조류	부 류 식	20책 (40 m 기준)
미역, 다시마, 톳, 우렁쉥이	연 승 식	20대 (100m 기준)
어류	가 두 리 식	80칸 (5m × 5m)

* 1ha = 평 × 3.3 ÷ 10,000(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기입)

*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대(책)의 기준이 별도로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환산하여 적용

■ 연도별 해수면 양식 품종

조 사 항 목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어류		○	○	○	○	○	○	○
○ 돌류			○	○	○	○	○	○
- 감성돔, 참돔, 돌돔, 기타돌류로 세분						○	○	○
○ 넙치류(광어)			○	○	○	○	○	○
○ 농어			○		○	○	○	○
○ 능성어						○	○	○
○ 민어						○	○	○
○ 방어			○	○	○	○	○	○
○ 복어류			○			○	○	○
○ 송어류						○	○	○
○ 전어						○	○	○
○ 조피볼락(우럭)			○	○	○	○	○	○
○ 볼락						○		
○ 기타 볼락류							○	○
○ 쥐치						○		
○ 쥐치류							○	○
○ 기타어류			○	○	○	○	○	○

조 사 항 목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고등어						○		○
○ 전갱이류						○		○
○ 노래미류						○	○	○
□ 갑각류		○	○	○	○	○	○	○
○ 대하				○	○	○	○	○
○ 보리새우		○	○	○				○
○ 기타갑각류		○		○	○	○	○	○
□ 패류	○	○	○	○	○	○	○	○
○ 가리비				○	○	○	○	○
○ 가무락		○	○			○	○	○
○ 굴류	○	○	○	○	○	○	○	○
○ 꼬막류		○	○	○	○	○	○	○
○ 바지락		○	○	○	○	○	○	○
○ 백합류	○	○				○	○	○
○ 전복류			○			○	○	○
○ 피조개		○	○	○	○	○	○	○
○ 홍합류			○	○	○	○	○	○
○ 기타패류		○	○	○	○	○	○	○
○ 진주	○							
○ 동죽				○				○
○ 세꼬막		○	○					
□ 기타수산동물		○	○	○	○	○	○	○
○ 미더덕				○	○	○	○	○
○ 우렁쟁이(명게)		○	○	○	○	○	○	○
○ 기타수산동물							○	○
○ 해삼			○					○
○ 기타		○	○	○	○	○		

조 사 항 목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해조류	○	○	○	○	○	○	○	○
○ 김	○	○	○	○	○	○	○	○
○ 다시마류		○	○	○	○	○	○	○
○ 매생이						○	○	○
○ 미역		○	○	○	○	○	○	○
○ 툇			○	○	○	○	○	○
○ 파래			○			○	○	○
○ 기타해조류		○	○	○	○	○	○	○
○ 우뭇가사리						○		○
☐ 종묘				○	○	○	○	○
○ 어류종묘				○		○	○	○
○ 패류종묘				○		○	○	○
○ 해조류종묘						○	○	○
○ 기타종묘				○		○	○	○
○ 육상종묘생산어업				○	○			
○ 해상종묘생산어업				○	○			

■ 연도별 내수면 양식 품종

조 사 항 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어류	○	○	○	○	○	○	○
○ 가물치		○	○	○	○	○	○
○ 금붕어				○	○	○	○
○ 동자개류				○	○	○	○
○ 메기류			○	○	○	○	○
○ 미꾸라지			○	○	○		
○ 미꾸라지류						○	○
○ 뱀장어		○	○	○	○	○	○
○ 붕어				○	○	○	○
○ 비단잉어				○	○	○	○
○ 산천어				○	○	○	○
○ 송어류		○	○	○	○	○	○
○ 열대어				○	○	○	
○ 은어				○	○	○	○
○ 잉어		○	○	○	○	○	○
○ 철갑상어						○	○
○ 틸라피아(역돔)		○	○	○	○	○	○
○ 향어		○		○	○	○	○
○ 황복						○	○
○ 기타어류				○	○	○	○
○ 농어				○	○		○
○ 숭어				○	○		○
○ 열목어				○	○		○
○ 관상어			○				
☐ 갑각류			○	○	○	○	○
○ 새우류				○	○	○	○
○ 참게				○	○	○	
○ 기타 갑각류						○	○

조 사 항 목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패류	○	○	○	○	○	○	○
○ 다슬기					○	○	○
○ 우렁이류				○	○	○	○
○ 기타패류						○	○
☐ 기타 수산 동식물				○	○	○	○
○ 자라				○	○	○	○
○ 종묘						○	○
○ 기타 수산 동식물						○	○
☐ 조류양식	○	○	○				
☐ 기타 양식품종			○	○	○		
○ 진주		○					

어 획 량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생산량 전수 조사를 통해 어업생산량 조사의 표본틀 제공
- 어촌 소득상태 파악 및 경영구조 분석

□ 조사표 내용

1980년
어획량 및 어획장소 • 어종별, 어획장소와 어획량(kg) • 양식품종별 사유지 면적과 어획량(kg)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	• 어획량은 지난 1년간에 어획된 총량 중 판매된 양을 어종별로 기입
-------	--

종묘 조달방법/ 양어장 용수 이용방법

□ 조사 실시년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종묘 조달방법	◇	◇				
○양어장 용수 이용방법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내수면 양식방법 건전성 지표, 종묘 공급 상황 분석
- 내수면 양식의 수직계열화 지표
- 연구기관의 경영성과 판단 지표

□ 조사표 내용

1980년	1990년	1995년
	종묘조달방법 ① 자가 조달 ② 연구기관 ③ 일반업자 ④ 기타	종묘조달방법 ① 자가 조달 ② 연구기관 ③ 일반업자 ④ 기타 양어장용수 이용방법 ① 담수 ② 강물 ③ 지하수 ④ 기타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90년~1995년	• 지난 1년간의 주 구입선 하나만 조사 • 공동경영체에만 참여하는 개인경영가구는 공동 경영체와 동일하게 조사 • 지난 1년간의 주로 이용한 용수 이용방법을 기입 • 기타는 담수, 강물, 지하수 이외의 온천수 등을 말함
-------------	---

□ 주요국 사례

일본	[내수면 경영체조사] • 지난 1년간 경영한 판매금액 1순위의 양식종류에 대해(진주양식은 제외) 용수량이 1위인 것의 용수 종류(용수(湧水), 하천수, 관개용수, 지하수, 호수, 온천수, 공장 온배수, 기타)를 조사 • 배수처리에 대해 정화처리와 정화처리방법을 조사 • 종묘 조달방법(구입종묘만, 구입종묘가 주, 자가종묘가 주, 자가종묘만), 구입처(어협, 종묘업자, 기타)
대만	• 주요 사용 수원(지하수, 해수, 하천·저수지·댐, 기타)
미국	• 양식 사용 수원: 지하수, 양식장 지표수(개천, 호수, 저수지 등), 양식장 밖(연방공급, 관개, 공동사용 개천, 상용회사 또는 시와 공동체 수도시설)

4. 어업 경영

판매 금액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가의 기본 소득구조 추정자료
- 어업관련 표본조사의 특성층 규모 자료
- 어촌소득의 양극화 현상 분석
- 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현상파악 및 어촌 사회안전망 대비 자료
- 어촌 구조조정정책 · 경쟁력 강화정책 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지난 1년간 총어획금액은? (직접 기입)		-	-	-
2000년		2005년		2010년
지난 1년간 수산물의 판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해당구간의 번호에 ○표) ① 50만원 미만 ② 50 ~ 100만원 ③ 100 ~ 500만원 ④ 500 ~ 1,000만원 ⑤ 1,000 ~ 2,000만원 ⑥ 2,000 ~ 3,000만원 ⑦ 3,000 ~ 5,000만원 ⑧ 5,000만원 ~ 1억원 ⑨ 1 ~ 2억원 ⑩ 2억원 이상		지난 1년간 수산물의 판매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① 판매 없음 ② 50만원 미만 ③ 50 ~ 100만원 ④ 100 ~ 200만원 ⑤ 200 ~ 500만원 ⑥ 500 ~ 1,000만원 ⑦ 1,000 ~ 2,000만원 ⑧ 2,000 ~ 3,000만원 ⑨ 3,000 ~ 5,000만원 ⑩ 5,000만원 ~ 1억원 ⑪ 1 ~ 2억원 ⑫ 2억원 이상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총 판매 금액과 그 중 양식 판매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판매 금액은 생산비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으로 조사) ① 판매없음 ② 120만원미만 ③ 120~300만원 ④ 300~500만원 ⑤ 500~1,000만원 ⑥ 1,000~2,000만원 ⑦ 2,000~3,000만원 ⑧ 3,000~5,000만원 ⑨ 5,000만원~1억원 ⑩ 1~2억원 ⑪ 2억원 이상
2015년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총 판매 금액과 그 중 양식 판매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판매금액은 생산비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으로 조사 · 총 판매금액과 양식 판매 금액에 모두 √ 표 ① 판매없음 ② 120만원미만 ③ 120~300만원 ④ 300~500만원 ⑤ 500~1,000만원 ⑥ 1,000~2,000만원 ⑦ 2,000~3,000만원 ⑧ 3,000~5,000만원 ⑨ 5,000만원~1억원 ⑩ 1~2억원 ⑪ 2억~5억원 ⑫ 5억원이상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어획하여 판매되지 않은 것(선내 부식용, 자가가공, 자가 소비량을 포함)도 판매된 것으로 보고 환산하여 기입하며, 해조류 등 건제품으로만 판매되는 것은 건제품 판매금액을 어획금액으로 기입
2000년~2005년	• 판매금액이란 생산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이 아니라 실제 판매하여 받은 총금액 • 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임차료, 임금 등으로 준 경우도 포함 • 지난 1년간의 수산물 판매금액을 조사
2010년~2015년	• 금액구간 조정(2010년) • 지난 1년간 수산물의 총 판매금액과 그 중 양식어업 판매금액을 조사 • 어획 및 양식한 품종을 직접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시중 판매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 • 판매 금액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등의 부과를 우려하여 축소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해야함(2015년)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자가소비한 것은 제외 • 총판매금액, 양식판매금액을 직접기입 [내수면 경영체조사] • 어획물 판매금액, 양식 판매금액을 직접 기입 □ 2008년 • 총판매금액과 양식판매금액을 구간선택형으로 조사 ① 판매 없음 ② 100만엔 미만 ③ 100만엔~ ④ 300만엔~ ⑤ 500만엔~ ⑥ 800만엔~ ⑦ 1,000만엔~ ⑧ 1,500만엔~ ⑨ 2,000만엔~ ⑩ 5,000만엔~ ⑪ 1억엔~ ⑫ 2억엔~ ⑬ 5억엔 ~ ⑭ 10억엔 이상 [내수면 경영체조사] • 어획물 판매금액, 양식 판매금액을 구간선택형으로 조사 ① 판매 없음 ② 10만엔 미만 ③ 10만엔~ ④ 30만엔~ ⑤ 50만엔~ ⑥ 100만엔~ ⑦ 300만엔~ ⑧ 500만엔~ ⑨ 1,000만엔~ ⑩ 2,000만엔~ ⑪ 5,000만~ ⑫ 1억엔 이상 □ 2013년 [내수면 경영체조사] • 어획물 판매금액, 양식 판매금액을 통합하여 구간선택형으로 조사 ① 판매 없음 ② 10만엔 미만 ③ 10만엔~ ④ 30만엔~ ⑤ 50만엔~ ⑥ 100만엔~ ⑦ 300만엔~ ⑧ 500만엔~ ⑨ 1,000만엔~ ⑩ 2,000만엔~ ⑪ 5,000만~ ⑫ 1억엔 이상
대만	• 수산물 총판매금액을 구간별로 기표 ① 없음 ② 2만원 미만 ③ 2 ~ 3만원 미만 ④ 3 ~ 5만원 미만 ⑤ 5 ~ 10만원 미만 ⑥ 10 ~ 20만원 미만 ⑦ 20 ~ 30만원 미만 ⑧ 30 ~ 40만원 미만 ⑨ 40 ~ 50만원 미만 ⑩ 50 ~ 100만원 미만 ⑪ 100 ~ 150만원 미만 ⑫ 150 ~ 200만원 미만 ⑬ 200 ~ 300만원 미만 ⑭ 300 ~ 500만원 미만 ⑮ 500 ~ 1,000만원 미만 ⑯ 1,000 ~ 2,000만원 미만 ⑰ 2,000 ~ 3,000만원 미만 ⑱ 3,000 ~ 5,000만원 미만 ⑲ 5,000만원 이상, 실제금액기입 _____
미국	• 어종 별 양식 판매금액 기입

□ 국제 권고안

1963년	• FAO 12차 로마 총회 어업조사 프로젝트 결의안: 어류와 어류생산물에 대한 경제성과 판매 조사
-------	---

□ 참고 사항

- 사례) 어로어업 판매금액이 300만원, 양식어업 판매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 수산물 총 판매금액 : 800만원, 양식 판매금액 : 500만원
- 신규 양식어가가 증식기간·시설준비 중인 경우, 신규 어로어가가 판매를 위해 어획물을 가공 중인 경우 등에는 판매금액이 없는 어가로 조사될 수 있음
- 판매 금액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등의 부과를 우려하여 축소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여야 함
- 판매금액만 조사하고, 투입금액은 왜 조사하지 않는가 라는 불만 있음

□ 검토 및 개선 방향

- 매 조사 주기 마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가격 범위의 변동 가능성 있음

경영 형태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가대상 표본조사의 특성층 자료
- 어가 경제의 기본지표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난외사항의 계층구분 · 개인경영가구 및 고용자가구 - 동력선 사용 - 무동력 5톤 이상 - 무동력 5톤 미만 - 어선비사용가구 및 고용자 가구 · 공동 경영 · 회사 경영	개인어가의 주된 어업 형태 ① 동력선 사용 ② 무동력선 사용 ③ 양식업 ④ 어선 비사용	개인어가의 주된 어업 형태 ① 동력선 사용 ② 무동력선 사용 ③ 양식업 ④ 어선 비사용	개인어가의 주된 어업 형태 ① 동력선 사용 ② 무동력선 사용 ③ 양식 어업 ④ 어선 비사용
2000년	2005년	2010년	
지난 1년간 가구전체의 어업수입이 가장 많았던 어업형태는 양식과 어로어업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양식 어업 ② 자기어선(빌린어선 포함) ③ 남의 어선 승선 ④ 어선 비사용 [내수면 어가] ① 양식어업 ② 어로어업	지난 1년간 어업수입이 가장 많았던 어업형태는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중 어느 것입니까? ① 어로어업 ② 양식어업 ↓ ① 자기어선(빌린어선 포함) ② 남의 어선 승선 ③ 어선 사용하지 않음 [내수면 어가] ① 어로어업 ② 양식어업	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경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판매금액이 없으면 종사 기간이 길었던 경영 형태로 기입) ① 어로어업- ㉠ 보유 어선 사용 ㉡ 남의 어선 사용 ㉢ 어선 사용하지 않음 ② 양식어업- ㉣ 어류 ㉤ 갑각류 ㉥ 패류 ㉦ 기타수산물 ㉧ 해조류 ㉨ 종묘 [내수면 어가] ① 어로어업 ② 양식어업 - ㉠ 어류 ㉡ 갑각류 ㉢ 패류 ㉣ 기타 수산 동식물	

2015년
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경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판매 금액이 없으면 종사 기간이 길었던 경영 형태로 기입) ①어로어업과 ②양식어업 중 1곳에 √표 하고 세부 형태(㉠ 보유 어선 사용~㉡ 종묘)에도 반드시 √표시 ① 어로어업 - ㉠ 보유 어선 사용 ㉡ 남의 어선 사용 ㉢ 어선 사용하지 않음 ② 양식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수산물 ㉦해조류 ㉧종묘 [내수면 어가] (판매 금액이 없으면 종사 기간이 길었던 경영 형태로 기입) ② 양식어업인 경우에는 양식 품종(㉠~㉢)에도 √표시 ① 어로어업 ② 양식어업 - ㉠어류 ㉣갑각류 ㉤ 패류 ㉥기타 수산 동물류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계층구분에서 동력선 사용, 무동력 5톤 이상, 무동력 5톤 미만, 어선비사용가구 및 고용자가구로 구분 기입
1980년~1995년	- 동력선 사용: 직접 동력선을 운영관리하며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무동력선 사용: 직접 무동력선을 운영관리하며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양식어업 가구: 연안어장에서 패류, 해조류, 어류, 갑각류, 기타 수산동식물 등 양식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어선비사용: 남의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을 경영하거나(1본조 또는 채낚기 어업 등 수동 식방법으로 조업하는 경우),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채포, 채취) - 동력선, 무동력선, 양식어업을 모두 조업하였을 경우 연간조업일수가 많거나 연간 소득 이 많은 종류, 주로 사용한 어선 종류를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 - 전진만 되고 후진이 되지 않는 배(준동력선)도 동력선에 포함 - 양식가구에서 양식 생산수단으로 동력선, 무동력선(양식채취선)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양식업으로 분류하고, 소유 어선은 어선항목에서 조사(1980년 ~ 1990년)
2000년~2005년	- 지난 1년간 어업수입이 가장 많았던 어업형태를 조사 - 자기어선이란 자기어선을 사용하는 어업뿐만 아니라 남의 어선을 빌려서 자기 책임 하에 어업을 경영한 경우도 포함 - 남의 어선 승선이란 남의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후 얻은 수입을 선주와 일정비율로 분배한 경우(깃가림) - 어선 사용하지 않음이란 나잠·멘손·투망어업 등 어선을 사용하지 않은 어로어업
2010년~2015년	- 양식어업 분류세분(2010년) - 양식어업은 규모 있는 시설을 갖춘 가두리식, 수조식을 비롯해서 마을어업 어업권 수역에 양식면허를 받고 살포식으로 종패를 방사하는 영세한 방법까지를 모두 포함 -마을 공동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의 어업 형태는 소속 어촌계의 어업권 종류에 따라 구분(마을어업과 양식 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양식어업)

□ 참고 사항

○ 어로어업

- ㉠ 보유어선 사용 : 소유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뿐만 아니라 남의 어선을 빌려서 자기 책임 아래 어업을 경영한 경우도 포함
- ㉡ 남의 어선 사용 : 보험제로 약정한 후 동업자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하고, 수입액은 선주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경우
- ㉢ 어선 사용하지 않음 :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 등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신고(어로)어업을 하는 경우

판 매 처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수산상품의 계통출하 등 기본 유통구조 파악
- 어촌 소득 및 부가가치 증대방안 연구
- 수산물의 직거래 실태 및 유통합리화 방안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	-	[내수면 양식어업 판매처] ① 없음 ② 자가 소비 ③ 위탁판매 ④ 음식점 ⑤ 기타	[내수면 양식어업 판매처] ① 없음 ② 자가 소비 ③ 위탁판매 ④ 음식점 ⑤ 기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수산물은 주로 어디에 판매하였습니까? ① 수협계통 ② 도매시장 ③ 수 집 상 ④ 음 식 점 ⑤ 가공공장 ⑥ 양 식 장 ⑦ 자기매장 ⑧ 기 타 [내수면 어가] ① 도매시장 ② 수 집 상 ③ 음 식 점 ④ 양 식 장 ⑤ 자기매장 ⑥ 기 타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수산물은 주로 어디에 판매 하였습니까? ① 수협(위·공판장) ② 도매시장 ③ 수 집 상 ④ 음 식 점 ⑤ 가공공장 ⑥ 양 식 장 ⑦ 소비자 직접판매 ⑧ 기 타 [내수면 어가] ① 도매시장 ② 수 집 상 ③ 음 식 점 ④ 양 식 장 ⑤ 자기매장 ⑥ 기 타	지난 1년간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음식점은 어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 ① 수협(위·공판장) ② 도매시장 ③ 수 집 상 ④ 음 식 점 ⑤ 가공공장 ⑥ 양 식 장 ⑦ 소비자 직접판매 ⑧ 수산물 소매상 ⑥ 기타(판매 없음 포함) [내수면 어가] ① 도매시장 ② 수 집 상 ③ 음 식 점 ④ 양 식 장 ⑤ 소비자 직접판매 ⑥ 수산물 소매상 ⑦ 기타(판매 없음 포함)	지난 1년간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 음식점은 어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 ① 수협(위·공판장) ② 도매시장 ③ 수집상 ④ 음식점 ⑤ 가공공장 ⑥ 양식장 ⑦ 소비자 직접 판매 ⑧ 수산물 소매상 ⑨ 어가 ⑩ 기타(판매 없음 포함) [내수면 어가] ① 도매시장 ② 수집상 ③ 음식점 ④ 양식장 ⑤ 소비자 직접 판매 ⑥ 수산물 소매상 ⑦ 기타(판매 없음 포함)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90년~1995년	• 공동경영에만 참여하는 개인경영가구는 공동경영체와 동일하게 조사
2000년~2005년	•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수산물을 주로 어디에 판매하였는지를 조사 • 자기 음식점에서 사용한 경우도 음식점에 해당 • 자기가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는 실제로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장소를 조사 • 수집상 : 생산지에서 산지수집상에게 판매한 경우 • 소비자직접판매 : 자기매장이나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및 우편판매 등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 수협계통이란 수협공판장이나 위판장을 통해 수협에 직접 판매한 것(2000년)
2010년~2015년	• 수산물 소매상 추가(2010년) • 수집상 : 생산지에서 어가로부터 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상) 등에 판매한 경우 • 양식장 : 생산한 종묘를 양식장에 판매한 경우, 해조류·어류 등을 양식장의 사료로 공급한 경우 • 소비자 직접 판매 : 자기 매장이나 재래시장, 전자상거래 및 우편판매 등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 • 기타 : 대형 유통업체, 대량 수요처, 정부기관, 판매 없음 등 • ④ 음식점, ⑤ 수산물 가공업체는 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만 포함(음식점 이나 가공업체를 어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함)

□ 주요국 사례

일본	• 지난 1년간의 어획물 출하처(출하처 전부 기표) • 어협시장 또는 출하매매장소, 어협이외 도매시장,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소매업자, 생협(生協), 직매소, 자가 판매, 기타 • 주된 출하처 하나에 기표 [내수면 경영체조사] • 어협/농협, 소매상, 여관/음식업, 실내낚시, 양식업경영체, 가정소비자, 기타로 구분
미국	• 양식품종별 판매처: 가공업자, 도매업자·운송업자·중개인, 음식점 및 직접 소매상, 소비자, 레저용, 기타 생산자, 정부기관, 기타(수출 등)(품종별 %로 기입)

□ 국제 권고안

1998년	[FAO 전문가회의: 어로어업 자료의 경상수집 지침] • 경제지표중 시장가격변수: 어종가격, 시장 수준과 등급(산지,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	--

판매 형태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가의 기본 소득구조 추정자료
- 수산상품의 품종별 유통구조 파악
- 어업의 고부가치 상품개발 및 소득증진
- FTA, DDA 대비 어촌 경쟁력강화 정책자료

□ 조사표 내용

2000년					2005년				
지난 1년간 수산물은 주로 어떤 형태로 판매하였습니까? ① 활 어 ② 선 어 ③ 가공품 ④ 기 타 ⑤ 판매 없음					수산물은 주로 어떤 형태로 판매하였습니까? ① 활 어 ② 선 어 ③ 가공품 ④ 해조류 ⑤ 패 류 ⑥ 갑각류 ⑦ 기타() [내수면 어가] ① 활 어 ② 선 어 ③ 가공품 ④ 패 류 ⑤ 기타()				
2010년									
지난 1년간 판매한 수산물 품종별로 해당되는 판매 형태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판매한 품종별로 해당되는 판매 형태에 모두 √표									
해 수 면	활 어	선 어 (신선품)	건 제 품	기 타 가 공 품	내 수 면	활 어	선 어 (신선품)	건 제 품	기 타 가 공 품
어 류	①	②	③	④	어 류	①	②	③	④
갑 각 류	①	②	③	④	갑 각 류	①	②	③	④
패 류	①	②	③	④	패 류	①	②	③	④
연 채 동 물	①	②	③	④	기타 수산동물	①	②	③	④
기타 수산동물	①	②	③	④	종 요	①			
해 조 류	①	②	③	④					
종 요	①								

2015년

지난 1년간 판매한 수산물 품종별로 해당되는 판매 형태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판매한 품종별로 해당되는 주된 판매 형태에 √표
- 활어 : 활어조 등을 사용하여 살아 있는 상태로 판매
- 선어(신선품) : 열장, 건조 등을 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판매

해 수 면	활 어	선 어 (신선품)	건제품	기 타 가공품
어 류	①	②	③	④
갑 각 류	①	②	③	④
패 류	①	②	③	④
연 체 동물류	①	②	③	④
기타 수산동물	①	②	③	④
해 조 류		②	③	④
종 요	①			

내 수 면	활 어	선 어 (신선품)	건제품	기 타 가공품
어 류	①	②	③	④
갑 각 류	①	②	③	④
패 류	①	②	③	④
기타 수산 동물류	①	②	③	④
종 요	①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00년~2005년	· 어가에서 판매한 당시의 상품을 기준으로 조사 · 어류, 오징어, 낙지 등은 활어, 선어로 구분 · 가공품 :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 저장할 수 있게 가공된 수산물로서 훈제품, 염장품(소금을 가한 것), 건조품, 절임품, 통조림 및 기타 기계가공품 등 · 해조류 : 김, 미역, 다시마 등을 낱 것으로 판매 · 패류 : 굴류, 전복류, 가리비 등을 낱 것 또는 죽은 상태로 판매 · 갑각류 : 게류, 새우류 등을 낱 것 또는 죽은 상태로 판매 · 기타 : 명게, 미더덕 등 기타 상품형태로 판매 [내수면 경영체조사] · 판매금액 1순위의 종류가 식용인 경우 활어, 선어, 가공품, 기타로 구분(2000년)
2010년	· 수산물 품종별, 판매형태별 분류 추가 ·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하여 판매한 품종별로 주된 판매 형태(활어, 선어, 냉동품, 건제품, 기타 가공품)를 구분하여 조사
2015년	·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하여 판매한 품종별로 주된 판매 형태(활어, 선어, 건제품, 기타 가공품)를 구분하여 조사

□ 주요국 사례

일본	[2003년 내수면경영체조사] • 판매형태 ① 활어 ② 선어 ③ 가공품 ④ 기타
----	--

□ 참고 사항

○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품종 분류

- 갑 각 류 : 게류(꽃게, 대게 등), 새우류(대하, 젓새우, 꽃새우 등) 등
- 연체동물 : 오징어류, 낙지, 문어, 주꾸미, 꼴뚜기 등
- 기타 수산동물 : 미더덕, 성게, 멍게(우렁챙이), 해삼 등
- 종묘 : 이식·방류·양식하기 위해 생산한 종패, 치어 등

○ 수산물의 판매형태 구분

- 활 어 : 활어조 등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
- 선 어 : 염장·건조 등을 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판매(패류의 껍질을 제거하여 판매한 경우도 포함)
- 건제품 : 장기 저장할 수 있게 건조하여 판매
- 기타 가공품 : 변질되지 않고 장기 저장할 수 있게 냉동, 훈제, 염장(소금을 가한 것), 절임하거나 통조림 및 기타 가공하여 판매

생산자 조직 참여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 생산 및 유통 등 경영구조 협동화실행
- 자율관리 어업정책 활성화
- WTO, FTA 등에 대비한 어업경쟁력 강화방안
- 어업경영의 현대화, 규모화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2000년	2005년
조사표 난의사항 • 주소 • 소속 어협	작년에 어업과 관련하여 어떤 수협이나 법인 등에서 활동하였습니까? (2개 이상인 경우 모두에 ○표) ① 업종별 수협 ② 지구별 수협 ③ 영어 조합법인 ④ 일반 회사법인 ⑤ 어촌계 ⑥ 기 타 ⑦ 활동안함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수협 또는 법인, 어촌계 등에서 활동하였습니까? • 해당되는 것 모두 ○표 ① 활동함 ② 활동안함 ↓ ① 업종별 수협 ② 지구별 수협 ③ 영어 조합법인 ④ 일반 회사법인 ⑤ 어촌계 ⑥ 기타(협회 등) [내수면 어가] ① 활동함 ② 활동안함 ↓ ① 양만 수협 ② 영어 조합법인 ③ 일반 회사법인 ④ 내수면 어업계 ⑤ 기타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활동한 생산자 조직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번호에 √표 ① 업종별 수협 ② 지구별 수협 ③ 영어 조합법인 ④ 일반 회사법인 ⑤ 어촌계 ⑥ 기타(협회 등) ⑦ 참여안함 [내수면 어가] ① 수협 ② 영어 조합법인 ③ 일반 회사법인 ④ 내수면 어업계(어촌계) ⑤ 기타(협회 등) ⑥ 참여 안 함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활동한 생산자 조직은 무엇입니까? •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① 업종별 수협 ② 지구별 수협 ③ 영어 조합법인 ④ 일반 회사법인 ⑤ 어촌계 ⑥ 기타(협회 등) ⑦ 참여 안 함 [내수면 어가] ① 수협 ② 영어 조합법인 ③ 일반 회사법인 ④ 내수면 어업계(어촌계) ⑤ 기타(협회 등) ⑥ 참여 안 함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조사표 난의 사항에서 소속 어협을 기재
2000년~2005년	- 실제 활동하고 있는 생산자조직을 조사 - 가입은 하였으나 실제 활동하지 않았으면 「활동안함」 ① 업종별 수협 : 특정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모여 설립한 수산업협동조합 (기선권형망 수협, 안강망 수협, 굴 수하식 양식 수협 등) ② 지구별 수협 : 시·군 단위로 해당 지구에 거주하는 어민이 설립한 수협 ③ 영어조합법인 : 어업경영의 생산성 향상, 수산물 공동 출하·가공·수출 등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립한 단체 ④ 일반회사법인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체 ⑤ 어촌계(내수면양식계) :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어촌계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내수면어업] 양만수협: 특정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모여 설립한 업종별 수협에 해당되며 뱀장어양식을 경영하는 자들이 만든 수협
2010년~2015년	- 가입은 하였으나 실제 활동하지 않고 있거나 거주 지역에 생산자 조직 자체가 없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여 안함」에 기입 - 수협이나 어촌계의 경우 가입하여 출자금 납부 또는 단순 의결권 행사만 하거나, 위판장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참고 사항

- 생산자조직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생산자조직의 사업내용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한 경우)
 - 수산 종묘 생산 및 보급, 어장 개발 및 어장 환경 보전, 어업 질서 유지, 관광사업 등 어가 소득 증대사업, 어업권 취득 및 경영,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수산물 공동 제조 및 가공 등

어업 관련 사업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가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표 내용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였습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 마을 공동 사업 및 생산자 조직 참여 사업도 포함함. ① 수산물 직판장 ② 수산물 직거래 ③ 식당 경영 ④ 수산물 가공업 ⑤ 어촌 관광 사업(민박 경영 등) ⑥ 낚시 안내업 ⑦ 하지 않았음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였습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 마을 공동 사업 및 생산자 조직 참여 사업도 포함함. ① 수산물 직판장 ② 수산물 직거래 ③ 식당 경영 ④ 수산물 가공업 ⑤ 어촌 관광 사업(민박 경영 등) ⑥ 낚시 안내업 ⑦ 하지 않았음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10~2015	·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 ① 수산물 직판장, ② 수산물 직거래, ③ 식당 경영, ④ 수산물 가공업은 해당 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물을 활용한 경우에만 해당 · 낚시 안내업에만 전담하는 가구원과 선박은 어업 종사 기간 및 어선 항목에서 조사하지 않음
-----------	---

어업 고용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가의 어업 외 소득원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표 내용

2010년						2015년					
지난 1년간 어업 경영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 고용인별로 해당하는 고용 기간에 모두 ✓표 하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내외국인별 고용인 수를 기입 ① 예 ② 아니요						지난 1년간 어업 경영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 고용인별로 해당하는 고용 기간에 모두 ✓표 하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내외국인별 고용인 수를 기입 ① 예 ② 아니요					
고 용 기 간						고 용 기 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	↓				↓	↓	↓		
고용인수	십	일	십	일	십 일	고용인수	십	일	십	일	십 일
내 국 인						내 국 인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외 국 인						외 국 인	남자		남자		
							여자		여자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10	· 고용인이 가구원인 경우에도 포함하여 조사 · 어업 고용인에 포함되는 작업 유형 · 어로 작업: 어선 항해, 기관 조작, 해상 가공, 육상에서의 인망 작업·그물 손질, 어획 수산물 정리·선별, 해조류 채취 및 채집 활동 등 · 양식 작업: 양식 시설 설치·해체, 채묘, 어장 돌보기 등
2015	· 피고용인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

전업 및 겸업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전·겸업 어가	○	⊗	⊗	⊗	⊗	⊗	⊗	⊗
- 겸업 구분	○	⊗	⊗					
- 경지 조사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전·겸업 구분에 기초한 어가의 기본 경영상황 파악
- 어가대상 표본조사의 특성층 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어가구의 성격]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의 수입을 통하여 ① 어업 이외의 수입이 없었다 ② 어업 수입이 주된 수입이었다 ③ 어업 수입이 부된 수입이었다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를 통한 가구로서의 수입원은? ① 자영했다(어업, 농업, 기타) ② 행상·직공 ③ 고용되었다(사무직원·교원, 어업, 어업 외)	[어업가구 상황 조사] 전·겸업별 조사 ① 어업 수입 뿐이다 ② 어업 수입이 더 많다 ③ 어업 수입이 더 적다 겸업구분 조사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의 겸업 수입 중 가장 많은 것에 ○표 ① 농업 ② 상공업 ③ 서비스 ④ 기타 경지조사(단위: 평) ① 전 ② 답 ③ 수원지	[어업가구 상황 조사] 전·겸업별 조사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를 통하여 수입은 어떻게습니까? ① 어업 수입 뿐이다 ② 어업 수입이 더 많다 ③ 어업 수입이 더 적다 겸업구분 조사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에서 어업 이외의 주된 수입원은 어느 분야입니까?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상업 ④ 농업 ⑤ 기타 경지조사(단위: 평) 금년 택에서 경작한 경지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① 논 ② 밭 ③ 수원지
1995년	2000년	
수입 조사 ① 어업 수입이 많다(1종 겸업어가) ② 어업 외수입이 더 많다(2종 겸업어가)	지난 1년간 택에서는 어업 수입과 어업 이외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① 어업 수입 뿐이다 ② 어업 수입이 더 많다 ③ 어업 이외 수입이 더 많음	

2005년	2010년
지난 1년간 이 닻의 전체수입에서 어업 수입과 어업 이외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① 어업 수입 뿐임 ② 어업 수입이 많음 ③ 어업 이외 수입이 더 많음	지난 1년간 전체수입에서 어업 수입과 어업 이외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① 어업 수입 뿐임 ② 어업 수입이 많음 ③ 어업 이외 수입이 많음
2015년	
지난 1년간 전체수입에서 어업 수입과 어업 이외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 어업 이외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원이 있으면 ② 또는 ③ 에 ☒ √ ① 어업 수입 뿐임 ② 어업 수입이 많음 ③ 어업 이외 수입이 많음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어가구의 성격에서 지난 1년간의 가구원 전체의 수입을 통하여, 전업어가는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를 말하고, 겸업어가는 1종겸업어가(어업수입>어업이외수입), 2종 겸업어가(어업수입 <어업이외 수입)로 구분 · 주된 수입원 중 농업에는 양축·양봉·양잠을 포함하고 임업은 제외, 기타는 임업·상업·공업 등 생산사업, 행상직공은 목수·미장이 등 토목공사의 인부·직공·행상·무당, 어업외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 임업, 공업 등 생산사업에 고용된 것을 말한다
1980년~1995년	·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의 수입으로 보아 어업수입 뿐인가 또는 어업이외의 수입이 있으면 어업수입이 어업이외의 수입보다 많은가 적은가를 구분하여 기입 · 어업수입과 어업이외 수입이 비슷할 때는 주로 노력을 많이 경주한 쪽으로 조사 · 어업이외 수입에는 농업수입, 상공 및 서비스 등의 기타 겸업수입, 임금 및 급료 등의 사업의 수입 등은 포함되나, 이전수입과 재산적 수입은 제외 · 경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상관없이 실제 경작한 경지면적(임차도 포함)을 기재하되, 자기소유 경지라도 임대한 것은 제외(1980년 ~ 1990년) · 수원지는 과수, 뽕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한 면적(1980년 ~ 1990년) · 경지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휴반 등) 것을 말한다(1980년 ~ 1990년)
2000년~2005년	· 전업어가는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를 말하고, 겸업어가는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를 말함 겸업어가는 다시 1종겸업어가(어업수입>어업이외수입), 2종겸업어가(어업수입 <어업이외수입)로 구분 · 어업수입뿐임이란 해당 어가에서 직접 경영한 어업수입뿐이거나, 어업이외에 종사하였더라도 1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에 해당, 1개월 이상 남의 어업 일을 해주고 받은 수입은 어업이외 수입에 해당

2010년	• 전·겸업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수입 중 직접 경영한 어업 수입과 어업 이외 수입을 비교하여 작성(가구원 중 고용인은 제외하고 평가). - 어업 이외 수입 : 농림업,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종사해서 얻어들인 수입액 (남의 어업에 종사하고 받은 임금, 어업 관련 서비스업 수입도 포함) - 평가 제외 수입 : 보조금, 연금, 용돈, 이자, 배당금, 임대료 수입 등
2015년	• 어업 외 종사 기간에 1개월 이상인 가구원이 있으면 「② 어업 수입이 더 많음」 또는 「③ 어업 외 수입이 더 많음」에 표시 • 어업 관련 사업에 ③ 식당 경영, ④ 수산물 가공업, ⑤ 어촌 관광 사업, ⑥ 낚시 안내업이 조사되었다면 「② 어업 수입이 더 많음」 또는 「③ 어업 외 수입이 더 많음」에 표시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 세대원 조사항목의 주종사분야중 가계의 주된 겸업종류를 기입 • 가계의 자영업과 그 이외의 겸업중 어느 쪽이 수입이 많습니까? ① 자영업이 주 ② 자영업이 중 • 공동경영에 참가한 세대에 대하여 자영업과 공동경영을 합친 수입과 그 이외의 겸업을 합친 수입과의 관계는 ① 자영업과 공동경영만 ② 자영업과 공동경영이 주 ③ 자영업과 공동경영이 중 □ 2008년 • 전·겸업 ① 전업 ② 겸업(어업이 주) ③ 겸업(어업이 중) • 겸업 종사 분야 ① 수산가공업 ② 민박 ③ 낚시안내업 ④ 기타 자영업 ⑤ 임금노동 • 민박과 낚시안내업 종사인 경우 연간 이용자 수 조사 □ 2013년 • 겸업 세부 조정 해수면: 자영업(수산가공업, 민박, 놀잇배어업, 기타) 임금 노동 내수면: 자영업, 임금 노동
대만	• 전업여가: 가구원 모두가 어업에만 종사, 가구원중 어업이외 종사하였으나 연중 30일 미만이고 수입액이 2만달러(약 60만원) 미만인 경우 • 겸업여가: 가구원중 어업이외 종사기간이 연중 30일 이상 혹은 당해 부문 수입액이 2만달러(약 60만원) 이상인 경우 • 겸업여가는 어업이 주, 겸업이 주로 다시 구분 • 어업이외 종사 산업분야(바다 낚시, 관광 등 해상활동, 어업관련 육상활동, 어촌 산업 및 문화 체험활동, 어업 교육 및 해설, 음식업, 숙박업, 기타)와(복수선택) 총 수입 • 수산물 가공판매 유무와 총수입

□ 참고 사항

- 1995년 어업이외의 수입
 - 이전 수입: 사례금, 출타가족으로부터 받은 송금, 사교상 받은 축·조의금, 학자금, 보조금, 퇴직일시금, 피해보상금
 - 재산적 수입: 자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예금 및 적금 인출액
- 1970~1990년은 가구단위 겸업구분 조사, 1995년 이후는 가구원의 「주 종사분야」에서 간접 추정
- 어업종사기간은 어업(산업)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하게 되고, 겸업여부는 수입구조를 다루게 되는데, 남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종사기간은 어업에 해당되고, 전·겸업에서는 어업이외에 해당되므로 조사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어업 수입을 자기어업수입으로 수정 필요
 - 어업임금노동 수입도 어업수입으로 검토

비동거 어업 임금 종사자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비동거 어업임금종사자					○	○		
- 신규종사자 및 이어자	○	◎	◎					
- 최성어기 종사자	○	○	○	○				
- 지역별 종사자		○	○					
- 해상작업 종사일수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 노동실태 파악 및 노동복지수요 파악
- 어업임금종사자 규모 및 관련 정책수요 대상파악
- 내국인의 탈어촌 현상 및 어촌공동화 실태 분석
- 외국인 어업임금종사자 고용현황 파악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지난 1년간 가구원 중에서 새로이 어업에 종사한 자와 그만둔 사람의 수는? • 새로이 어업에 종사했다 ① 학교졸업 직후 (국민교, 중고교, 전문대학) ② 다른 직업에서 전환했다 (농림업, 기타 산업) • 어업을 그만 두었다 ①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다 (농림업, 기타 산업) ② 노령 또는 신병으로 그만 뒀다 ③ 사망으로 그만 뒀다	신규종사자와 이탈자수 • 타업에서 어업으로 ① 농 업 ② 상공업 ③ 서비스 ④ 기 타 • 어업에서 타업으로 ① 농 업 ② 상공업 ③ 서비스 ④ 기 타 최성어기 종사자수 (총 명)	지난 1년간 신규종사자 및 이어 (탈)자수 • 타업에서 어업으로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상업 ④ 농업 ⑤ 기타 • 어업에서 타업으로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 상업 ④ 농업 ⑤ 기타

1970년	1980년	1990년
지난 1년간에 가장 많이 해상작업에 종사한 때의 인원수는? ① 가족종사자(출자자포함) ② 고용종사자 지난 1년간 사업체 전체를 통하여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는? ① 29일 이하 ② 30 ~ 59 ③ 60 ~ 99 ④ 100 ~ 149 ⑤ 150 ~ 199 ⑥ 200 ~ 299 ⑦ 300일 이상	지역별 종사자수 ① 동일 시군 (명) ② 기타 지역 (명)	지난 1년중 어업종사자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몇 명입니까? • (총 인) 평상시 지역별 종사자수 ① 동일시군 (명) ② 기타시군 (명) 어업활동 및 경영상황 • 해상작업 종사일수(지난 1년간)
1995년	2000년	2005년
지난 1년중 어업종사자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몇 명입니까? • 종사자수 ① 상시고용 (명) ② 임시고용 (명) 어업활동 및 경영상황 • 해상작업 종사일수(지난 1년간)?	2000년 12월 1일 현재 댁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고용인은 몇 명입니까? • 1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 • 남자·여자 별도 조사	2005년 12월 1일 현재 이 댁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고용된 어업임금종사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 1개월 이상 어업활동에 고용한 사람만 해당 • 내국인·외국인 별도 조사 • 남자·여자 별도 조사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중에서 새로이 어업에 종사한 자와 그만 둔 사람을 기입 • 신규종사자: 학교졸업 직후(국민학교, 중학교, 전문대학), 다른 직업에서 전환(농림업, 기타 산업) • 이탈자: 다른 직업으로 전환(농림업, 기타 산업), 노령 및 신병, 사망으로 구분
1980년	• 가구원중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어업에 신규로 종사한 경우, 어업에 종사하다가 타업으로 직업을 바꾼 경우 해당 사항에 기입 • 지난 1년간에 어업활동을 하면서 해상작업이 가장 많았을 때의 인원수 • 조사기준일 현재 종사자가 시군내에서 거주하였는가 또는 타지역에서 전입하였는가를 구분 조사

1990년~1995년	• 지난 1년간에 어업활동을 하면서 해상작업이 가장 많았을 때의 인원수를 기입하며 육상 지라도 해수를 이용하는 양식장은 포함 • 가족종사자 및 고용인,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종사자는 모두 포함하나, 관광안내에 종사한 활동은 제외 •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어업종사자가 동일 시군내에서 거주하는가 또는 타지역에서 취업하였는가를 구분하여 조사(1990년) • 종사일수는 1일에 종사한 사람의 수와 조업한 어선척수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1990년) • 1일중 몇회 입항하여도 1일, 저녁 출항 - 아침 귀항은 1일, 1항해가 이틀밤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항일에서 입항일까지를 통산해서 일수 계산(1990년) • 가구원중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어업에 신규로 종사한 경우, 어업에 종사하다가 타업으로 직업을 바꾼 경우 해당 사항에 기입(1990년)
2000년~2005년	• 조사기준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고용자수 조사 • 외국인 고용자는 별도 분리조사하며 현재 어업임금종사자가 없으면 최근 성어기를 기준(2005년)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년 [해상작업 종사일수 계산] • 유어(遊漁)안내업은 제외 • 일일 퇴근 조업은 1일중 2회 이상 조업하여도 1일 • 1항해가 1일 밤인 경우(저녁 무렵 출항하여 다음날 아침 입항) 1일 • 2일 밤 이상 계속될 때는 출항하여 입항일까지를 통산한 일수로 계산 [어업 종사자수] • 조사기준일 현재 어업의 해상작업 종사자수: 가족, 고용자(소개, 동일시정촌, 기타 현 내, 현 외(외국인 별도)) • 지난 1년간 최성어기의 해상 종사인원수: 가족(남, 여), 고용자(남, 여) • 지난 1년간 최성어기의 육상 종사인원수: 가족(남, 여), 고용자(남, 여) [어업 종사일수] • 지난 1년간 육상작업을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한 일수, 해상작업 종사일수 [내수면 경영체조사] • 호상작업 및 양식업 종사자수를 (가족과 고용자, 남·여로 구분, 남자는 연령대별로 구분) 기입하고 호상작업은 종사일수 기입 □ 2008년 [어업 종사자수] • 조사기준일 현재 어업의 해상작업 종사자수: 계, 일본인 (계, 동일시정촌, 기타현내, 현 외, 어업신규종사자), 외국인 • 연간 30일 이상 해상작업을 하는 일본인 종사자 :연령별, 성별, 동일시정촌 종사자 • 최성어기의 육상작업 종사자 수 : 계, 남, 여 • 내수면어업의 호상작업, 양식업 종사자 수를 성별, 연령별로 기입, 호상작업은 종사일수 기입
----	--

대만	• 해상 및 육상작업별 상용 임시 무급 종사자별 성별, 출신 지구별 고용인 - 성별: 남,여 - 출신지: 대만·펑호·급마, 대륙지구, 기타지구
미국	• 종사자 및 급여액: 주당 종사 시간수, 가족종사자 등 비급여 종사자 수, 전업 및 파트타임 임금 종사자수(전업: 150일 이상, 파트타임: 150일 미만), 연간 급여액

□ 국제 권고안

1985년	[FAO 어업통계를 위한 실용 지침서] • 비용과 수익부분 조사지침 중 • 어업종사 인원수 : 승선인원수와 육상종사자수(총인원수, 가족종사자수, 고용종사자수) 조사 • 가구조사와 어류소비에서 어업종사자수를 전업, 파트타임, 레저어업, 총인원수로 구분
1998년	[FAO 전문가회의: 어로어업 자료의 경상수집 지침] • 경제지표/어업부문 고용수준 변수: 어업고용자수(1, 2, 3차 부문별, 성 및 연령별, 어업 부문별, 어업 소요시간별)

□ 참고 사항

○ 조사중단 항목 삭제 사유

- 최성어기 종사자: 어업종류별로 최성어 기간이 다르므로 동일한 고용인이 여러 가구에 이중 조사될 수 있어 동일시점의 어업종사자 파악이 곤란하므로, 비동거 어업임금종사자 항목에서 동일시점으로 조사 대체
- 해상작업 종사일수: 해상작업 종사일수 응답의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구원사항의 어업종사기간으로 대체

○ 비동거임금종사자 항목 추가사유

- 1990년 이전까지는 어업 임금종사자가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구주의 잦은 이동,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 등으로 조사 곤란 및 조사치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공표에서 제외
- 최근 고용어업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동일한 시점에서의 동거 및 비동거 고용어업종사자의 전체적 파악 필요성 증가
- 동거하는 고용어업종사자는 가구원사항에서 파악됨

○ 조사시점 현재 어가에서 휴어기, 금어기, 계절적요인 등으로 어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최성어기 기준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으며, 조사결과 자료의 정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음

○ 해상작업의 포괄범위

- 어선어업: 어선의 항해, 기관 조작, 어로 해상가공 등의 작업(모선식 어업의 모선, 그것에 부착한 운반선 등 어로와 관련하여 배의 승선원의 작업을 포함)
- 정치망어업: 그물의 설치, 교환, 어선의 항해, 어로 및 기타 해상에 있어서의 전체 작업, 특히 어군의 입망상황 등을 육상에서 살펴보는 것을 포함
- 지인망어업: 어선의 항해, 그물 돌아보기 및 해상에 있어서의 어로작업과 육상에서의 인망작업을 포함
-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조개나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잠수해서 조개 등을 채집하는 작업 포함
- 해면양식: 어장의 왕복, 뗏목, 그물 등 양식시설의 설치, 해체, 채묘, 어장 돌아보기, 수확물 채취 등의 전체 해상작업을 말하고, 어류양식 등 수산동식물의 양식에 있어서 해면이외의 육상지(저수지)에서의 작업도 포함

투자 금액 / 차입 금액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투자금액	○							
○ 차입금액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경제의 설비투자 현황 파악
- 어업경영 건전성 측정 및 자금흐름 상황 판단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투자금액	1. 지난1년간 대체한 어선 및 기관과 신조한 어선은? • 어선명, 어선행질(동력 및 무동력), 톤수, 대선 건조, 기관 대체, 신규 건조 별 2. 지난 1년간 대체 또는 새로이 구입한 어망은?(어망 종류별 기입) 3. 지난 1년간 대체 또는 새로이 시설한 양식시설은? (양식 품종별 기입)
차입금액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은?(12월 1일 현재 잔액, 지난 1년간 총 차입금액) • 수협, 농협, 자치단체, 은행, 개인, 기타별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대선건조: 노후어선을 대체키 위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구입한 것 • 기관대체: 어선의 기관만을 대체한 것(무동력선에 기관을 설치한 것 포함) • 신규건조: 새로이 어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선을 새로이 건조 또는 구입한 것 • 어망종류별(트롤, 저인망, 선망, 부망, 자망, 인망, 조연승, 정치망, 기타 어망)로 노후된 시설을 전부 대체한 것(대체), 새로이 어업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망을 새로 구입한 것(신규)을 구분 기입 • 양식품종별(갑, 굴, 백합, 진주) 대체 또는 신규투자한 양식시설 기입 • 12월 1일 현재 잔액: 벌린 기간에 상관없이 12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차입금액 • 지난 1년간 차입금액: 앞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난 1년간에 실제로 벌린 총금액
-------	--

회사 경영체, 단체 연구기관 현황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회사 경영체	○	◎	◎	◎				
단체 경영체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 회사 및 단체 생산부문의 사업체(경영체) 경영현황 조사
- 어가경제조사, 어업경영조사, 어업생산통계조사 등 표본틀 제공
- 우리나라 수산통계의 기본지표 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경영조직 • 개인단독 • 공동경영 • 회사경영 • 다른 사람의 어업이나 양식 사업체에 해상에서 어업 종사자로서 고용 살이만 했다	회사별 구분 ① 주식 ② 합자 ③ 합명 ④ 유한	회사별 구분 ① 주식 ② 합자 ③ 합명 ④ 유한	[난외사항의조사대상 구분] 개인어가 회사경영 • 주 식 • 합 자 • 합 명 • 유 한 공동경영체
	회사의 전겸업별 ① 어업 뿐이다 ② 어업이 주업이다 ③ 어업이 부업이다	회사의 전겸업별 ① 어업 뿐이다 ② 어업이 주업이다 ③ 어업이 부업이다	
	기관별 구분 ① 수협 ② 진흥원 ③ 기타	기관별 구분 ① 수협 ② 진흥원 ③ 학교 ④ 기타	단체 또는 연구기관 • 수협 • 진흥원 • 학교 • 기 타
	종사자수 ① 상시고용 (명) ② 임시고용 (명)	종사자수 ① 상시고용 (명) ② 임시고용 (명)	종사자수 ① 상시고용 (명) ② 임시고용 (명)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회사경영체: 정부에 등록된 법인회사로서 조사전 1년간에 실제로 어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의 어업회사
1980년~1990년	• 12월 1일 현재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말하며, 상시고용과 임시고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무직은 제외, 임시고용은 일시적으로 채용하여 일급(일당)을 받는 자 등을 말하며, 상시고용은 사업체에 장기간 계속 고용되고 있는 자(기술자 포함) • 회사경영체: 정부에 등록된 상법상의 법인체로서 조사전 1년간에 실제로 어업을 영위한 회사(주식, 합자, 합명회사 등) • 단체연구기관: 어업을 경영하는 정부 또는 단체로서 지구별, 업종별 수협이나 학교, 수산시험 및 연구기관 등 • 회사경영의 대표자가 회사경영이외에 개인경영한 어업이 있는 경우, 회사경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경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표를 분리하여 조사
1995년	• 난외사항의 조사대상 구분에서 준어가 내에 회사경영체와 단체연구기관으로 구분 • 임시고용은 연간 총 임시고용인수를 조사하여 365일로 나눈 인원수

□ 주요국 사례

일본	[전체 관련 사항] • 어업경영체조사표(개인, 공동경영 조사용)와 별도의 회사, 관공서, 학교, 시험장 조사표 작성 • 조사원 연락전은 조사표 표지 아래 부분에 병기(다음 방문 월/일, 조사원 성명, 전화 번호란) • 기본적으로 전 항목 자체식 원칙 [어업경영 항목] • 어업경영 항목(경영한 어로어업 종류/양식어업 종류, 어업제도, 양식면적 및 규모, 어종사자수, 어업종사일수, 판매금액, 출하치, 어선척수, 동력선보유현황)과 지방 선정어업종류 등은 어업경영체조사와 동일 • 조사기준일 현재 해상작업 종사자수는 생활본거지에 따라 구분(동일시정촌, 기타 현 내, 현 외(외국인))하며, 최성여기의 종사인원은 남여 구분만 조사
----	--

일본	[회사관련 항목] • 본사/사업체 구분란, 회사의 종류(주식, 합자, 합명, 유한) • 조사기준일의 종업원수(본사는 본사만의 종업원수) • 본사/사업체 구분에서 본사인 경우만 나머지 조사표 항목 작성 • 관할 사업체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종업원수(상시고용, 임시고용 및 일일고용) • 자본금규모(100만엔 미만, 100~200, 2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1억엔, 1~10억엔, 10억엔 이상), 주식회사는 지불완료한 자본금, 기타는 출자금) • 어업의 전결업: 전업인 경우는 자회사 현황란만 기입 • 자회사 현황: 사업별로 자회사의 수를 기입하며, 사업종류는 어류, 제조업(수산 가공업, 기타),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 기타(냉장창고업, 기타)로 분류 • 어업이 겸업인 경우: 지난 1년간의 판매금액중 어업이 차지하는 비율 기입(25% 미만, 25~50, 50~75%, 75% 이상), 어업이의 경영사업 종류(제조업: 수산가공업·기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기타: 냉장창고업·기타)와 보유 사업체수, 판매금액 1위 사업부문, 자사용 냉동/냉장(기타품을 취급하지 않는 자사용의 수산물물 보존하는 냉동/냉장 공장) 공장수 기입 • 내수면어업은 내수면어업경영체조사표에서 함께 조사(개인, 회사, 어협, 생산조합, 공동경영, 판공서/학교/시험장으로 구분)
대만	• 조사표는 非獨資漁戶(비개인출자어가)조사표 • 경영조직형태: 공동출자어가, 상사, 회사법인, 어선협회·시험연구기관·학교·기타로 구분 • 개업연도 • 경영주 특성: 성별(남, 여), 현재 연령, 교육정도(문맹, 소학교, 초·중, 고, 대졸 이상) • 조사기준년 주요경영 어업종류: 원양어로, 근해어로, 연안어로, 내륙어로, 해면양식, 내륙양식(鹽)수양식, 담수양식, 레저 및 관광어업, 어업 미경영 • 조사기간중 수산물 판매금액 • 어업 이외 산업 경영항목(바다낚시 등 해상활동, 어업관련 육상활동, 어촌산업 및 문화체험 활동, 어업 교육 및 해설, 음식업, 숙박업, 기타)과(복수선택) 총수입 • 수산물 가공판매 유무와 총수입 • 경영체 기타 영위 산업: 자영농목업, 임업, 농업 및 목축업, 제조 및 유통업, 없음 • 2005년말 종업원: 성별(남, 여), 출신지(대만·펑호·금마, 대륙지구, 기타지구), 육상 및 해상조업(상용, 임시, 일일고용) • 어로작업과 어선설비: 선형(동력선, 무동력선, 뗏목, 어선미사용 및 채포), 동력선 톤수, 주요 어로방식, 관광산업 종사시 어선 사용유무, 채포 어업작업 어선 유무 • 양식형태: 양식면적, 주요 양식품종, 양식방법(지수식, 유수식, 순환식, 담해양식, 가두리 양식, 주요이용목적(단일 어종, 혼합어종, 번식, 휴식, 정수, 미사용), 주요 사용 수원(지하수, 해수, 하천·저수지·댐, 기타) • 양식어업 경영시 어선사용: 동력선, 무동력선, 뗏목 등 어선 척수와 어업이의 목적(어업 휴업) 사용 척수 구분 기입

공동 경영체 현황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 공동경영 생산부문의 사업체(경영체) 경영현황 조사
- 어가경제조사, 어업경영조사, 어업생산통계조사 등 표본틀 제공
- 우리나라 수산통계의 기본지표 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경영조직 • 개인단독 • 공동경영 • 회사경영 • 다른사람의 어업이나 양식사업체에 해상에서 어업종사자로서 고용살이만 했다	공동 경영체 경영상황 • 1종, 2종, 3종, 양식어업, 어선어업별 면허건수, 면적(ha), 가구수(호), 종사자수(명) 조사 수익의 분배 ① 수익이 있었다 ② 수익이 없었다 수익 분배 방법 ① 균등분배 ② 출자비율 ③ 기타 [내수면 어업] • 출자원수, 어업의 구분(어류, 조류, 패류), 수익의 유무, 수익의 분배	공동 경영체 경영상황 • 1종, 2종, 3종, 양식어업, 어선어업별 면허건수, 면적(ha), 가구수(호), 종사자수(명) 조사 수익의 유무 ① 수익이 있었다 ② 수익이 없었다 수익 분배 ① 균등분배 ② 출자비율 ③ 기타 내수면 어업] • 출자원수, 어업의 구분(어류, 조류, 패류), 수익의 유무, 수익의 분배	공동 경영체 경영상황 • 공동어업, 구획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별 면허건수, 면적(ha), 가구수, 종사자수 조사 [내수면 어업] • 출자원수, 어업의 구분(어로어업, 양식어업)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	• 가구원 사항을 제외한 해당 어업총조사 항목은 모두 기입 • 두 사람 이상이 어선, 어망 등 중요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하고 경영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고 조업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어획물을 일괄 판매하여 그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경영(단, 어선어업과 김, 굴, 백합양식에 한한다)
1980년~1995년	• 한 개의 공동사업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업종의 면허건수와 시설면적, 가구수, 종사자수를 기입 • 단순히 명의만을 공동으로 하거나 중요 생산수단이나 조업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어업을 경영하더라도 실제로 있어서는 1인(가구)에 의하여 운영관리되는 어업사업체는 공동경영체가 아니므로 개인경영체로서 조사(1995년)

□ 주요국 사례

일본	• 세대원 사항을 제외한 해당 어업총조사 항목은 모두 기입 • 공동경영에 출자 종사란 2인 이상(법인 포함)이 어선 등의 주요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어업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 및 현물을 출자하고 해상, 육상에 관계없이 그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출자금 규모: 출자금 없음 또는 현물출자만, 10만엔 미만, 10~30만엔, 30~50만엔, 50~100만엔, 100~200만엔, 200~500만엔, 500~1,000만엔, 1,000~3,000만엔, 3,000만엔 이상 • 출자자의 인원수(현물출자자도 포함) • 어선 및 어망의 소유형태(주된 것 하나만 기표): 공유, 물건가지고 출자, 차입, 기타 • 수익 유무 및 분배: 수익(있었다, 없었다), 분배(하였다, 하지 않았다), 분배방법(평등, 출자자수, 기타)
----	---

□ 참고 사항

○ 공동 경영체의 구성원(가구)에 대한 조사

- 공동 경영체의 구성원(가구)이 공동경영에 참여하여 연간 30일 이상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경영의 어업활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을 개인경영체로서 조사
- 명의나 출자만을 공동으로 하고 어업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거나, 어업활동에 참여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자기경영을 포함하여 연간 30일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인경영체로서 조사하지 않음
- 공동경영체 구성원이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어업활동 이외에 별도로 자기어업을 경영한 경우는 두 가지 모두 조사

어항 시설

□ 조사 실시년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의 기본 생산구조 현황파악과 개선 등 수산행정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80년	1990년	1995년
어항명 어항종별 • 제1종 어항 • 제2종 어항 • 제3종 어항 • 소규모항 어항시설 • 시설명(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호안, 기타) • 개소 • 시설규모(m)	어항명 어항종별 • 제1종 어항 • 제2종 어항 • 제3종 어항 • 소규모항 어항시설 • 시설명(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호안, 기타) • 개소 • 시설규모(m)	어항명 어항종별 • 제1종 어항 • 제2종 어항 • 제3종 어항 • 소규모항 어항시설 • 시설명(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호안, 기타) • 개소 • 시설규모(m)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1995년	• 물양장: 선박을 접안해서 어획물을 양육하는 곳 • 선착장: 작은 포구에서 방파제겸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곳 • 호안: 해안선 보호를 위한 축대
-------------	---

□ 국제 권고안

1963년	FAO 12차 로마 총회 결의안: 어항, 방파제, 냉장장치와 이와 관련하여 건설될 가공 공장들에 대한 기획(설계)과 위치선정 문제
-------	--

□ 참고 사항

○ 어항종별 관리항

- 1종 어항(수산청장 관리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서 지방어선수가 60척 이상,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 이상이고,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서 연간 어획량이 500톤 이상인 곳
- 2종 어항(시도지사 관리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으로서 지방 어선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 이상인 곳
- 3종 어항(수산청장 관리항) :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서 인근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간 1,000척 이상의 외래어선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 소규모 어항(내무부 관리항) : 군소 소규모항으로 어촌 새마을사업 등으로 축조된 어항

수산물 유통 및 보급 시설

□ 조사 실시년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의 기본 생산시설 현황파악과 개선 등 수산행정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80년	1990년	1995년
가. 단체 및 기관 유통시설(평) • 위판장 • 공판장 • 도매시장 • 직매장 제빙냉동 • 동결(T/D) • 냉장(M/T) • 제빙(T/D) • 저빙(M/T) 보급시설 • 급유(탱크, 빠지, 급유선)(D/M) • 급수시설(M/T) • 공동창고(평) 나. 개인소유 급유시설 • 탱크, 빠지, 급유선(D/M)	가. 단체 및 기관 유통시설(평) • 위판장 • 공판장 • 도매시장 • 직매장 제빙 냉동 • 동결(T/D) • 냉장(M/T) • 제빙(T/D) • 저빙(M/T) 보급시설 • 급유(탱크, 빠지, 급유선 기타)(D/M) • 급수시설(M/T) • 공동창고(평) • 연쇄점(평) 나. 개인소유 급유시설 • 탱크, 빠지, 급유선, 기타(D/M)	유통시설(㎡) • 위판장 • 공판장 • 도매시장 • 직매장 보급시설 • 급유(탱크, 빠지, 급유선 기타)(D/M) • 급수시설(M/T) • 공동창고(㎡) • 연쇄점(㎡) 냉동, 냉장시설 • 냉동(T/D) • 냉장(M/T) • 제빙(T/D) • 저빙(M/T) • 냉동·냉장시설별 개수, 생산능력, 시설면적, 연간가동일수, 용도 (유통 보급, 제조 가공) 조사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1995년	• 유통시설, 제빙 및 냉동시설, 보급시설을 단체 및 기관과 개인소유로 구분조사 개인은 급유시설만 조사 (1980년 ~ 1990년) • 유통시설: 수협(지구별 및 업종별) 또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수산물 유통시설로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직매장으로 구분하여 개소수와 시설규모를 기입 • 보급시설은 개인 및 수협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 조사 • 급유시설: 어선에 공급되는 보급시설로서 탱크, 빠지, 급유선, 기타(유조차 등)로 구분하여 시설된 개(대)수와 시설규모를 기입 • 급수시설: 어선에 공급되는 급수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가 또, 시설 규모(톤수)는 얼마나 되는가를 기입 • 공동창고: 수산제품 및 어구류 보관창고의 개소수와 시설규모 • 연쇄점: 수협에서 운영하는 연쇄점 수와 연쇄점 면적 • 수산물 유통보급 또는 제조가공시설: 허가 및 신고업종 대상체 중에서 원료 또는 가공품 부패방지와 선도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냉동, 냉장시설(1995년) 1평= 3.3058㎡
--------------------	--

□ 주요국 사례

일본	• 2003 어업센서스 유통가공조사는 수산물유통기관 조사표1(어시장), 조사표2(도매업자용), 조사표3(수산물 매수인용)으로 구성 [수산물유통기관 조사표1] • 시장 종류: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기타(중앙도매시장은 위생관리시설, 폐기물 재생 이용, 거래 후 전산처리 부분만 조사) • 시장개설자: 지방공공단체, 어업협동조합, 어업연합회, 회사, 개인 • 어획물을 육지에 내리거나, 반입 어획물을 도매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매장 면적 • 조사기준일 현재 어장에 소속하는 수산물도매업자와 수산물매수인수 • 지난 1년간 개장한 일수 • 지난 1년간 어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수량(기타 어업지역에서의 반입량 및 수입품 포함) 및 금액, 활어는 별도 구분 조사 • 활어조(육상에 상설한 에어레이션 등에 의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의 유무 • 안전, 품질확보를 위해 도입한 위생관리시설(일반위생관리 등 식품의 품질 및 위생관리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정비된 시설로서 화장실 설비, 장화소독조, 선별기, 투근해수장치 등)의 투자금액(과거 5년간 총액)
-----------	---

일본	• 폐기물 재생이용 방안: 어류 등의 잔재와 어상을 시장에서 재생처리, 재생처리업자에 인도, 폐기처리업자에 인도로 구분 ※ 어류 등의 잔재: 선별, 처리단계에서 배출된 잡어, 고기 내장, 폐곡 및 양식의 폐사 어 등 어상: 개장, 출하 등에 사용한 발포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의 화학약품을 재료로 만든 것 • 거래후 전산처리(입력): 시황정보 입력, 정산업무 입력, 결제업무 입력, 전부 수집계 [수산물유통기관 조사표2] • 경영조직(어업협동조합, 어협연합회, 회사, 개인, 기타) • 조사기준일 현재 성별 종업원수 • 지난 1년간의 취급 물량(기타 어업지역에서의 반입량과 수입량 포함)과 금액 [수산물유통기관 조사표3] • 수산물의 취급액이 가장 많은 형태: 타 어시장이나 도매업자에 출하, 도매, 소매(점포 있음, 점포 없음), 개인, 기타 • 조사기준일 현재 성별 종업원수 • 지난 1년간 수산물 취급금액 [2003년 어업센서스 유통가공조사중 냉동·냉장, 수산가공장 조사표] • 수산물 도매업자가 직접 기입 • 사업체의 형태: 개인, 회사, 조합(수산업협동조합, 기타), 기타 • 지난 1년간 경영한 사업: 냉동/냉장창고업, 수산가공업, 어업양식업,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 기타로 구분하고 주로 하는 사업 별도 기입 • 조사기준일 현재 종업원수를 상용과 임시/일일고용으로 구분하고 성별로 재구분 • 위생관리시설에의 투자금액(과거 5년간 총액) • 냉동/냉장고의 용도: 영업용과 자가용 • 지난 1년간의 냉동/냉장고 이용자와 주된 이용자: 기탁품(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수산 회사, 도매업자, 매수인, 가공업자, 기타), 자영품 • 냉동/냉장고의 능력: 제빙능력, 냉장능력, 냉동능력 (단위: 톤) □ 2008년 • 2008 어업센서스 유통 가공조사는 어시장 조사(매장면적, 수산물 중개업자수,매수인 수, 수산물 거래 수량 및 금액, 수산물의 품질·위생 관리를 위한 장비 파악)와 냉동·냉장 ,수산가공장 조사(사업종류, 종사자수,냉동냉장공장의 용도, 농수산 가공장의 생산량 및 판매금액, 원재료 국산품 비율 등)로 세분
----	---

□ 참고 사항

○ 2008년 일본 어업센서스 유통가공조사 용어 및 사업구분

- 어시장 : 지난 1년 동안 어선에 의하여 수산물의 직접 어획고가 있는 시장 및 어선의 직접 어획고가 없어도 육송에 의한 생산지로부터 수산물의 반입을 받아 제 1단계의 매매를 한 시장

- 도매업자 : 당해 어시장에서 지난 1년 동안 출하업자로부터 도매를 위한 수산물 판매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매수하여 당해 어시장에서 도매업무를 한 자
- 수산물매수인 : 당해 어시장에서 지난 1년간 수산물 도매업자로부터 매수한 수산물을 판매한 법인 또는 개인(매매 참가인 포함)
- 냉동·냉장, 수산가공장 조사표의 사업구분
 - ① 냉장창고업만을 10마력 이상의 제빙, 냉장, 냉동시설로 하고 있는 사업체 (자가영업용 포함)
 - ② 냉장창고업 중 신선수산물, 동결사업을 10마력 이상의 냉동시설로 하고 있는 사업체(자가영업용 포함)
 - ③ 냉장창고업 중 신선수산물, 동결사업을 10마력 미만의 냉동시설로 하고 있는 사업체(자가영업용 포함)
 - ④ 수산가공을 하고 제빙, 냉동, 냉장시설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소유의 냉동, 냉장고가 10마력 미만의 사업체
 - ⑤ 수산가공을 하고 소유의 제빙, 냉동, 냉장시설이 10마력 이상의 사업체

수산물 제조 및 가공 시설

□ 조사 실시년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의 기본 생산시설 현황파악과 개선 등 수산행정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80년	1990년	1995년
가. 경영상황 경영조직 • 개인, 회사, 단체 및 기관, 기타 허가업종 및 신고업종 나. 생산능력 • 냉동업: 동결(T/D), 냉장(M/T), 제빙(T/D), 저빙(M/T) • 냉동이의 업종(T/D) 다. 연간 가동일수 및 자금회전 수 • 연간 가동일수(일) • 연간 가동 적정일수(일) • 연간 자금 회전수(회) 라. 시설 현황 • 총부지 면적(평) • 작업장 면적(평) • 총시설비(만원) 마. 종업원 실태 • 사무직, 기술(기능)직, • 상시고용 생산직, 임시고용 생산직	가. 경영상황 경영조직 • 개인, 회사, 단체 및 기관, 기타 나. 종업원 실태 • 사무직, 기술(기능)직, • 상시고용 생산직, 임시고용 생산직 다. 총부지 면적 라. 생산능력 • 허가업종 냉동냉장업(동결, 냉장, 제빙, 저빙 어간유, 한천 • 신고업종 패류껍질제거업, 수산피혁제조업, 얼구운김가공업, 해조류간이제조 업, 선상제품제조업 • 기타업종 어육연제품제조업, 절임식품제조 업, 통조림제조업, 건포류제조업, 수산 식품가공업	가. 종업원 실태 • 사무직, 기술(기능)직 • 상시고용 생산직, 임시고용 생산직 나. 총부지 면적 다. 생산능력 • 허가업종 어육간유제조업, 한천제조업 • 신고업종 패류껍질제거업, 수산피혁제조업, 얼구운김가공업, 해조류간이제조 업, 선상제품제조업 • 기타업종 어육연제품제조업, 절임식품제조 업, 통조림제조업, 건포류제조업, 수산 식품가공업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1995년	• 수산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체별로 개인 또는 단체(조합)기관명을 기입 • 조사대상업체의 조사항목별 생산능력을 톤수로 기입 • 기술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급한 기술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사의 자격 소지자 • 단체기관에서 수산물 유통 및 보급시설의 제빙, 냉동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수산 제조가공시설에서도 제빙, 냉동시설을 조사(1990년)
-------------	---

□ 주요국 사례

일본	[2003년 어업센서스 유통가공조사 중 냉동·냉장, 수산가공장 조사표] • 지난 1년간 생산한 수산가공품의 종류와 주된 가공종류 • 지난 1년간 수산가공품을 제조한 총일수 • 지난 1년간 판매한 수산가공품 총액 • 원재료의 구입처: 국산품(시장 도매업자, 중간 도매업자, 가공업자, 자가 생산물, 어업자, 기타), 수입품(무역상사, 시장 도매업자, 중간 도매업자, 가공업자, 자사 수입, 기타) • 수입품의 구입처 비율 • 수산가공품의 출하처: 어협의 시장 또는 출하장소, 어협이외의 도매시장,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소매업자, 외식산업 및 급식업자 등, 직매소, 자가판매, 기타 • 어류 등 잔재의 재생이용 방법: 공장에서 재생처리, 재생처리 업자에 인도, 폐기 처리 업자에 인도 [2008년 어업센서스 유통가공조사 중 냉동·냉장, 수산가공장 조사표] • 지난 1년간 사업종류와 그중 소득이 가장 많았던 종류(냉장 창고업, 수산가공업,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중개업, 수산물 소매업, 기타) • 상사 종사자 수(남녀,외국인 구분) 및 기타 종사자 수 파악 • 국산 원재료 공급업체 • 냉동냉장공장(용도, 이용자, 저장 및 동결 능력 등) • 수산가공장(생산량, 판매금액, 원재료 국산품 비율 등)
----	--

□ 참고 사항

[1980년]

○ 허가업종

- 냉동업: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제조
- 통조림: 용기속에 식용품을 넣은 후 밀봉, 살균, 탈지시킨 것
- 어간유: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 간유를 제조
- 한천: 조류 등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을 제조
- 고래처리업: 고래류를 해체하는 업

○ 신고업종

- 소건품: 생것을 그냥 또는 세척 후 패류는 탈각후 건조시킨 것
- 염건품: 소금물에 적시거나 소금을 뿌린 후 건조시킨 것
- 자건품: 찌거나 삶은 후 건조시킨 것(자숙, 압축, 탈지 후 건조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것 포함)
- 염신품: 젓갈 생산을 목적으로 소금에 절인 것
- 염장품: 장기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에 절인 것
- 연제품: 어육을 갈아 조미료를 넣고 찌거나 삶거나 굽던가 해서 가열 응고시킨 것으로 어육 종류와 어육 소세지 등을 포함
- 조미가공품: 가공처리에 있어 간장, 설탕, 된장 등의 조미료를 넣어 맛을 낸 후 알맞게 하여 건조하거나 또는 구운 것
- 어분: 사료 또는 비료에 이용할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
- 훈제품: 주로 참나무 장작 연기를 쏘여 구운 제품(굴제품 등)
- 해조제품: 해조류를 세척, 건조, 가공한 것
- 기타: 위의 수산동식물의 제조업 이외의 것

[1990년 ~ 1995년]

○ 허가 업종

-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제조하거나 냉장하는 업

- 어간유: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 간유를 제조하는 업
- 한천: 조류 등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한천을 제조하는 업

○ 신고 업종

- 패류 껍질제거업: 패류의 껍질을 제거하는 일
- 수산 피혁제조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제조
- 열구운 김가공업: 마른 김을 열풍 등에 의하여 건조
- 해조류 간이제조업: 해조류를 원료로 하여 비식용제품을 제조
- 선상 제품가공업: 선상 수산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을 육상에서 절단, 채육, 선별하거나 포장

○ 기타 업종: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업종

- 어육 연제품제조업: 어육 등을 주원료로 하여 어묵 기타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맛살, 어육소세지, 생선묵 등)
- 절임식품제조업: 수산물을 소금, 간장, 설탕 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젓갈류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멸치젓, 조개젓, 창란젓 등 젓갈류)
- 통조림제조업: 수산물을 빈통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근 및 부패세균을 가열, 살균처리 하여 내용 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는 일
- 건포류제조업: 어육 또는 조갯살을 원형을 변형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조미포, 훈제품 등)
- 수산식품가공업: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 ① 임가공업: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식품을 가공하여 주는 영업
 - ② 단순가공업: 수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서로 혼합(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 제외) 또는 조미식품 등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동일 건물내에서 식품소분업과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당해업소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
 - ③ 원료식품가공업: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 다만, 다른 종류의 영업 제품과 원료가 같고 제조공정이 유사하거나 그 제조공정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
 - ④ 기타 식품가공업: 기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복어채, 오징어채, 조미김 등)

어업 임금 종사자 가구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임금종사자가구의 현황파악 및 관련 정책수요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90년	1995년
조사대상의 구분 • 개인, 공동, 회사, 어업고용자 가구원 사항 (개인경영가구에 고용자가구를 포함하여 조사)	난외사항의 조사대상구분에서 • 어업피고용자가구를 별도 구분하고, 조사표는 해수면과 동일 조사표 사용	기본항목 •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인구 특성 항목 • 교육정도, 혼인상태 어업관련 항목 • 어업 종사기간 • 주 종사 어업종류: 어로어업, 양식어업 • 고용 사업체명(직접 기재) • 주 종사한 일의 종류(직접 기재) • 어업이의 종사기간, 주 종사분야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70년~1990년	• 어업고용자가구도 개인경영가구와 동일한 조사표로 조사(표본 추출율 10%) • 1980년은 총조사에서는 제외하고, 어업기본통계조사에서 표본으로 조사 • 1990년 조사에서 어업임금종사자가구를 처음으로 전수조사 • 어업피고용자가구: 타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월급을 받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1990년)
2005년	• 직접 자기어업을 경영하지 않고 어가나 어업사업체에 고용되어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은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주요국 사례

일본	[전체 관련 사항] • 어업경영체 조사표, 회사/관공서/학교/시험장 조사표와 별도 어업종사자세대 조사표 작성 • 조사원연락전은 조사표 표지 아래부분에 병기(다음 방문 월/일, 조사원 성명, 전화번호란) • 세대원에 관하여 항목은 자체식 원칙 [세대원 항목] • 성명, 만 14세 이하 세대원 수, 만 연령, 성별, 세대의 경제적 중심자, 금년 3월 졸업자, 지난 1년간 직업상황(어업종사, 어업 관련 산업종사, 기타 직업, 직업 미종사) • 어업종사형태(어업고용: 육상작업 포함, 공동경영 출자 종사: 육상작업 포함), 어업이외 종사형태(어업관련 시설종사: 상용, 임시 및 일일고용, 기타: 상용, 임시 및 일일고용) • 주종사분야: 자영어업(육상작업 포함), 자영농업(경영경지 10a 이상 또는 판매액 15만엔 이상), 연간 15만엔 이상의 매상있는 기타 자영업(수산물공업, 유어 안내업, 여관/민박업, 기타) • 지난 1년간 종사한 일종 주된일(종사일수가 가장 긴 일) • 어업경영/공동경영과 그 이외의 일을 한 사람에 대해(어업경영 또는 공동경영이 주, 기 타가 주) •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어업고용 또는 공동경영에 출자종사와 자영어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은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과 육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구분 •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은 해상작업 종사일수, 종사일수 최장인 어업종류(10톤 이상은 별도 조사) 조사
----	---

5. 경영주 특성

경영주 경력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업경영·기술의 숙련도, 계속성 파악
- 어업에의 신규 진출 어가 파악
- 유능한 어업경영인 확보 및 양성정책 자료

□ 조사표 내용

2005년	2010년
경영주께서 어업에 종사한 경력은 몇 년입니까?	경영주의 가구원 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주가 어업에 종사한 경력(세는 나이 16세 이후)은 각각 몇 년입니까?
	종사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 경영 동기 ²¹⁾ 는 각각 무엇입니까? · 2005년 12월 1일 이후 신규 경영한 경우에만 기입 ① 가구원 간 경영주 승계 ② 다른 산업에서 직업 전환 ③ 다른 산업과 농업 및 임업을 겸업 경영 ④ 기타(기존 농가와 임가에서 분가 등)
2015년	
경영주가 어업에 종사한 경력(세는 나이 16세 이후)은 몇 년입니까? · 연도별로 어업에 1개월 이상 종사한(경영주 또는 주업인 경우) 총 햇수를 기입	
5년 전인 2010년 12월 1일에 어업에 종사 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년 전(2010년 12월 1일)에는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 하였습니까? ① 농 림 업 ② 제 조 업 ③ 건 설 업 ④ 도·소매업 ⑤ 숙박·음식점 ⑥ 기타산업 ⑦ 종사하지 않았음	
5년 전(2010년 12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④ 북한 또는 외국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21) 신규 진입 어가(최근 5년)의 창업 동기 파악을 위해 2010년 신설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05년	• 경영주가 어업에 종사한 총 햇수 기입
2010년	• 경영 동기는 종사경력이 5년 이하(2007년 7월 1일 이후 신규 경영)인 경우에만 조사
2015년	• 종사한 경력은 세는나이 16세 이후부터 계산 • 경영주가 어업에 종사한 총 햇수 기입

□ 참고 사항

- 일찍부터 어업에 종사한 경우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음
 - “평생했다”, “학교졸업하고 계속했다”로 응답
 - 구간으로 조사하는 방법 검토
- “경영주와의 관계”를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와의 관계”로 연계할 경우 경영주가 누구인지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영주 종사경력(경영주가 어업에 종사한 총 햇수를 기입)
 - 세는 나이 16세 이후 경영주로서 또는 주업(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은 제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전체 햇수를 합산하여 기입
- 경영 동기 유형
 - 가구원간 경영주 승계 : 가구원간에 경영주가 변경된 경우
 - 다른 산업에서 직업 전환 : 어업 이외 산업에만 종사하던 가구가 어업으로 직업을 바꾼 경우
 - 다른 산업과 어업을 겸업 경영 :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어업도 겸하여 경영하게 된 경우
 - 기타 : 기타 사유로 새로 어업 경영주가 된 경우

[기존 어가에서 분가, 비경제활동 상태(학업, 무직, 가사 등)에서 어업 경영 시작 등]

5년 전 어업 경영 여부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귀어 가구 파악
- 종사기간 5년 이하 경영동기에 귀어 보완

□ 조사표 내용

2015년
5년 전인 2010년 12월 1일에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5년 전(2010년 12월 1일)에는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 하였습니까? ① 농 림 업 ② 제 조 업 ③ 건 설 업 ④ 도 · 소매업 ⑤ 숙박 · 음식점 ⑥ 기타산업 ⑦ 종사하지 않았음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15	• 경영주가 5년 전에 농업에 종사하였는지를 조사
------	-----------------------------

5년 전 거주지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귀촌 가구 파악

□ 조사표 내용

2015년
5년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④ 북한 또는 외국 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하는 시·도와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적어 주십시오.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시도행정코드 시군구행정코드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15	•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 당시의 행정구역 명칭이 현재와 다른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적음 • 실제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구역명만 변경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조사
------	---

6. 가구 사항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 조사 실시년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정보화(컴퓨터 보유) 현황	○	○	○	○	○
- 컴퓨터 활용		○	○	○	○
- 컴퓨터 활용-용도		○	○	○	○
- PC통신 등 사용여부		○			
- 홈페이지 개설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의 기본적인 정보화 기반 자료
- 어업경영의 합리화, 정보화 실태
- 수산종합정보화체계 및 어촌정보인프라 확충
- 어촌 학령인구의 교육여건 개선자료
- 어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어촌구축

□ 조사표 내용

1995년	2000년	2005년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 현황에서 개인용 컴퓨터 (PC) 조사	2000년 12월 1일 현재 컴퓨터를 보유 하고 있습니까? • 이용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 한 경우만 해당 ① 보유 ② 미보유	2005년 12월 1일 현재 컴퓨터를 보유 하고 있습니까? • 이용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 한 경우만 해당 ① 보유 ② 미보유
	어업에 조금이라도 컴퓨터를 활용 하셨습니까? ① 활용 ② 미활용	어업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컴퓨터 를 활용하셨습니까? ① 활용 ② 미활용

1995년	2000년	2005년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습니까? ① 어업정보 수집 ② 전자상거래 ③ 시설 자동화 ④ 어업 경영관리 ⑤ 기타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습니까? • 해당되는 것 모두 ○표 ① 어업정보 수집 ② 수산물 판매 ③ 기타 어업에 활용
	어업과 관련하여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였습니까? ① 사용 ② 미사용	어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까? ① 홈페이지 개설 ② 홈페이지 미개설
	어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개설 하였습니까? ① 개설 ② 미개설	
2010년	2015년	
2010년 12월 1일 현재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15년 12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기기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컴퓨터 ② 스마트폰 ③ 기타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활용하였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① 어업 관련 정보 수집 ② 수산물 판매 ③ 어업 관련 관광 사업(낚시·민박 안내 등) ④ 기타 어업에 활용(시설 자동화, 경영 관리 등)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였습니까? •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u>① 예</u> ② 아니오 ↓	
		컴퓨터 스마트폰
	수 산 물 판 매 (전 자 상 거래)	
	어촌관광사업(낚시, 민박안내 등)	
	어업경영(시설자동화, 경영관리 등)	
	어 업 관 련 정 보 수 집	
	기 타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95년	•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현황에서 개인용 컴퓨터(PC) 조사
2000년~2010년	• 이용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한 경우에 「보유」로 조사 • 고장난 컴퓨터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미보유에 해당(2000년) • 컴퓨터를 주로 자녀가 사용하더라도 어업을 위해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 • 어업과 관련하여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는지 모두 조사 - 어업정보수집 : 수산물 가격, 출하정보, 날씨, 어업기술 정보 등을 수집 - 수산물 판매 : 수산물 쇼펍물을 개설하여 판매 - 기타 어업에 활용 : 자동화시설, 어업경영관리 등 - 시설자동화 : 양식장 등에 온도 및 습도, 일조량 등을 조절하는데 활용(2000년) - 어업경영관리 : 회계관리, 경영분석 등에 활용(2000년) - 어촌 관련 관광사업 : 낚시 안내업, 민박 안내 등 어촌관광을 위한 홍보 및 예약 등
2015년	• 정보화 기기를 주로 자녀가 사용하더라도 어업을 위해 조금이라도 사용하였으면 기입 • 어업 관련 정보 수집 : 수산물 가격·출하 정보, 날씨·어업기술 정보 등을 수집

교통수단 보유(생활 여건)

□ 조사 실시년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생활여건	○	⊗	⊗	⊗	⊗		⊗
- 생활시설 이용					⊗		
- 자동차 보유	○	⊗	⊗	⊗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의 생활시설 인프라 현황 분석 및 정책수요 파악
- 지역별 생활시설 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
- 수산상품의 자가 수송능력 파악 및 어업경영 규모 파악
- 도시와 어촌교류 활성화 및 어촌정주 유도정책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촌, 어항 개발정책 자료

□ 조사표 내용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생활환경 - 문화용품 및 기타 • 자동차(화물) • 자동차(승용) 조사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 - 댁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승용차 • 운반용 트럭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 - 댁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승용차 • 운반용 트럭
2000년	2005년	2010년	
차량이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것 모두에 ○표) ① 승용 · 승합차 ② 화물차(트럭 등) ③ 없 음	평소 댁에서 다음 시설을 이용할 때 이동 수단과 소요시간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병·의원별 조사 • 걸어서, 자동차, 기타 중 택일(단위: 분) 2005년 12월 1일 현재 어떤 자동차를 보 유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 ① 승용차(10인승 이하) ② 승합차(11인승 이상) ③ 화물 및 기타 ④ 없 음	2010년 12월 1일 현재 어떤 자동차 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표) ① 승용차(10인승 이하) ② 승합차(11인승 이상) ③ 화물 자동차 ④ 기타자동차 ⑤ 오토바이 ⑥ 없음(자전거, 경운기, 건설용 중장비 포함)	

2015년
2015년 12월 1일 현재 교통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 표 · 유아용 자전거 등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외 ① 승용차(10인승 이하) ② 승합차(11인승 이상) ③ 화물·특수 자동차 ④ 오토바이(4륜 포함) ⑤ 자전거 ⑥ 없음(경운기, 건설용 중장비 포함)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1995년	·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에서 승용차와 운반용 트럭 조사
2000년~2005년	·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병·의원을 가구원중 주로 이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조사 · 이동수단은 생활시설별로 주된 것 하나만 표하며, 버스도 자동차로 조사 · 소요시간은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생활시설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분단위로 기입 · 조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모두 조사
2010년	·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항목 삭제 · 오토바이(이륜 자동차)도 자동차로 분류하며, 버스는 (특수형) 승합차로 분류

난방시설 / 주거시설 형태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주거시설		○	⊗	⊗	⊗	◆	◆	⊗
- 부엌					⊗	◆	◆	⊗
- 화장실					⊗	◆	◆	⊗
- 목욕시설						◆	◆	⊗
- 수도시설		○	⊗	⊗	⊗	◆	◆	⊗
- 난방시설			⊗	⊗	⊗	◆	◆	⊗
- 전기시설		○						
- 전화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지표
- 보건복지 및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자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어촌 생활환경 개선 용자지원 대상 파악

□ 조사표 내용

1980년	1990년	1995년
생활환경 • 시설 ① 전기 ② 상수도 ③ 전화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현황 • 난방연료 ① 연탄 ② 가스 ③ 유류 ④ 기타 • 전화 • 수도 ① 상수도 ② 간이상수도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현황 • 보일러시설 ① 연탄 ② 가스 ③ 유류 • 수도 ① 상수도 ② 간이상수도
2000년		
부엌은 입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① 입식 ② 재래식 ③ 없음		
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③ 없음		
상수도시설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상수도 ② 간이상수도 ③ 자가상수도 ④ 없음		
난방연료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① 가스(LPG, LNG) ② 유류 ③ 연탄 ④ 땀갈 등 임산연료 ⑤ 기타()		

2005년	2010년
이 가구의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은 어떤 형태입니까? •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③ 없음 • 수도 ① 상수도 ② 마을상수도 ③ 자가수도 ④ 없음 •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③ 없음 • 목욕시설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이 가구의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은 어떤 형태입니까? •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③ 없음 • 수도 ① 상수도 ② 마을상수도 ③ 자가(전용)수도 ④ 없음 •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③ 없음 • 목욕시설 ① 온수시설 ② 비온수시설 ③ 없음
이 가구의 난방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보일러 ④ 기름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⑦ 연탄보일러 ⑧ 연탄아궁이 ⑨ 재래식아궁이 ⑩ 기타()	이 가구의 난방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보일러 ④ 기름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⑦ 연탄보일러 ⑧ 연탄아궁이 ⑨ 재래식아궁이 ⑩ 기타()
2015년	
이 가구의 주거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부엌 - ① 현대식(입식) ☐ 이며 ☐ ① 단독사용 ② 재래식 ☐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화장실 - ① 수세식 ☐ 이며 ☐ ① 단독사용 ② 재래식 ☐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목욕시설(욕조, 샤워기 등) - ① 있음 이며 ☐ ① 단독사용 ② 없음 ☐ ② 공동사용 • 수도시설 - ① 상수도 ②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③ 전용상수도(자가수도) ④ 없음 • 온수시설 - ① 있음 ② 없음	
이 가구의 난방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보일러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연탄 아궁이 ⑨ 재래식 아궁이 ⑩ 기타()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	•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현황에서 보일러시설 및 수도시설, 전화 보유 조사
1990년~1995년	•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현황에서 보일러시설 및 수도시설 조사
2000년~2005년	• 사용하는 난방연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는 주된 것 기준(2000년) • 사용하는 난방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는 겨울철에 주로 사용하는 것 기준 • 사용하는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의 형태를 조사 • 부엌의 입식은 조리시설, 싱크대 등의 시설을 갖춘 부엌 • 상수도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여 주고 수도요금을 받는 수도시설(2000년) • 수도의 마을상수도는 마을 단위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수도를 말하며, 지하수, 우물, 샘물을 모터로 연결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으로 분류 • 화장실의 수세식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버리는 경우 • 목욕시설의 온수시설은 온수로 샤워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2010년	• 인구주택총조사와 공통 조사항목으로 조사하지 않고 전산연계
2015년	• 인구주택총조사와 전산연계 안하며 다시 조사함

거처 형태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어촌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어촌 주택보급률 파악,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신·개축 용자금 지원 정책자료

□ 조사표 내용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	거처는 어떤 형태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주택 이외의 거처	이 집은 어떤 종류의 건물입니까?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⑥ 주택 이외의 거처	이 집은 어떤 종류의 건물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⑥ 주택 이외의 거처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00년~2005년	•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되고, 영업겸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많은 영업겸용 주택도 포함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영업겸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사람이 살되,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보다 적은 경우 • 주택이외의 거처는 콘테이너,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천막집 등이 해당
2010년	• 인구주택총조사와 공통 조사항목으로 다시 조사하지 않고 전산연계

건축 년도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 각종 어촌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주택 노후도 파악 및 주택 신·개축 용자금 지원 정책자료

□ 조사표 내용

2000년	2005년	2010년
이 거처는 언제 지어졌습니까? • 신축시기 또는 연면적의 절반 이상 증·개축한 시기 ① 1995년 이후 ② 1990~1994년 ③ 1980~1989년 ④ 1970~1979년 ⑤ 1969년 이전	이 집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① 2005년 ② 2004년 ③ 2003년 ④ 2002년 ⑤ 2001년 ⑥ 2000년 ⑦ 1995~1999 ⑧ 1990~1994 ⑨ 1985~1989 ⑩ 1980~1984 ⑪ 1970~1979 ⑫ 1960~1969 ⑬ 1959년 이전	이 집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① 2010년 ② 2009년 ③ 2008년 ④ 2007년 ⑤ 2006년 ⑥ 2005년 ⑦ 2000~2004 ⑧ 1995~1999 ⑨ 1990~1994 ⑩ 1980~1989 ⑪ 1970~1979 ⑫ 1960~1969 ⑬ 1959년 이전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2000년~2005년	• 거처의 신축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 총면적의 절반이상을 증·개축한 경우에는 증·개축 시기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2010년	• 인구주택총조사와 공통 조사항목으로 다시 조사하지 않고 전산연계

문화용품 및 가재 보유 현황

□ 조사 실시년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	◎	◎				

□ 조사목적 및 이용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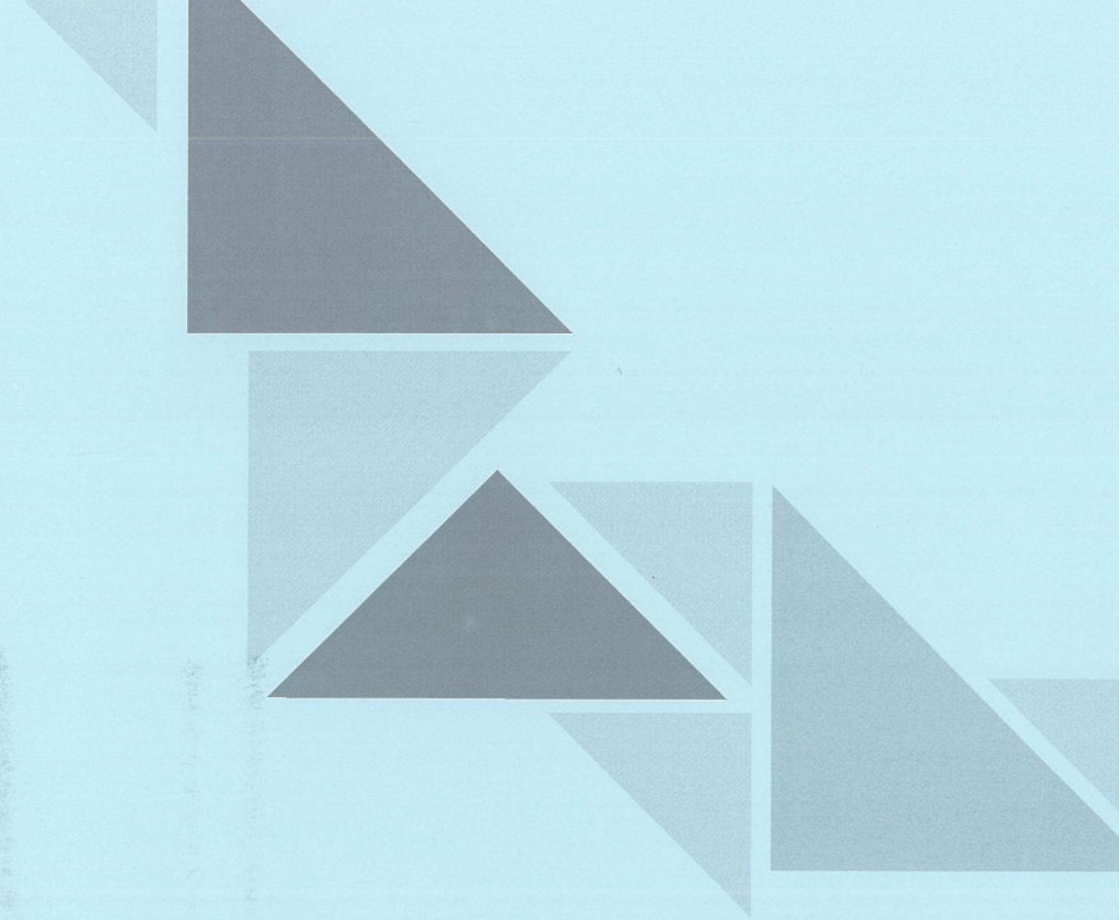
- 각종 문화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조사표 내용

1980년	1990년	1995년
생활환경 • 조사항목 : 전기, 상수도, 전화, TV, 라디오, 신문, 오토바이, 자전거, 시계, 냉장고, 재봉틀, 자동차(화물), 자동차(승용)	택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조사항목 : 신문, 전화, 에어컨, 피아노, 비디오, 텔레비전(흑백, 컬러), 오디오, 냉장고, 카메라, 세탁기, 가스렌지, 오토바이, 승용차, 운반용 트럭, 난방연료(연탄, 가스, 유류, 기타), 수도(상수도, 간이상수도)	택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및 가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조사항목 : 신문, 에어컨, 피아노, 비디오, 오디오, 전자렌지, 진공 청소기, 싱크대, 컴퓨터, 팩스, 승용차, 운반용 트럭, 오토바이, 보일러 시설(연탄, 가스, 유류), 수도시설(상수도, 간이상수도)

□ 항목 개념 및 조사지침

1980년~1995년	•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에서 주거시설(수도, 보일러시설)도 조사
-------------	--



부록

해수면 어가 조사표 _ 155

내수면 어가 조사표 _ 163

2013년 일본 해면어업조사

어업경영체 조사표 _ 171

2013년 일본 내면어업조사

어업경영체 조사표 _ 181

미국 2013년 양식업 센서스 _ 188



2015 Census 농림어업총조사

함께해요



해수면 어가 조사표

- 이 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 3」에 의하여 실시되며,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비밀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됩니다.

2015년 12월 1일 현재, 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해수면 어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4. 12. 1.~2015. 11. 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14. 12. 1.~2015. 11. 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15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해수면 어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원양어업만 경영하는 가구
- 직접 어업 경영을 하지 않고 어업 임금 종사자만 있는 가구
- 어촌계에 가입을 하고 있으나, 직접 어업 경영을 하지 않고 유통업이나 가공업에만 종사하는 가구
- 강, 저수지, 댐 · 호수 등지에서 내수면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내수면 어가 조사표에 작성함.

* 가구원 수

2015년 12월 1일 현재, 이 가구에서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합 계 남 자 여 자

		명			명			명
----------------------	----------------------	---	----------------------	----------------------	---	----------------------	----------------------	---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행 정 리 	해수면 어가 일련번호
조사구 번호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조사표 부수 총 부 중 부	가구주 성명

홈페이지: www.afccensus.go.kr

문의전화(무료): 080-300-2015

통계청
STATISTICS KOREA

I. 가구원에 관한 사항

가 구 원	①번 가구원	②번 가구원	③번 가구원
1 성명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성별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경영주와의 관계 이분은 경영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 경영주 ② 배우자 ③ 자녀 및 그 배우자 ④ 부모 ⑤ 손자, 손녀 및 그 배우자 ⑥ 조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친척·인척 ⑨ 어업 고용인 등			
4 나 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집에서 지내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① 11월 30일(음력 10월 19일) 이전 ② 12월 1일(음력 10월 20일) 이후	세	세	세
5 교육 정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 세는나이 (「국 나이」항목 기준) 16세부터 모두 응답합니다.[□항~□항]

6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상태를 적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7 어업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종사하지 않았음 → 9 항 ② 1개월 미만 ③ 1~2개월 미만 ④ 2~3개월 미만 ⑤ 3~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8 어업 종사 형태 B-1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B-2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선어업 ② 맨손어업 ③ 나잠어업 ④ 양식어업 ⑤ 기타어업			
9 어업 외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 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함. · 주부, 학생 등이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조사함.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10 주 종사 분야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업 ② 낚시·양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매업·소매업 ⑦ 숙박업·음식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가 구 원		④번 가구원	⑤번 가구원	⑥번 가구원
1 성명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성별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경영주와의 관계 이분은 경영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 경영주 ② 배우자 ③ 자녀 및 그 배우자 ④ 부모 ⑤ 손자, 손녀 및 그 배우자 ⑥ 조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친척·인척 ⑨ 어업 고용인 등				
4 나 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집에서 지내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① 11월 30일(음력 10월 19일) 이전 ② 12월 1일(음력 10월 20일) 이후		세	세	세
5 교육 정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	-	-
↓ 세는나이 (「국 나이」항목 기준) 16세부터 모두 응답합니다.[□항~□항]				
6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가족관계등록부(표적)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상태를 적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7 어업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종사하지 않았음 → ⑧ 항 ② 1개월 미만 ③ 1~2개월 미만 ④ 2~3개월 미만 ⑤ 3~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8 어업 종사 형태 8-1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8-2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선어업 ② 맨손어업 ③ 낚시어업 ④ 양식어업 ⑤ 기타어업				
9 어업 외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 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함. • 주부, 학생 등이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조사함.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10 주 종사 분야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업 ② 낚시·알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매업·소매업 ⑦ 숙박업·음식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II 어업에 관한 사항

가 어선 현황

11 보유 어선

2015년 12월 1일 현재,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자기 소유라도 남에게 빌려준 어선은 제외하고 임차한 어선은 포함함.

예



아니요 → 12 어로어업

(단위: 척)

어선 합계		동력선		무동력선	
십	일	십	일	십	일

12 어선 현황

위 (11항)의 어선 현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어선의 어법은 별지 「해수면 어법 종류 및 부호표」를 참고하여 적음.
- 어선의 제질은 외관에 따라 강선(강철제, 알루미늄제), 목선(목제), 강화 플라스틱제(FRP)선으로 구분함.
- (11항)의 보유 어선이 7척 이상이면 2부 중 2부에 작성함.

어선 명칭	동력 유무		어법		톤수(G/T)				어선 제질			연간 출어 일수(일)			평균 승선 인원(명)		
	동력	무동력	어법명	부호	백	십	일	단위 미만	강선	목선	FRP선	백	십	일	백	십	일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합 계

나 어로어업

지난 1년간 어로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요 → ☐ 양식어업


13 어법 종류

지난 1년간 사용한 어법 중 어획량이 많았던 순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연안복합어업: 손꼽치어업, 패류미끼망어업, 패류껍질어업, 문어단지어업, 낚시어업(주낙·외줄낚시, 채낚기)
- 기타정지성구획어업: 지인망, 선인망, 걸망, 부망, 해선망, 안강망, 건강망, 호망, 승망, 장망

어법 종류		어획량 순위		
근 해 어 업	외 끝 이 대 형 저 인 망	①	②	③
	쌍 끝 이 대 형 저 인 망	①	②	③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①	②	③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	①	②	③
	서남해구방끝이중형저인망	①	②	③
	대 형 트 를	①	②	③
	동 해 구 중 형 트 를	①	②	③
	대 형 선 망	①	②	③
	소 형 선 망	①	②	③
	근 해 채 낚 기	①	②	③
	기 선 권 현 망	①	②	③
	근 해 자 망	①	②	③
	근 해 안 강 망	①	②	③
	근 해 봉 수 망	①	②	③
	근 해 자 리 돌 들 망	①	②	③
	잡 수 기	①	②	③
	근 해 장 어 통 발	①	②	③
	근 해 통 발	①	②	③
	근 해 문 어 단 지	①	②	③
	근 해 형 망	①	②	③
연 안 어 업	근 해 연 승	①	②	③
	연 안 선 망	①	②	③
	연 안 자 망	①	②	③
	연 안 개 랑 안 강 망	①	②	③
	연 안 통 발	①	②	③
	연 안 들 망	①	②	③
	연 안 조 망	①	②	③
	연 안 선 인 망	①	②	③
구 획 어 업	연 안 복 합 어업	①	②	③
	주 목 망	①	②	③
	각 망	①	②	③
	장 망	①	②	③
	기타정지성구획어업	①	②	③
	패 류 형 망	①	②	③
	새우조망, 싹벌징어인망	①	②	③
	정 치 망	①	②	③
정 맨 나 기	손 어 업	①	②	③
	잡 어 업	①	②	③
	타 어 업	①	②	③

14 어획 품종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획 품종 5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어획 품종 부호는 별지 7해수면 어획 및 양식 품종별 부호표를 참고하여 적음.

순위	어획 품종	부 호
1		
2		
3		
4		
5		

다 양식어업

지난 1년간 양식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요 → ☐ 양식


15 양식 품종

2015년 12월 1일 현재, 경영한 양식 품종별로 양식 방법과 면적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식 어획량이 많은 순으로 적고, 일정한 양식장도 포함함.
- 양식 품종 부호와 양식 방법은 해당하는 부호를 적음.
- 양식 품종이 6종 이상이면 2부 중 2부에 작성함.

순위	양 식 품 종	부 호	양식 방법	면 적 (h a)		
				백	십	단위 미만
1						
2						
3						
4						
5						
합 계						

■ 양식 방법 부호

양식 방법	부호	양식 방법	부호	양식 방법	부호
가 두 리 식	51	수 조 식	54	축 제 식	57
부 류 식	52	연 승 식	55	투 석 식	58
살 포 식	53	지 주 식	56	기 타	59

라 어업 경영

16 판매 금액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총판매 금액과 그 중 양식 판매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판매 금액은 순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한 총금액을 조사함.
- 총판매 금액과 양식 판매 금액에 모두 ●로 표시함.

	판매 없음	120 만원 미만	120 300 만원 미만	300 500 만원 미만	500 1천 만원 미만	1천 2천 만원 미만	2천 3천 만원 미만	3천 5천 만원 미만	5천 1억 만원 미만	1억 2억 만원 미만	2억 5억 만원 미만	5 억원 이상
총판매 금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양식 판매 금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7 경영 형태

지난 1년간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경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 판매 금액이 없으면 종사 기간이 길었던 경영 형태에 ●로 표시함.
- ① 어로어업과 ② 양식어업 중 1곳에 ●로 표시하고, 세부 형태(③ 보유 어선 사용 ~ ⑤ 종묘)에도 반드시 ●로 표시함.

① 어로어업	☐ ③ 보유 어선 사용 ☐ ④ 남의 어선 사용 ☐ ⑤ 어선을 사용하지 않음
② 양식어업	☐ ⑥ 어류 ☐ ⑦ 갑각류 ☐ ⑧ 패류 ☐ ⑨ 기타 수산 동물류 ☐ ⑩ 해조류 ☐ ⑪ 종묘

18 판매처

지난 1년간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 음식점은 어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함.

① 수협(공판장·위판장)	② 도매시장	③ 수집장
④ 음식점	⑤ 수산물 가공업체	⑥ 양식장
⑦ 소비자 직접 판매	⑧ 수산물 소매상	⑨ 어가
⑩ 기타	⑪ 판매 없음 → ⑫ 항	

19 판매 형태

지난 1년간 판매한 수산물을 어떤 형태로 팔았는지 품종별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판매한 품종별로 해당하는 주된 판매 형태에 ●로 표시함.
- 활어: 활어조 등을 사용하여 살아 있는 상태로 판매함.
- 선어(선산물): 임장, 건조 등을 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판매함.

품종	판매 형태	활어	선어 (선산물)	건제품	기타 가공품
어	류	①	②	③	④
갑	각	①	②	③	④
패	류	①	②	③	④
연	체	①	②	③	④
기타 수산	동물류	①	②	③	④
해	조	①	②	③	④
중	묘	①			

20 생산자 조직 참여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활동한 생산자 조직은 무엇입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① 업종별 수협	② 지구별 수협	③ 영어조합 법인
④ 일반회사 법인	⑤ 어촌제	⑥ 기타(협회 등)
⑦ 참여 안 함		

21 어업 관련 사업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였습니다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 마을 공동 사업 및 생산자 조직 참여 사업도 포함함.

① 수산물 직판장
② 수산물 직거래
③ 식당 경영
④ 수산물 가공업
⑤ 어촌 관광 사업(민박 경영 등)
⑥ 낚시 안내업
⑦ 하지 않았음

22 어업 고용

지난 1년간 어업 경영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 고용인별로 해당하는 고용 기간에 모두 ●로 표시하고,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내국인, 외국인별 고용인 수를 적음.

예	아니요 → 항					
↓	(단위: 명)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①	②	③	④			
	↓	↓	↓			
고용인 수	십	일	십	일	십	일
내국인	남자					
	여자					
외국인	남자					
	여자					

23 전체 및 결업

지난 1년간 전체 수입에서 어업 수입과 어업 외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 (③항)의 어업 외 총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원이 있으면 ④ 또는 ⑤에 ●로 표시함.

① 어업 수입만
② 어업 수입이 더 많음
③ 어업 외 수입이 더 많음

마 경영주 특성

24 경영주 경력

경영주는 어업에 몇 년간 종사하였습니까?

- 종사한 경력은 세는 나이 16세 이후부터 계산함.
- 연간 어업에 1개월 이상 종사한(경영주 또는 주업인 경우) 총 햇수를 적음.

		년
--	--	---

25 5년 전 어업 경영 여부

5년 전(2010년 12월 1일)에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1. 예 → 23항

2. 아니요



5년 전(2010년 12월 1일)에는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였습니까?

- | | | |
|-------------|-------------|-------|
| ① 농림업 | ② 제조업 | ③ 건설업 |
| ④ 도매업 · 소매업 | ⑤ 숙박업 · 음식점 | |
| ⑥ 기타 산업 | ⑦ 종사하지 않았음 | |

26 5년 전 거주지

5년 전(2010년 12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집
- ② 같은 시 · 군 · 구내 다른 집
- ③ 다른 시 · 군 · 구
- ④ 북한 또는 외국

다른 시 · 군 · 구일 때는 해당하는 시 · 도와 시 · 군 · 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적어 주십시오.

	특별시 ·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바 가구 사항

27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27-1 2015년 12월 1일 현재, 보유한 정보화 기기에 모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컴퓨터 ② 스마트폰 ③ 기타 ④ 없음 → 23항

27-2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였습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1. 예 2. 아니요 → 23항

정보화 기기 활용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수산물 판매(전자 상거래 등)	①	②	③
어촌 관광 사업(뉴스 민박 안내 등)	①	②	③
어업 경영(시설 자동화, 경영 관리 등)	①	②	③
어업 관련 정보 수집	①	②	③
기타	①	②	③

28 교통수단 보유

2015년 12월 1일 현재, 교통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함. 예: 유아용 자전거

- ① 승용차(10인승 이하) ② 승합차(11인승 이상)
- ③ 화물차 · 특수자동차 ④ 오토바이(4륜 포함)
- ⑤ 자전거 ⑥ 기타(경운기, 건설용 중장비 등) ⑦ 없음

29 난방시설

이 가구의 난방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 ④ 기름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 ⑥ 전기보일러 ⑦ 연탄보일러 ⑧ 화목보일러
- ⑨ 연탄아궁이 ⑩ 제래식 아궁이 ⑪ 기타(없음 포함)

30 주거시설 형태

이 가구의 주거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부엌 - ① 현대식(임식) ② 제래식 ③ 없음 이때 - ④ 단독 사용 ⑤ 공동 사용
- 화장실 - ① 수세식 ② 제래식 ③ 없음 이때 - ④ 단독 사용 ⑤ 공동 사용
- 목욕시설(욕조, 샤워기 등) - ① 있음 ② 없음 이때 - ④ 단독 사용 ⑤ 공동 사용
- 수도시설 - ① 상수도 ② 마을 상수도(간이 상수도) ③ 전용 상수도(사택 등 자정시설에 공급되는 차가 수도) ④ 없음
- 온수시설 - ① 있음 ② 없음



승인(합의)번호
제10141호

2015 Census 농림어업총조사

함께해요



내수면 어가 조사표

- 이 조사는 「통계법 제5조의 3」에 의하여 실시되며, 「제3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비밀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됩니다.

2015년 12월 1일 현재, 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내수면 어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4. 12. 1.~2015. 11. 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14. 12. 1.~2015. 11. 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15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내수면 어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직접 어업 경영을 하지 않고 어업 임금 종사자만 있는 가구
- 내수면에서 낚시터만 경영하는 가구
- 근해와 연안 바다에서 해수면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해수면 어가 조사표에 작성함.

* 가구원 수

2015년 12월 1일 현재, 이 가구에서 실제로 같이 사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합 계	남 자	여 자
명	명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리 	내수면 어가 일련번호
조사구 번호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조사표 부수 총 부 중 부	가구주 성명

홈페이지: www.alfcensus.go.kr

문의전화(무료): 080-300-2015

통계청
STATISTICS KOREA

I 가구에 관한 사항

가 구 원	①번 가구원	②번 가구원	③번 가구원
1 성명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성별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경영주와의 관계 이분은 경영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 경영주 ② 배우자 ③ 자녀 및 그 배우자 ④ 부모 ⑤ 손자, 손녀 및 그 배우자 ⑥ 조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친척·인척 ⑨ 어업 고용인 등			
4 나 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집에서 지내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① 11월 30일(음력 10월 19일) 이전 ② 12월 1일(음력 10월 20일) 이후	세	세	세
5 교육 정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았음(비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① 졸업·수료 ② 재학·휴학 ③ 중퇴 }			
↓ 세는나이 (『표 나이』항목 기준) 16세부터 모두 응답합니다. [□항~□항]			
6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상태를 적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7 어업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2개월 미만 ④ 2~3개월 미만 ⑤ 3~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8 어업 종사 형태 8-1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8-2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기타어업			
9 어업 외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 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함. · 주부, 학생 등이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조사함.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10 주 종사 분야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업 ② 낚시·안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매업·소매업 ⑦ 숙박업·음식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가 구 원	④번 가구원	⑤번 가구원	⑥번 가구원
1 성명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성별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경영주와의 관계 이분은 경영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 경영주 ② 배우자 ③ 자녀 및 그 배우자 ④ 부모 ⑤ 손자, 손녀 및 그 배우자 ⑥ 조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친척·인척 ⑨ 어업 고용인 등			
4 나 이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집에서 지내는 생일은 언제입니까? ① 11월 30일(음력 10월 19일) 이전 ② 12월 1일(음력 10월 20일) 이후	세	세	세
5 교육 정도 정규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 세는나이 (「국 나이」항목 기준) 16세부터 모두 응답합니다.[⑥항~⑩항]			
6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상태를 적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7 어업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① 종사하지 않았음 → ③ 항 ② 1개월 미만 ③ 1~2개월 미만 ④ 2~3개월 미만 ⑤ 3~6개월 미만 ⑥ 6개월 이상			
8 어업 종사 형태 8-1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어업에 종사 ② 남의 어업에 종사 ③ 자기 어업을 하면서 남의 어업에도 종사			
8-2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어업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기타어업			
9 어업 외 종사 기간 지난 1년간 어업 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기간을 조사함. • 주부, 학생 등이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서 조사함. ① 종사하지 않았음 ② 1개월 미만 ③ 1~3개월 미만 ④ 3~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			
10 주 종사 분야 지난 1년간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였습니까? ① 어업 ② 낚시 안내업 ③ 농업 ④ 제조업 ⑤ 건설업 ⑥ 도매업·소매업 ⑦ 숙박업·음식업 ⑧ 기타 산업 ⑨ 종사하지 않았음			

II 어업에 관한 사항

가 어선 현황

11 보유 어선

2015년 12월 1일 현재, 어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자기 소유라도 남에게 빌려준 어선은 제외하고 임차한 어선은 포함함.

① 예 ② 아니요 → ③ 어로어업

↓

(단위: 척)

어선 합계		동력선		무동력선	
십	일	십	일	십	일

12 어선 현황

위 (11항)의 어선 현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어선의 어법은 별지 「내수면 어법 종류 및 부호표」를 참고하여 적음.
- 어선의 재질은 외판에 따라 강선(강철제, 알루미늄제), 목선(목제), 강화 플라스틱제(FRP)선으로 구분함.
- (11항)의 보유 어선이 7척 이상이면 2부 중 2부에 작성함.

어선 명칭	동력 유무		어법		톤수(G/T)				어선 재질			연간 출어 일수(일)			평균 승선 인원(명)		
	동력	무동력	어법명	부호	백	십	일	단위 미만	강선	목선	FRP선	백	십	일	백	십	일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합 계

나 어로어업

지난 1년간 어로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 16 양식어업

13 어법 종류

지난 1년간 사용한 어법 중 어획량이 많았던 순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내수면 낚시터 운영은 내수면 어가에 해당하지 않음.

어법 종류	어획량 순위		
자 망 어 업	①	②	③
연 승 어 업	①	②	③
낭 장 망 어 업	①	②	③
각 망 어 업	①	②	③
정 치 망 어 업	①	②	③
종 모 채 포 어 업	①	②	③
패 류 채 취 어 업	①	②	③
공 동 어 업	①	②	③
기 타 어 업	①	②	③

14 어획 품종

지난 1년간 어획량이 많았던 어획 품종 7가지와 주된 어획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어획 품종 부호는 별지 「내수면 어획 및 양식 품종별 부호표」를 참고하여 적음.

순위	어획 품종	품종 부호	어획 장소 부호
1			
2			
3			
4			
5			
6			
7			

■ 어획 장소 부호

어획 장소	부호	어획 장소	부호
강	1	저 수 지	3
담 · 호수	2	기 타	4

다 양식어업

지난 1년간 양식어업을 경영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 16 항

15 양식 품종

2015년 12월 1일 현재, 경영한 양식 품종별로 양식 방법과 면적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양식 어획량이 많은 순으로 적고, 임차한 양식장도 포함함.
- 양식 품종 부호와 양식 방법은 해당하는 부호를 적음.
- 양식 품종이 11종 이상이면 2부 중 2부에 작성함.

순위	양 품	식 종	부 호	양식 방법	면 적 (㎡)			
					만	천	백	십 일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양식 방법 부호

양식 방법	부호	양식 방법	부호	양식 방법	부호
가 두 리 식	51	유 수 식	53	기 타	55
순환 여과식	52	지 수 식	54		

라 어업 경영

16 판매 금액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총판매 금액과 그 중 양식 판매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판매 금액은 순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한 총금액을 조사함.
- 총판매 금액과 양식 판매 금액에 모두 ●로 표시함.

	판매 없음	120 만원 미만	120 ~ 300 만원 미만	300 ~ 500 만원 미만	500 ~ 1천 만원 미만	1천 ~ 2천 만원 미만	2천 ~ 3천 만원 미만	3천 ~ 5천 만원 미만	5천 ~ 1억 만원 미만	1억 ~ 2억 만원 미만	2억 ~ 5억 만원 미만	5억 이상
총판매 금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양식 판매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7 경영 형태

지난 1년간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경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 판매 금액이 없으면 종사 기간이 길었던 경영 형태에 ●로 표시함.
- ③ 양식어업인 경우에는 양식 품종(① 어류~④ 기타 수산 동식물)에도 반드시 ●로 표시함.

① 어로어업

② 양식어업

- ③ 어류
- ④ 갑각류
- ⑤ 패류
- ⑥ 기타 수산 동식물

18 판매처

지난 1년간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 음식점은 어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함.

- ① 도매시장
- ② 수집장
- ③ 음식점
- ④ 양식장
- ⑤ 소비자 직접 판매
- ⑥ 수산물 소매상
- ⑦ 기타
- ⑧ 판매 없음 → 20 항

19 판매 형태

지난 1년간 판매한 수산물을 어떤 형태로 팔았는지 품종별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판매한 품종별로 해당하는 주된 판매 형태에 ●로 표시함.
- 활어: 활어조 등을 사용하여 살아 있는 상태로 판매함.
- 선어(신선품): 열장, 건조 등을 하지 않고 죽은 상태로 판매함.

품종	판매 형태	활어	선어 (신선품)	건제품	기타 가공품
어	류	①	②	③	④
갑	각	류	①	②	③
패	류	①	②	③	④
기타 수산 동식물		①	②	③	④
종	모	①			

20 생산자 조직 참여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활동한 생산자 조직은 무엇입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 ① 수협
- ② 영어조합 법인
- ③ 일반회사 법인
- ④ 내수면 어업계(어촌계)
- ⑤ 기타(협회 등)
- ⑥ 참여 안 함

21 어업 관련 사업

지난 1년간 어업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였습니까?

-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로 표시함.
- 마을 공동 사업 및 생산자 조직 참여 사업도 포함함.

- ① 수산물 직판장
- ② 수산물 직거래
- ③ 식당 경영
- ④ 수산물 가공업
- ⑤ 낚시 안내업
- ⑥ 하지 않았음

22 어업 고용

지난 1년간 어업 경영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 고용인별로 해당하는 고용 기간에 모두 ●로 표시하고,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내국인, 외국인별 고용인 수를 적음.

① 예

② 아니요 → 23 항

↓

(단위: 명)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①	②	③	④

↓

↓

↓

고용인 수		십	일	십	일	십	일
내국인	남자						
	여자						
외국인	남자						
	여자						

23 전업 및 겸업

지난 1년간 전체 수입에서 어업 수입과 어업 외 수입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 (③항)의 어업 외 종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원이 있으면 ② 또는 ③에 ●로 표시함.

- ① 어업 수입전업
- ② 어업 수입이 더 많음
- ③ 어업 외 수입이 더 많음

2015 Census 농림어업총조사

내수면 어가 조사표



◆ 가구 응답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한 횟수를 적고, 조사표가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도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가구 방문 횟수: 회

• 조사표 불완전 작성 ☐ ① 장기 부재
☐ ② 조사 불응

◆ 조사 대상 가구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응답자 성명			

연 락 가 능 한 전 화 번 호											
				-					-		

※ 전화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원 성명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 계 청 장

2013년 일본 해면어업조사 어업경영체 조사표

【개인경영 응답 항목】

I 가구원

1. 7월 1일 기준 모든 세대원

		전체 가구원			
		14세 이하 가구원			
701	남				
702	여				

2. 세대의 전업·겸업

(1) 과거 1년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어업전업	겸업	
		어업을 주로 함	다른 업을 주로 함
711	①	②	③

(2) (1)의 ②, ③ 선택자만 다음 항목 선택

	자영업				임금노동
	수산물공업	민박	놀잇배어업	기타	
712	①	①	①	①	①

(3) 민박·놀잇배어업의 연간 이용자 수

		만	천	백	십	(명)
민 박	713	:	:	:	:	:
놀잇배어업	714	:	:	:	:	:

3. 자가 어업의 후계자 유무

○ 해당 번호 선택

		유	무
721		①	②

4. 어업 종사 세대원 사항

○ 지난 1년간 15세 이상 어업 종사 세대원 사항 기입

[illegible]

⑪	자가어업 외 자영업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⑫	공동경영어업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⑬	어업임금종사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⑭	어업외임금종사		번호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⑮	최장종사사업**		번호	:	:	:	:	:	:	:	:
⑯	최장종사구분	자가어업	O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다른사업	표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 친족번호

01: 경영주 02: 경영주의 배우자 03: 자녀(15세이상) 04: 자녀의 배우자
 05: 경영주의 부모 06: 경영주의 배우자의 부모 07: 형제자매 08: 조부모
 09: 손자(15세이상) 10: 손자의 배우자 11: 기타

** 최장종사사업

1: 자가어업 2: 자가어업 이외 자영업 3: 공동경영어업 4: 어업임금종사 5: 어업 외 임금종사

【회사 응답 항목】

II 사업소의 개요

1. 본소·지소의 구분과 회사의 종류

	본소·지소의 구분			회사의 종류	
	단독 사업소	본소·본사	지소·지사	주식	기타
801	①	②	③	①	②

2. 7월 1일 현재 종업자수(人)

○ 어업과 어업의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 모두 기입

802	:	:	:	:
-----	---	---	---	---

【공동경영 응답 항목】

III 공동경영에 관한 사항

1. 출자금

	출자금 없 이 현물출 자로만	10만엔 미만	10만~	30만~	50만~	100만~	200만~	500만~	1000만~	3000만 엔이상
83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출자제공인력

출자금을 출자한 인원과 현물을 출자한 사람의 합계 인원

832	:	:	:	:	(人)
-----	---	---	---	---	-----

【해당하는 경영체는 모두 응답】

Ⅳ 어업 종사자

1. 해상 작업 종사자 수

(1) 7월 1일 현재 해상작업 종사자수

201	계 ① + ②		:	:	:	:
202	일본인 ①		:	:	:	:
203	거주지	동 일 시 정 촌	:	:	:	:
204		기 타 현 내	:	:	:	:
205		현 외	:	:	:	:
206		같은 집에 사는 신규취업자		:	:	:
207	외국인②		:	:	:	:

(2) 일본인 ① 중에 과거 1년간 30일 이상 해상작업하는 종사자 수

		해상작업종사자						같은 집에 주거 또는 동일시정촌 거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11	계	:	:	:	:	:	:	:	:	:	:	:	:
212	15~19세	:	:	:	:	:	:	:	:	:	:	:	:
213	20~24세	:	:	:	:	:	:	:	:	:	:	:	:
214	25~29세	:	:	:	:	:	:	:	:	:	:	:	:
215	30~34세	:	:	:	:	:	:	:	:	:	:	:	:
216	35~39세	:	:	:	:	:	:	:	:	:	:	:	:
217	40~44세	:	:	:	:	:	:	:	:	:	:	:	:
218	45~49세	:	:	:	:	:	:	:	:	:	:	:	:
219	50~54세	:	:	:	:	:	:	:	:	:	:	:	:
220	55~59세	:	:	:	:	:	:	:	:	:	:	:	:
221	60~64세	:	:	:	:	:	:	:	:	:	:	:	:
222	65~69세	:	:	:	:	:	:	:	:	:	:	:	:
223	70~74세	:	:	:	:	:	:	:	:	:	:	:	:
224	75세 이상	:	:	:	:	:	:	:	:	:	:	:	:

2. 육상 작업 종사자 수

○ 성어기의 육상작업 종사자 수

231	계	:	:	:	:
232	남	:	:	:	:
233	여	:	:	:	:

V 어선

1. 과거 1년간 어업에 사용한 어선

○ 사용한 어선 종류 (복수선택)

	동력어선	선외기부어선	무동력어선
301	①	①	①

2. 무동력어선과 선외기부어선

○ 무동력어선 • 선외기부어선 보유 척수

302	무동력어선	:	:
303	선외기부어선	:	:

3. 동력어선

	①							②		③			④		
	과거 1년간 사용한 동력어선									7월 1일 현재 보유중인 동력어선					
	총 톤수							7월 1일 현재 보유 유무		과거 1년간 출어일수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어업종류		
								보유	미보유						
	(톤수)							해 당 하는 곳에 O표		(일)			전국어업종류 번호 기입		
401	:	:	:	:	:	.	:	①	②	:	:	:	:	:	:
402	:	:	:	:	:	.	:	①	②	:	:	:	:	:	:
403	:	:	:	:	:	.	:	①	②	:	:	:	:	:	:
404	:	:	:	:	:	.	:	①	②	:	:	:	:	:	:
405	:	:	:	:	:	.	:	①	②	:	:	:	:	:	:
406	:	:	:	:	:	.	:	①	②	:	:	:	:	:	:
407	:	:	:	:	:	.	:	①	②	:	:	:	:	:	:
408	:	:	:	:	:	.	:	①	②	:	:	:	:	:	:
409	:	:	:	:	:	.	:	①	②	:	:	:	:	:	:
410	:	:	:	:	:	.	:	①	②	:	:	:	:	:	:

VI 어업경영

1. 과거 1년간 경영한 모든 항목과 그 중,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경영 항목

【망어업】				【스트레칭로프, 낚시, 기타어업】				【해면양식(종묘양식포함)】			
		종사 하는 경영 에 표	매 장 은 영 표			종사 하는 경영 에 표	매 장 은 영 표			종사 하는 경영 에 표	매 장 은 영 표
101	저인망	원양저인망	①	120	스트레칭로프	원양삼치어구	①	136	어업양식	은연어양식	①
102		어서저인망	①	121		근해삼치어구	①	137		방어양식	①
103		외곽저인망	①	122		연안삼치어구	①	138		참돔양식	①
104		쌍끌이저인망	①	123		기타삼치어구	①	139		넙치양식	①
105		소형저인망	①	124		원양가짜오납시	①	140		참치류양식	①
106	선인망		①	125	낚시	근해가짜오납시	①	141	기타어류양식		①
107	선망	가다랭이 • 참치원 양1선망	①	126		연안가짜오납시	①	142	가리비양식		①
108		가다랭이 • 참치원 해1선망	①	127		원양오징어낚시	①	143	굴류양식		①
109		1선망	①	128		근해오징어낚시	①	144	기타조개류양식		①
110		2선망	①	129		연안오징어낚시	①	145	보리새우양식		①
111	중소형선망		①	130	잠수기어업	인망낚시	①	146	명게류양식		①
112	자망	연어송어유지망	①	131		기타낚시	①	147	기타수산동물양식		①
113		새치등유지망	①	132		소형포경	①	148	다시마류양식		①
114		기타자망	①	133				149	미역류양식		①
115		꽁치붕수망	①	134		채패 • 채조	①	150	김류양식		①
116	대형정치망		①	135	기타어업		①	151	기타해조류양식		①
117	연어정치망		①					152	진주양식		①
118	소형정치망		①					153	진주모조개양식		①
119	기타망어업		①								

2. 지방선정어업종류

○ 과거 1년간 시행한 지방선정어업종류 기입

* 지방선정어업: 도도 부현별로 독자적으로 어업을 독자적으로 세분화한 것

지방선정 어업종류				O표
종류명	번 호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3. 해면양식업

○ 7월 1일 현재 양식현황

(1) 어류양식

		양식장 시설면적 (㎡)								사용면적 (㎡)							
어류양식합계	511	:	:	:	:	:	:	:	:	:	:	:	:	:	:	:	:
방어류	512	:	:	:	:	:	:	:	:	:	:	:	:	:	:	:	:
참돔	513	:	:	:	:	:	:	:	:	:	:	:	:	:	:	:	:
넙치	514	:	:	:	:	:	:	:	:	:	:	:	:	:	:	:	:
육상수조	515	:	:	:	:	:	:	:	:								
참치류	516	:	:	:	:	:	:	:	:	:	:	:	:	:	:	:	:

(2) 가리비 양식

▷ 멧목수하식, 간이수하식

양식 대수 (대)	521	:	:	:	:	:
1대의 평균면적 (㎡)	522	:	:	:	:	:

▷ 연승

○ 간줄의 길이

	만	천	백	십	(m)
523	:	:	:	:	:

(3) 굴류 양식

▷ 양식 대수와 1대의 평균면적

양식 대수 (대)	531	:	:	:	:	:	:	:
1대의 평균면적 (m ²)	532	:	:	:	:	:	:	:

▷ 외줄낚시 어구

○ 간줄의 길이

			만	천	백	십	(m)
533	:	:	:	:	:	:	:

▷ 육지로 말아올리는 식, 나무가지 세우기 식

○ 양식장 면적

		만	천	백	십	(m ²)
534	:	:	:	:	:	:

(4) 미역류 양식

○ 간줄의 길이

		만	천	백	십	(m)
541	:	:	:	:	:	:

(5) 김류 양식

○ 양식장 면적

		만	천	백	십	(m ²)
551	:	:	:	:	:	:

(6) 진주 양식

○ 뗏목 대수

		만	천	백	십	(대)
561	:	:	:	:	:	:

(7) 진주모조개 양식

○ 뗏목 대수

		만	천	백	십	(대)
571	:	:	:	:	:	:

4. 과거 1년간 어획물 및 수확물의 판매금액

		판매 없음	100 만엔 미만	100 만 }	300 만 }	500 만 }	800 만 }	1,000 만 }	1,500 만 }	2,000 만 }	5,000 만 }	1억 }	2억 }	5억 }	10억 엔 이상
총판매금액	58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해면양식	58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5. 판매장소

		어협 · 출하매 매장소	어협외 도매시장	유통업자 · 가공업자	소매 업자	생협	직매소	자가 판매	기타
591	출하장소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592	판매 금액 많은 곳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본소·본사 및 단독사업소만 응답】

Ⅶ 지소·지사 모두 합친 회사 규모

1. 지소·지사의 종사자수

			만	천	백	십	(명)
803	계	:	:	:	:	:	:
804	상시종사자	:	:	:	:	:	:
805	기타	:	:	:	:	:	:

2. 자본금

	100만엔 미만	100만~	200만~	500만~	1000만~	3000만~	5000만~	1억~	10억엔 이상
80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어업 전업·겸업

(1) 과거 1년간 어업만 경영한 경우 2번, 어업외 다른 사업도 경영한 경우 1번

	겸 업	전 업
807	①	②

(2) 과거 1년간 전체 사업에서 겸업의 비중

	25% 미만	23~	50~	75%이상
808	①	②	③	④

(3) 사업소의 수와 판매수입이 가장 많은 사업

			사업소 수		판매수입이 가장 많은 사업
811	제 조 업	수산물가공업	:	:	①
812		기 타	:	:	②
813	포장, 마케팅, 식품업		:	:	③
814	서 비 스 업		:	:	④
815	기 타	냉장창고업	:	:	⑤
816		기 타	:	:	⑥

(4) 자사용의 냉동·냉장 공장수

817	:	:
-----	---	---

4. 사업별 자회사 수

821	어 업		:	:
822	제 조 업	수 산 가 공 업	:	:
823		기 타	:	:
824	포장, 마케팅, 식품업		:	:
825	서 비 스 업		:	:
826	기 타	냉장창고업	:	:
827		기 타	:	:

2013년 일본 내면어업조사 어업경영체 조사표

【개인경영 응답 항목】

I 가구원

1. 7월 1일 기준 모든 세대원

		전체 가구원			
		14세이하 가구원			
701	남				
702	여				

2. 세대의 전업·겸업

(1) 과거 1년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

	어업전업	겸업	
		어업을 주로함	다른 업을 주로함
711	①	②	③

(2) (1)의 ②, ③ 선택자만 다음 항목 선택

	자영업	임금노동
712	①	①

(3) 민박 · 놀잇배어업의 연간 이용자 수

		만	천	백	십	(명)
민박	713	:	:	:	:	:

3. 자가 어업의 후계자 유무

○ 해당 번호 선택

	유	무
721	①	②

4. 어업 종사 세대원 사항

○ 지난 1년간 15세 이상 어업 종사 세대원 사항 기입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어업 종사 세대원									
①	경영주와의 관계*		0	1	:	:	:	:	:	:	:	:
②	平世 24년 7월 1일 현재 나이	15~19세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20~24세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25~29세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30~34세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35~39세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40~44세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45~49세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50~54세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55~59세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60~64세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⑩	
		65~69세	⑪	⑪	⑪	⑪	⑪	⑪	⑪	⑪	⑪	
		70~74세	⑫	⑫	⑫	⑫	⑫	⑫	⑫	⑫	⑫	
		75세 이상	⑬	⑬	⑬	⑬	⑬	⑬	⑬	⑬	⑬	
③	남녀별	남자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여자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④	자가호소작업	O표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⑤			육상작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⑥			자가양식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⑦	과거 1년간 사업	내수면 자가호소작업 양식업 작업일수	(일)	:	:	:	:	:	:	:	:	
⑧		자가어업외 자영업	해당 하는 곳에 O 표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⑨		공동경영어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⑩		어업임금종사		①	①	①	①	①	①			
⑪		어업외임금종사		①	①	①	①	①	①			
⑫		과거 1년 이내 어업 시작한 사람		①	①	①	①	①	①			
⑬		최장 종사 사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⑭		최장 종사 구분	자가어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다른 사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 친족번호

01: 경영주 02: 경영주의 배우자 03: 자녀(15세이상) 04: 자녀의 배우자
 05: 경영주의 부모 06: 경영주의 배우자의 부모 07: 형제자매 0: 조부모
 09: 손자(15세이상) 10: 손자의 배우자 11: 기타

** 최장종사사업

1: 자가어업 2: 자가어업 이외 자영업 3: 공동경영어업 4: 어업임금종사 5: 어업외 임금종사

【해당하는 경영체는 모두 응답】

Ⅱ 호소어업

1. 과거 1년간 호상작업

		남자			여자		
211	계	:	:	:	:	:	:
212	15~19세	:	:	:	:	:	:
213	20~24세	:	:	:	:	:	:
214	25~29세	:	:	:	:	:	:
215	30~34세	:	:	:	:	:	:
216	35~39세	:	:	:	:	:	:
217	40~44세	:	:	:	:	:	:
218	45~49세	:	:	:	:	:	:
219	50~54세	:	:	:	:	:	:
220	55~59세	:	:	:	:	:	:
221	60~64세	:	:	:	:	:	:
222	65~69세	:	:	:	:	:	:
223	70~74세	:	:	:	:	:	:
224	75세이상	:	:	:	:	:	:

2. 과거 1년간 호상작업일수

221	:	:	:	(일)
-----	---	---	---	-----

3. 어업종류

(1) 과거 1년간 경영한 모든 항목과 그 중,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경영 항목

			어업종류	최고판매어업
망 어 업	저인망, 선인망	231	①	①
	자 망	232	①	②
	정 치 망	233	①	③
	투 망	234	①	④
	기타 망어업	235	①	⑤
기 타 어 업	낚시, 연승	236	①	⑥
	채 구, 채 조	237	①	⑦
	농 류	238	①	⑧
	기 타 어 업	239	①	⑨
양 식 업	어 류 양 식	240	①	⑩
	기 타 양 식	241	①	⑪

(2) 과거 1년간 지방선정어업종류

○ 과거 1년간 시행한 지방선정어업종류 기입

* 지방선정어업: 도도 부현별로 독자적으로 어업을 독자적으로 세분화한 것

지방선정어업 종류명	지방선정어업 종류번호번호			○표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4. 어종

(1) 과거 1년간

				경 영 한 어 종	최 대 판 매 금 액 경 영 어 종
251	어 류	잉 어		①	①
252		붕 어		①	②
253		은 어		①	③
254		황 어		①	④
255		빙 어		①	⑤
256		연 어 , 송 어 류		①	⑥
257		뱅 어		①	⑦
258		뱀 장 어		①	⑧
259		망 등 이 류		①	⑨
260		기 타 어 류		①	⑩
261	패 류	가 막 조 개		①	⑪
262		기 타 패 류		①	⑫
263	수 산 동 물 류	새 우 류		①	⑬
264		보 리 새 우		①	⑭
265		기 타 수 산 동 물		①	⑮
266	기 타			①	⑯

(2) 지방선정어종 중 과거 1년간 어획한 종류

지방선정 어종명	지방선정 어종번호			O표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	:	:	①

5. 과거 1년간 어획물(소호양식과 어획물 합계)

	판매 없음	10만엔 미만	10만 }	30만 }	50만 }	100만 }	300만 }	500만 }	1,000만 }	2,000만 }	5,000만 }	1억엔 이상
27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6. 어선

(1) 과거 1년간 사용한 어선 종류

	무동력어선	선외기부어선	동력어선
281	①	①	①

(2) 7월 1일 현재 사용중인 어선 척수

282	무 동 력 어 선	:	:
283	선 외 기 부 어 선	:	:
284	동 력 어 선	:	:

(3) 사용 동력어선 톤 수의 합계

285	:	:	.	:	(t)
-----	---	---	---	---	-----

Ⅲ 내수면양식업

1. 과거1년간 양식업에 고용된 사람의 수

		남자			여자		
301	계	：	：	：	：	：	：
302	15~19세	：	：	：	：	：	：
303	20~24세	：	：	：	：	：	：
304	25~29세	：	：	：	：	：	：
305	30~34세	：	：	：	：	：	：
306	35~39세	：	：	：	：	：	：
307	40~44세	：	：	：	：	：	：
308	45~49세	：	：	：	：	：	：
309	50~54세	：	：	：	：	：	：
310	55~59세	：	：	：	：	：	：
311	60~64세	：	：	：	：	：	：
312	65~69세	：	：	：	：	：	：
313	70~74세	：	：	：	：	：	：
314	75세이상	：	：	：	：	：	：

2. 과거 1년간 수확물의 판매금액 합

	판매 없음	10만엔 미만	10만 }	30만 }	50만 }	100만 }	300 만 }	500만 }	1,000만 }	2,000만 }	5,000만 }	1억 }
32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3. 양식종류

(1) 과거 1년간 운영한 양식종류와 판매금액최다 양식 종류

[illegible]

미국 2013년 양식업 센서스

<섹션 1. 양식 생산 기본 조사>

1. 2013년에, 경영체나 개인이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또는 기타 수산물을 생산하였습니까?

▷ 포함항목

조개, 난류, 식용 또는 레저용으로 낚은 어류, 미끼 어류, 관상용 어류, 갑각류, 연체류, 메기, 가재, 비단잉어, 피라미, 꿀, 농어, 송어, 거북, 그밖의 수산물

▷ 제외항목

야생에서 잡힌 수산물, 조류나 식용 해초를 제외한 수산 식물, 재판매나 방생을 위해 다른 양식업자에게서 구입한 수산물

- ☐ 네
☐ 아니요

<섹션 2. 사업체 크기>

1. 2013년, 이 경영체가 양식 생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였습니까?

- ☐ 네 - 아래의 2항으로
☐ 아니요 - 계속

- a. 2013년, 이 경영체가 비축, 보존, 육종, 오락용으로 양식 생산물을 생산하고 방생하였습니까?

- ☐ 네 - 섹션 13으로
☐ 아니요 - 섹션 14로

2. 담수와 해수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담수 면적	
에이커	소수점

해수 면적	
에이커	소수점

3. 임차한 담수 및 해수 에이커는 얼마나 됩니까? (States에서 임차한 것 포함)

담수 면적	
에이커	소수점

해수 면적	
에이커	소수점

<섹션 3. 수원(Source of water)>

1. 수원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선택가능)

- ☐ 지하수
☐ 양식장 지표수
☐ 양식장 외 지표수
☐ 염수

<섹션 4. 생산 방법>

1. 2013년, 경영체의 생산 방식은 무엇입니까?

a. 연못

(1) 양식생산을 위해 사용된 연못의 수

연못 수

(2) 총 면적

에이커	소수점

b. 가재 사육 목적의 농지: 사용된 경작지의 총 면적

에이커	소수점

c. 유수식: 사용된 수로의 수

수로 수	수로의 평균 유량
	gpm

d. 재순환 시스템

(1) 사용된 수조의 수

수조 수

(2) 수조의 부피

갤런

e. 비순환식 시스템

(1) 사용된 수조의 개수

개수

(2) 수조의 부피

갤런

f. 아쿠아포닉스

(1) 사용된 수조의 개수

아쿠아포닉스 수

(2) 수조의 부피

갤런

g. 우리(Cages) 또는 펜스

(1) 사용된 우리 또는 펜스의 수

우리 또는 펜스 수

(2) 총 부피

Cu,Ft.

h. 바닥 표면에서 키우는 연체류: 총 담수 면적을 적으세요.

에이커	소수점

i. 바닥 표면 외에서 키우는 연체류: 사용되는 방식을 복수응답하세요.

☐ 부유 트레이 ☐ 밧줄 ☐ 팻목 ☐ 끈 ☐ 기타

j.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방식:

단위(Unit)	부피

<섹션 5. 메기 생산>

1. 2013년, 경영체에서 생산 및 판매하신 메기가 있습니까?

☐ 네 - 계속

☐ 아니요 - 섹션 6으로 이동

2. 경영체의 현재 메기 생산에 사용될 담수 총 에이커와 2014년 1월 1일 ~ 6월 30일에 사용될 면적을 적으세요. (공사중인 시설은 제외)

에이커

a. 재개장될 면적을 포함한 총 면적

에이커

b. BROODFISH 생산에 사용될 총 면적

에이커

c. FOODSIZE 생산에 사용될 총 면적

에이커

d. FINGERLING을 위해 사용될 총 면적

에이커

3.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사중이거나 공사될 새로운 시설의 면적

에이커

4.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기 양식에 사용된 시설의 면적

에이커

5.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메기 교배에 사용될 총 면적

에이커

6. 2014년 1월 1일, 경영체의 메기의 재고량

크기 카테고리	메기				
	총 마리수	또는	총 무게	평균 무게	
				개체당	1000마리당
broodfish		또는			
큰 Foodsize - over 3lbs		또는			
중간 Foodsize - over 1.5lbs		또는			

작은 Foodsize - over 9.75lbs		또는				
큰 Stocker - over 180lbs/1000마리		또는				
작은 Stocker - 60lbs 이상 180lbs 미만 /1000마리당		또는				
Fingerling - 2에서 6인치 또는 2에서 60lbs/1000마리당		또는				

7. 2013년 동안, 경영체의 총 메기 판매량을 크기 카테고리별로 적으세요.

판매 어류	총 판매 수	총 무게 수	총 판매액(달러)
a. Broodfish(번식 중인 혹은 번식에 사용될)			\$
b. Broodfish(이전에 번식에 사용된)			\$
c. All Foodsize(over 0.75lbs)			\$
d. Stockers(over 6 inches) 또는 (2 lbs.에서 60 lbs./1000마리)			\$
e. Fingerlings(2에서 6inches) 또는 2 lbs.에서 60lbs/1000마리)			\$
f. Fry(2 inches 이하) 또는 2 lbs 이하/1000마리)			\$
g. 메기 알			\$

8. 2013년에 메기 판매의 총 가치의 7a~7g 항목당 비중을 적으세요. 포장이나 방생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직거래로 판매되는 가격을 적으세요. 경영체 내의 중개인이나 재판매를 위해 구입된 어류는 제외합니다.

판매처	총 판매금액의 비중	
	FOODSIZE	STOCKERS
a. 가공업자		
b. 운반업자/중개업자		
c. 소매처		
d. 소비자에게 직접		
e. 오락용 비축분(사육 호수나 연못)		
f. 다른 생산자에게 도매		
g. 정부기관		
h. 수출		
i. 기타		
전체	100%	100%

<섹션 6. 송어 생산>

1. 2013년, 경영체가 송어나 송어알을 생산하고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저장, 보존, 오락 목적으로 방생된 것은 13 섹션에서 답합니다.)

☐ 네 - 계속

☐ 아니요 - 섹션 7로 이동

2. 어류와 알의 판매의 총 합은 얼마입니까?

어류 크기	총 판매 수	총 무게 수	총 판매 가격(달러)
a. Broodfish			\$
b. 12인치 이상			\$
c. 6인치~12인치			\$
d. 1인치~6인치			\$
e. 송어 알			\$

3. 2에서 응답한 2a~2e의 각 판매처별 판매량을 비율로 응답하세요.

판매처	총 판매금액의 비율	
	12인치 또는 그 이상	6인치~12인치
a. 가공업자	%	%
b. 운반업자/중개업자	%	%
c. 소매처	%	%
d. 소비자에게 직접	%	%
e. 오락용 비축분 (사유 호수나 연못)	%	%
f. 다른 생산자에게 도매	%	%
g. 정부기관	%	%
h. 수출	%	%
I. 기타	%	%
전체	100%	100%

4. 2013년, 총 개체수와 성체의 무게 감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포함 : 판매 목적인 개체만 응답, 길이와 사이즈 모두 포함

감소의 원인	판매 목적	
	감소한 수	감소한 무게
a. 질병		
b. 도둑 또는 반달리즘		
c. 화학적 오염		
d. 가뭄		
e. 홍수		
f. 포식자(동물, 새 등)		
g. 다른 이유		

<섹션 7. 식용 또는 레저용 어류>

1. 메기나 송어를 제외하고 경영체가 생산하여 판매한 잉어를 포함한 식용 및 레저용 어류가 있습니까?

☐ 네 - 계속☐ 아니요 - 섹션 8로 이동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변천 자료집

2. 각 어종 크기별 판매 수, 무게, 판매금액을 채우세요. roe caviar는 섹션 11로 이동하세요.

컬럼을 모두 채우세요					
어종과 코드		크기 분류 1 - Foodsize or market size 2 - Stockers 3 - Fingerlings or Fry 4 - Broodfish 5 - Eggs complete columns 3 and 5	판매된 생선과 알의 총 개수	판매된 살아있는 개체의 총 무게	총 판매
생산되고 판매된 종	코드	코드	수	무게	달러
예: Tilapia	26	1	12,000	18,000	\$ 45,000
예: Sunfish	24	3	450,000	9,000	\$ 70,000
					\$
					\$
					\$
					\$
					\$
					\$
					\$
					\$
					\$
					\$
					\$

1	북극민물송어	9	잉어,silver	17	연어
2	줄무늬농어	10	매기	18	개복치
3	농어,large mouth	11	크라피	19	절갑상어
4	농어, small mouth	12	Muskie	20	틸라피아
5	잉어, bighead	13	창꼬치	21	송어
6	잉어, black	14	Pacific, Threadfin	22	월아이
7	잉어, common	15	농어,yellow	23	기타 식용 어류
8	초어	16	민어	24	기타 레저용 어류

<섹션 8. 미끼용 어류>

1. 2013년, 경영체가 생산하고 판매한 가재를 포함한 미끼용 어류 가 있습니까? 식용 가재는 섹션 9에서 응답하세요.

□ 네 - 계속

☐ 아니요 - 섹션 9로 이동

2. 2013년 미끼용 어류 생산을 위해 사용된 물의 표면적은 얼마입니까?

3. 양식장 직거래로 판매된 미끼용 어류의 무게 및 수, 판매가격을 기입하세요.

표 3a: 판매된 미끼용 어류의 무게와 수를 적으세요					
사용되어 판매된 어종	판매된 무게	마리수	OR	Pound 당 마리 수	총 판매액
예: Fathead minnows	20		OR	250	\$ 225.00
금붕어 - 미끼용			OR		\$
Golden shiners			OR		\$
다른 shiners (Emerald, silver 등)			OR		\$
Suckers			OR		\$
가제 - 미끼용			OR		\$
다른 종			OR		\$
표 3b: 판매된 미끼용 어류를 갤런 단위로 적으세요					
사용되어 판매된 어종	총 판매 갤런 수	갤런당 무게	소수 자리	갤런당 마리수	총 판매액
예: Golden shiners	150	8	5	1,500	\$ 225.00
Fathead minnows					\$
금붕어 - 미끼용					\$
Golden shiners					\$
다른 shiners (Emerald, silver 등)					\$
Suckers					\$
가제 - 미끼용					\$
다른 종					\$

<섹션 9. 갑각류와 연체동물>

1. 2013년, 경영체가 갑각류나 연체류를 생산하고 판매하였습니까?

☐ 네 - 계속☐ 아니요 - 섹션 10으로 이동

2. 어종과 크기를 카테고리별로 기입하세요. 양식장 직거래로 반영된 판매액만 기입하고 포장이나 방생으로 든 비용은 제외합니다. 경영체에 처리 공장이 있다면 판매액은 공장에 들어간 가치를 포함합니다. 미끼용 가제는 섹션 8에서 응답하세요.

	1	2	3	4	5
	종과 코드		크기 분류 1 - Food or market size 2 - Broodstock 3 - Larvae 4 - Seed - complete only column 4,5,9 5 - Other	총 판매 단위 수	판매 단위 1 - Nmuber 2 - Pound - in shell 3 - Pound - out of shell 4 - Dozen 5 - Bushel 6 - Sack/bag 7 - Gallon 8 - Barrel 9 - Other
Line			코드	수	코드
	예: 가재	6	1	100,000	2
	예: 굴	12	1	150	4
1					
2					
3					
4					
5					
6					
7					
8					
9					
10					
11					

1	전복	9	민물새우
2	대합조개	10	새우
3	바지락	11	Eastern 굴
4	기타 조개 (1에 이름을 기입)	12	Pacific 굴
5	게	13	기타 굴 (1에 이름을 기입)
6	식용가재	14	기타 갑각류 (1에 이름을 기입)
7	대하	15	기타 연체동물 (1에 이름을 기입)
8	홍합		

<섹션 10. 관상용 어류>

1. 2013년, 관상 어류를 생산하고 판매하였습니까?

- ☐ 예 - 계속
☐ 아니오 - 섹션 11로

2. 각 종별로 응답하세요. 포장이나 방생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직거래로 판매되는 가격을 적으세요. 경영체 내의 중간인이나 재판매를 위해 구입된 어류는 제외합니다.

캐비아			\$
장어			\$
개구리			\$
성게			\$
달팽이			\$
올챙이			\$
거북이: 전체			\$
알			\$
암석: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섹션 12. 어종별 판매처 (메기와 송어 제외)>

1. 2013년, 경영체의 다음 판매처에 판매된 생산물의 총 판매가치를 각 종별로 차지하는 비율로 적으세요. 재판매를 위해 또는 경영체 내의 중간인에 의해 구입된 어류는 제외합니다.

첫 판매처	식용 어류	레저용 어류	미끼용 어류	관상용 어류	갑각류	연체류	다른 양식어류
가공업자	%	%			%	%	%
운반인, 중개업자	%	%	%	%	%	%	%
소매업자	%	%	%	%	%	%	%
고객과 직거래	%	%	%	%	%	%	%
레크리에이션 비축분	%	%	%	%	%	%	%
도매	%	%	%	%	%	%	%
정부	%	%	%	%	%	%	%
수출	%	%	%	%	%	%	%
다른 어종 ()	%	%	%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섹션 13. 양식 생산과 방생(판매되지 않는 것)>

1. 경영체가 저장, 보존, 육종, 오락목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고 방생하였습니까?
☐ 예 - 계속
☐ 아니오 - 섹션 14로

2. 2013년, 경영체에 의해 생산되고 방생된 모든 생산량을 기입해주세요.

안내: 각 종의 크기별로 나열된 항목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수와 중량을 기입하세요. 난류와 종자의 수량을 기입하세요. 리스트에 없는 종은 직접 기입하세요.

어종	방생된 수	방생된 중량	방생된 난류 또는 종자 수	방생 생산물의 총 예산 가치
줄무늬 베스				
큰입 베스				
메기				
잉어과 어류				
노던 파이크				
퍼치				
연어				
칭어				
개복치*				
송어(12인치 이상)				
송어(6~12인치미만)				
송어(1~6인치미만)				
송어알				
월아이				
조개				
홍합				
굴				
악어				
가재				
거북				
다른 종				
다른 종				
다른 종				

* 개복치에 블루길, 코피노즈, 도미, 리디어 등 포함

<섹션 14. 경영체>

1. 2013년, 경영체가 수산식물의 사육과 판매를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2. 근래에, 경영체가 수산식물을 생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경영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 응답 정보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그 경영체나 사람의 이름, 지역번호, 휴대전화를 열거해 주세요.
☐ 아니요 - 계속
4. 다른 양식 경영체를 위한 경영상의 일일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 예 - 다른 양식 경영체명과 지역번호, 대표 휴대전화를 열거해 주세요.
☐ 아니오 - 계속
5. 주소 레이블의 이름에 적힌 경영체가 판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양도인의 이름, 지역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열거해주세요.
☐ 아니오 - 계속

<섹션15. 결론>

의견:

거주지명:

지역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날짜(MM-DD-YY):

설문이 끝났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료된 보고서는 <http://www.nass.usda.usda.gov>에서 2014년 가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